

제3장 2019년 분야별 치안전망

제1절 범죄수사 분야	52
제2절 생활안전 분야	122
제3절 교통안전 분야	150
제4절 사회안정 분야	169
제5절 보안·외사 분야	186



치안전망 2019
POLICE SCIENCE INSTITUTE

I. 2019년 범죄 발생 전망

경찰에서 인지한 범죄 발생 건수는 2009년 202만 건을 기록한 이후 최근 10여 년 간 180만 건 전후의 수준을 보였으나,⁵³⁾ 2017년에는 전년 대비 10.1% 감소한 166만 건 수준으로 발생하였다. 10년간 가장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온 점을 감안한다면 2017년의 감소폭은 큰 것이다.

2019년 범죄발생을 전망하기 위해서 거시적 관점에서 범죄 발생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분류 범죄 수준에서 최근 5년에서 10년간의 범죄 발생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2019년의 범죄 발생을 예측하여, 경찰의 범죄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체 범죄 발생 추세를 개관한 다음, 주요 범죄유형별 증감 추세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고령자, 정신질환자 등 시사성 있는 범죄자 유형별 발생 추세와 지역별 범죄발생비의 변화 추세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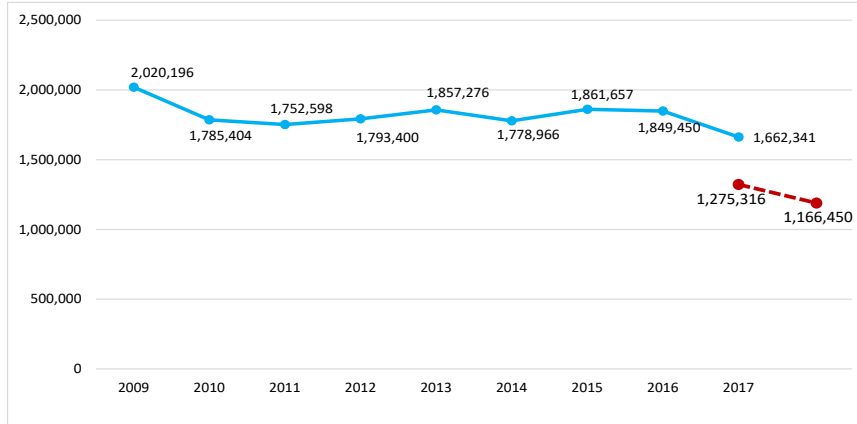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범죄의 발생 건수는 아래의 [그림 3-1-1]과 같다. 2018년에는 9월말 기준 1,166,450건으로 2017년 동기에 비해 108,866건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9년에도 범죄발생 건수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뚜렷한 환경적 변화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대 범죄 등 주요 범죄와 교통범죄 등 비중이 높은 범죄의 감소폭이 크고 최근 몇 년간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53) 본 장에서 사용되는 범죄발생 관련 자료는 모두 경찰단계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한다. 우리나라의 총 발생범죄는 형사사법기관 중 경찰,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검찰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모두 취합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사법경찰의 처리 건수(해경, 특사경 포함)는 1,664,082건(98.39%)이고 검찰의 처리 건수는 27,288건(1.61%)으로 98% 이상을 사법경찰(해경, 특사경 포함)에서 처리하고 있다.

구분	총검거	검찰	사법경찰	사법경찰 구분		
				경찰	해경	특사경
검거건수	1,691,370	27,288 (1.61%)	1,664,082 (98.39%)	1,522,342 (90.01%)	30,054 (1.78%)	111,686 (6.60%)
검거인원	2,020,196	37,927 (1.88%)	1,982,269 (98.12%)	1,867,707 (92.45%)	6,071 (0.30%)	108,491 (5.37%)

[그림 3-1-1] 최근 10년간 전체 범죄 발생 추이

(단위 : 건)



출처 : 경찰청(2018)

〈표 3-1-1〉 최근 10년간 범죄유형별 발생 건수

(단위 : 건)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 9	2018. 9
계	2,020,196	1,785,404	1,752,598	1,793,400	1,857,276	1,778,966	1,861,657	1,849,450	1,662,341	1,275,316	1,166,450
강력범죄	25,322	25,834	26,705	25,152	26,962	25,277	25,334	25,765	27,274	20,390	19,939
절도범죄	256,419	269,439	281,362	290,460	288,343	266,222	245,853	203,037	183,757	137,951	127,190
폭력범죄	315,850	292,492	311,948	312,579	294,187	290,073	305,947	309,394	293,086	220,256	213,131
지능범죄	282,044	268,307	279,802	295,101	329,439	298,652	316,121	312,577	302,466	228,567	251,827
풍속범죄	47,069	31,205	28,866	24,801	27,474	25,070	24,491	26,165	22,501	16,961	13,989
특별 경제범죄	133,843	61,578	68,026	78,155	71,019	72,908	86,329	65,025	53,356	41,214	39,772
미약범죄	6,081	4,233	4,160	4,268	4,598	4,825	6,411	7,329	7,501	6,454	5,296
보건범죄	18,630	12,988	14,083	16,800	20,383	14,657	14,602	14,662	12,561	9,628	8,196
환경범죄	5,349	3,998	2,648	3,128	4,135	2,536	2,961	4,349	4,879	3,619	3,590
교통범죄	690,111	623,053	536,167	542,784	573,453	573,493	596,665	600,401	501,162	393,954	303,787
노동범죄	2,526	1,266	1,836	1,391	1,721	1,308	1,145	2,457	2,862	2,227	1,012
안보범죄	56	103	132	109	135	84	121	81	98	76	51
선거범죄	180	2,417	212	1,262	398	1,874	760	1,018	640	619	1,396
병역범죄	22,541	20,828	20,587	23,143	26,173	21,549	18,726	16,651	15,327	10,749	9,954
기타범죄	214,175	167,663	176,064	174,267	188,855	180,437	216,197	260,539	234,871	182,651	167,320

출처 : 경찰청(2018)

주목할 만한 것은 그동안 전체 범죄에서 1/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던 교통범죄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전체 범죄에서의 비중도 많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교통범죄의 감소폭은 나머지 범죄 전체의 감소폭보다 더 큰 것이어서 교통범죄의 변화가 전체 범죄 발생량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표 3-1-2〉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범죄(계) (%)	1,857,276 (100.0)	1,778,966 (100.0)	1,861,657 (100.0)	1,849,450 (100.0)	1,662,341 (100.0)
교통범죄 (%)	573,453 (30.9)	573,493 (32.2)	596,665 (32.1)	600,401 (32.5)	501,162 (30.1)
교통범죄 이외의 범죄 (%)	1,283,823 (69.1)	1,205,473 (67.8)	1,264,992 (67.9)	1,249,049 (67.5)	1,161,179 (69.9)

출처 : 경찰청(2018)

전체 범죄의 증감에 관한 예측을 위해서는 교통범죄를 비롯한 주요 범죄 유형에 대한 예측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 교통범죄 이외에도 발생량이 많은 범죄들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절도, 폭력, 지능범죄가 감소하여 전체 범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발생량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마약범죄, 환경범죄, 노동범죄, 안보범죄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강력범죄가 다소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지만, 발생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범죄건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 교통범죄의 감소가 전체범죄 감소 견인

교통범죄는 2008년 845,003건이 발생하여 정점을 기록한 이후로 급격히 감소하여 50만 건에서 60만 건 사이에서 증감을 보였다. 그러나 아래 [그림 3-1-2]에서 보듯이 최근 5년 사이에는 2016년까지 소폭 상승하는 형태를 보였으나, 2017년에 10만 건 가량 뚜렷하게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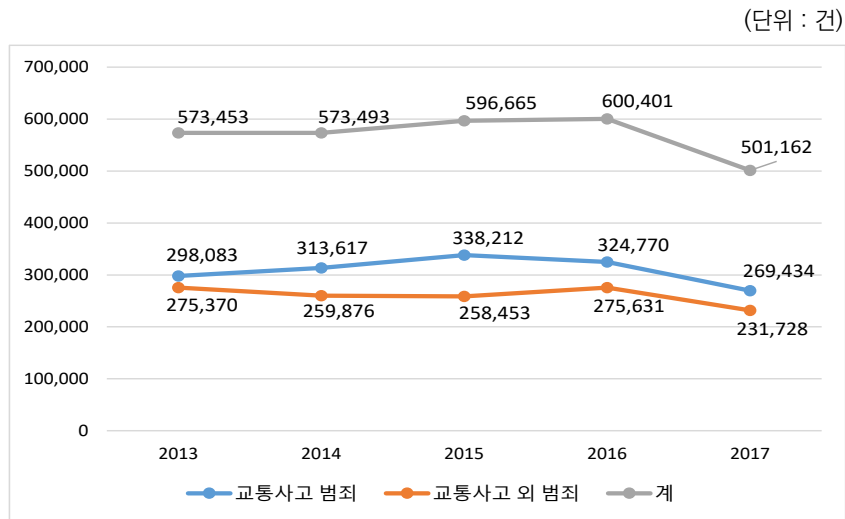
교통범죄 중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등 경찰의 단속의지에 영향을 받는 교통사고 이외의 범죄 유형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범죄⁵⁴⁾ 모두 감소하였다. 교통범죄 발생의 전제가 되는 차량과 운전자 수를 고려했을 때, 우선 차량 등록대수⁵⁵⁾가 2013년 1,940만 대에서 2017년 2,253만 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운전면허증 소지

54) 교통사고범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인피교통사고)과 「도로교통법」(물피교통사고) 상의 교통사고 건수 이외에도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의 물피교통사고미조치, 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의 죄가 포함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건수에 비해 교통사고 '범죄' 건수가 더 높게 집계된다.

55) 국토교통부의 e-나라지표 “자동차 등록 현황”에서 인용(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57, 2018. 11. 23, 검색).

자⁵⁶⁾가 2013년 2,885만 명에서 2017년 3,167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차량수와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차량 수 대비 교통사고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교통사고 범죄 및 교통사고 이외의 범죄가 모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발생량 예측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교통범죄의 감소가 획기적인 환경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2019년에는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2] 교통범죄의 발생 추이



출처 : 경찰청(2018)

〈표 3-1-3〉 교통범죄 사고 구분별 발생 건수 및 구성비

(단위 :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573,453	573,493	596,665	600,401	501,162
(%)	(100.0)	(100.0)	(100.0)	(100.0)	(100.0)
교통사고 범죄	298,083	313,617	338,212	324,770	269,434
(%)	(52.0)	(54.7)	(56.7)	(54.1)	(53.8)
교통사고 외 교통범죄	275,370	259,876	258,453	275,631	231,728
(%)	(48.0)	(45.3)	(43.3)	(45.9)	(46.2)

출처 : 경찰청(2018)

56) 경찰청 e-나라지표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에서 인용(<http://www.index.go.kr/potal/main/>, 2018. 11. 23. 검색).

2. 지능범죄의 증가세 전환

지능범죄는 사기, 횡령, 배임, 문서·인장·통화 위조 등의 범죄를 일컫는 실무상의 용어이다.⁵⁷⁾ 지능범죄는 최근 국가적인 경제난 속에서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빈발하여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았으나⁵⁸⁾, 최근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화금융사기나 대출사기 등 지능범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기죄가 2015년 247,418건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고 있어 전체 지능범죄 발생건수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그러나 <표 3-1-4>에서 볼 수 있듯이 횡령이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배임은 2018년 들어 9월까지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증가는 전체 지능범죄 발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비중이 높은 사기죄가 2018년 9월까지 발생건수에서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하여 전체 지능범죄 발생건수도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능범죄 전담팀의 편성 및 사이버안전국의 기능 강화 등 경찰의 지속적인 대응노력이 있었고, 실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행위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전체 지능범죄의 발생 수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금융위기 이후 여전히 세계적인 경제 침체는 지속되고 있고, 국내적으로 실업률과 가계부채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취약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랜섬웨어⁵⁹⁾ 등 전자금융사기 형태의 지능범죄 수법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권력층을 사칭하는 전화사기 수법까지 등장⁶⁰⁾하는 등 범죄수법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부채의 증가 등으로 갈수록 채무자들의 변제 능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능범죄 발생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어렵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9년에도 지능범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7) 지능범죄에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등 공무원의 지위와 관련된 범죄들도 있지만 이 유형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기 때문에 설명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 절에서의 지능범죄는 개관의 차원에서 형법상의 범죄유형 분류 기준에 따른 것이다. 같은 절 Ⅲ에서는 지능범죄를 범죄 수법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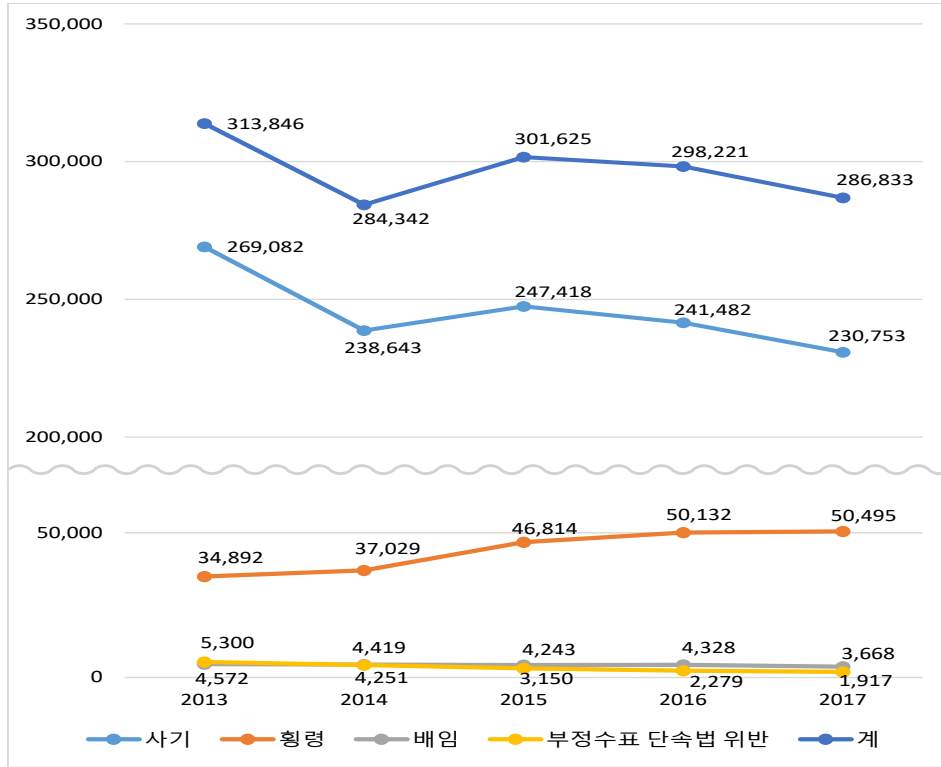
58) “서민 울리는 사기범죄 기승…석달간 8천명 검거”, 연합뉴스 TV, 2015. 6. 21.

59) 악성코드(malware)의 일종으로, 이에 감염된 컴퓨터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악성 코드 제작자에게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야 한다(인터넷 두산백과).

60) “왜 ‘청와대’ 만 나오면 덮어놓고 믿을까… “막강한 힘이 근본 배경””, 중앙일보, 2018. 11. 27.

[그림 3-1-3] 지능범죄의 발생 추이

(단위 : 건)



출처 : 경찰청(2018)

<표 3-1-4> 최근 6년간 주요 지능범죄의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 9	2018. 9	전년대비
사기	269,082	238,643	247,418	241,482	230,753	174,917	197,398	12.9%
횡령	34,892	37,029	46,814	50,132	50,495	36,748	39,346	7.1%
배임	4,572	4,419	4,243	4,328	3,668	2,784	3,185	14.4%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5,300	4,251	3,150	2,279	1,917	1,534	1,356	-11.6%
계	313,846	284,342	301,625	298,221	286,833	215,983	241,285	11.7%

출처 : 경찰청(2018)

3. 마약류 범죄 감소 불구, 확산 우려 증가

최근 마약류⁶¹⁾의 소비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마약범죄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해외 마약조직이 국내에 잠입하여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에 가담하고 있고, 인터넷뿐만 아니라 각종 신종수법(딥웹, 가상통화 등)을 이용한 음성적인 경로의 마약류 유통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이다. 그 결과 최근 2년 간 국내 마약류 사범은 연 14,000명을 상회하고 있고, 이 중 경찰의 검거비율도 증가하였다.

〈표 3-1-5〉 최근 6년간 마약범죄 검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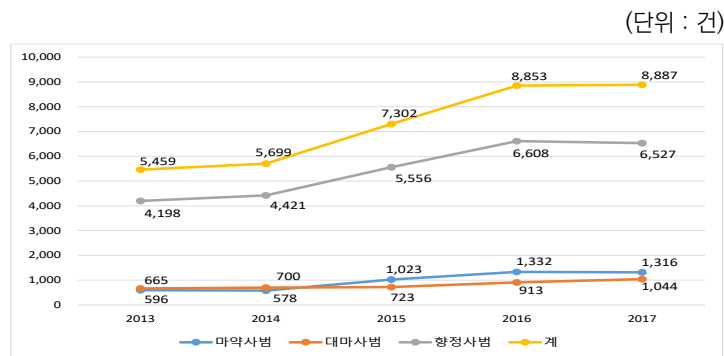
(단위 :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7. 9	2018. 9	전년대비
전체 검거*	9,984	11,916	14,214	14,123	11,747	9,790	-16.7%
경찰 검거 (%)	5,699 (57.1)	7,302 (61.3)	8,853 (62.3)	8,853 (62.9)	7,592 (64.6)	6,450 (65.9)	-15.0%

*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등 국내 수사기관에서의 검거건수를 모두 합친 숫자이다.
출처 : 경찰청(2018)

2018년 9월 기준 대마나 향정사범에서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마약범죄도 2017년 9월 대비 15.0% 감소하였다. 향정사범의 경우 그 처벌이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급증 가능성이 크지만 유흥업소나 클럽 등에 대한 공급처의 차단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4] 경찰의 마약류 사범 검거 추이



출처 : 경찰청(2018)

61) 마약류에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다. 마약의 종류에는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등의 천연마약과 메사돈, 페치딘 등의 합성마약이 있으며, 대마의 종류에는 대마초, 해쉬쉬, 해쉬쉬오일 등이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 YABA, 엑스터시(MDMA) 등의 흥분제, 바르비탈류, 펜플루라민 등의 억제제, LSD와 같은 환각제가 있다.

〈표 3-1-6〉 최근 6년간 경찰의 마약범죄 검거현황

(단위 :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 9	2018. 9	전년대비
계	5,459	5,699	7,302	8,853	8,887	7,592	6,450	-15.0%
(공급사범)	(2,254)	(2,318)	(2,786)	(3,428)	(3,129)	(2,651)	(2,520)	
마약사범	596	578	1,023	1,332	1,316	1,279	1,299	1.6%
대마사범	665	700	723	913	1,044	838	712	-15.0%
향정사범	4,198	4,421	5,556	6,608	6,527	5,475	4,439	-18.9%

출처 : 경찰청(2018)

경찰은 마약류 범죄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투약자 중심의 수사관행에서 벗어나 인터넷·SNS 등의 경로 차단과 공급사범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⁶²⁾ 그 결과 경찰의 검거인원 중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의 경우 전체 검거인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까지 1,316명이 검거되어 2017년 동기 976명 대비 상승폭이 컸다.

또한 북미지역 대마의 합법화, 외국인 마약사범의 증가,⁶³⁾ 국제우편이나 해외직구 등 마약류 유통 경로의 다양화⁶⁴⁾로 인해 마약류 범죄의 증가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심각성이 가장 높은 마약사범의 경우에 2016년 이후 그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의 수사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4. 여성, 소년 범죄 감소 및 노인범죄 유지

[그림 3-1-5]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범죄자와 노인범죄자는 최근 들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달라졌다. 여성 범죄자는 2016년 353,591명이 발생한 이후 2017년, 그리고 2018년 9월 기준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전체적인 범죄자 수의 감소로 인해서 전체 범죄자 중 여성범죄자 비율은 증가하였다.

소년범죄자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전체 범죄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인해서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4.0%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세를 이어간다면 소년범죄자는 2019년 이후에도 작은 폭이나마

62) “경찰, ‘인터넷·SNS 마약 거래’ 집중단속”, 시사포커스, 2015. 3. 30.

63) “필로폰값 동남아의 6배...해외 마약조직 늘이터 된 한국”, 한국경제, 2018. 10.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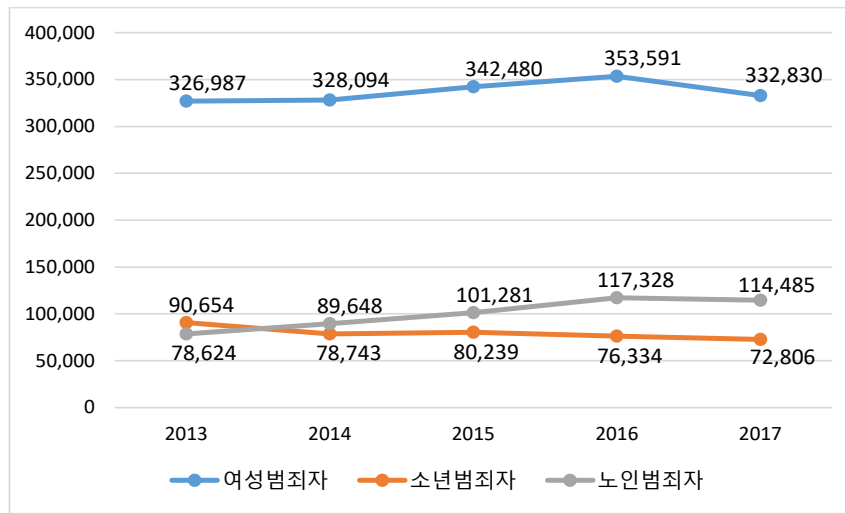
64) “국제우편·해외직구로 마약사범 증가...2년 연속 1.4만 명”, newst, 2018. 8. 28.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노인범죄자는 2016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7년부터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8년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차이가 미미하여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동반한 노인범죄 증가가 사회적 문제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노인범죄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보인다.

[그림 3-1-5] 여성범죄자, 소년범죄자, 노인범죄자 인원수 변화 추이

(단위 : 명)



출처 : 경찰청(2018)

<표 3-1-7> 최근 6년간 여성범죄자, 소년범죄자, 노인범죄자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 9	2018. 9	전년대비
총범죄자*	1,962,718	1,930,325	1,999,065	2,029,873	1,833,491	1,412,675	1,277,491	-9.6%
여성범죄자 (%)	326,987 (16.7)	328,094 (17.0)	342,480 (17.1)	353,591 (17.4)	332,830 (18.2)	255,746 (18.1)	243,231 (19.0)	-4.9%
소년범죄자** (%)	90,654 (4.6)	78,743 (4.1)	80,239 (4.0)	76,334 (3.8)	72,806 (4.0)	56,180 (4)	49,633 (3.9)	-11.7%
노인범죄자*** (%)	78,624 (4.0)	89,648 (4.6)	101,281 (5.1)	117,328 (5.8)	114,485 (6.2)	89,770 (6.4)	92,415 (7.2)	2.9%

* 피의자 원표 자료 중 피의자가 법인인 경우 제외

** 소년범죄자 : 소년부로 직접 송치한 인원은 제외한 수치

*** 노인범죄자 : 65세 이상 연령의 범죄자

출처 : 경찰청(2018)

5.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의 증가

2018년에는 경북 영양에서 발생한 경찰관 피살사건의 피의자가 조현병 환자로 밝혀지면서⁶⁵⁾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다른 이유로 범죄자의 정신질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2017년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아스퍼거증후군을 주장하였고,⁶⁶⁾ 2018년에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김○○가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고 심신미약⁶⁷⁾을 주장하는 등 범행에 대한 책임을 감소시키려는 변론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기존의 조사 결과들에 따르면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달리 전체 범죄 발생 건수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발생 비율은 일반인에 의한 범죄 발생 비율에 비해 높지 않다.⁶⁸⁾ 그러나 정신질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는 범죄 발생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범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로 볼 수 있다. 다만, <표 3-1-8>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강력범죄에 있어서는 2018년 9월까지 정신질환자에 의한 발생 건수가 2017년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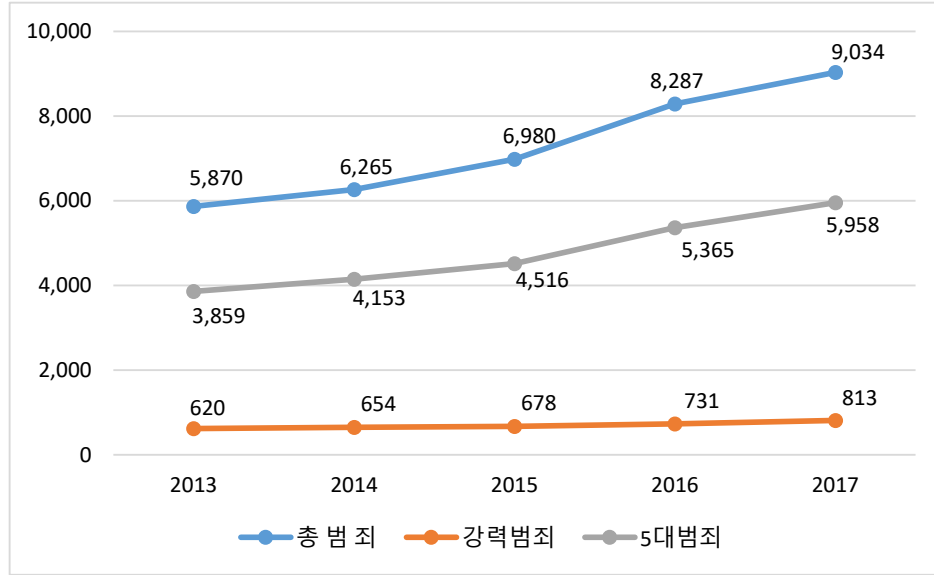
65) “‘조현병’ 공포 확산 되나...영양서 흉기난동으로 경찰관 숨지게 해”, 서울경제, 2018. 7. 9.

66)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아스퍼거 증후군 주장에... ‘증상이 어떻게?’ ”, 국제뉴스, 2018. 9. 13.

67) 심신미약(心神微弱)이란 정신의학상의 개념이 아니라 형법상의 개념으로, 시비를 변별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자유의지를 기초로 책임을 부여하는 형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한다(형법 제10조 2항).

68) 2017년 경찰청 자료 기준 각각 총범죄의 0.54%, 강력범죄의 2.98%, 5대범죄의 1.1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1-6] 범죄 유형별 정신질환자 유발 건수 추이



출처 : 경찰청(2018)

<표 3-1-8> 최근 6년간 정신질환자 범죄유발 건수와 재범률

(단위 :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 9	2018. 9	전년대비
총 범죄	5,870	6,265	6,980	8,287	9,034	6,809	7,591	11.5%
강력범죄	620	654	678	731	813	629	576	-8.4%
5대 범죄	3,859	4,153	4,516	5,365	5,958	4,521	4,807	6.3%
재범율	65.7%	65.9%	65.6%	66.0%	65.9%	65.9%	64.9%	-1.0%

* 정신질환자 현황 : 470만 명 추산(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 보건복지부)⁶⁹⁾
출처 : 경찰청(2018)

정신질환자에 의한 것으로 인지된 범죄발생 건수의 증가 원인은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에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⁷⁰⁾ 정신질환자를 범죄 인지단계에서 확

69)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 18세 이상 성인 5,102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으며,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 진단통계지침(DSM-IV)을 바탕으로 개발된 조사도구 K-CIDI를 사용하였다.

70) 경찰에서는 개정 정신보건법의 시행(2017. 5. 30)에 대응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이 진단 기준과 효율적 보호조치에 관한 방안을 작성 전파(경찰청, “정신질환자, 효율적 보호조치 방안 통보”, 2017. 5. 19)하는 등 정신질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인하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는 수사관들이 두드러진 증상이 없는 경우 정신질환자 분류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자체적으로 정신질환자를 분류하는 기준인 ‘정신건강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에 맞춰 판단 매뉴얼을 보급·전파하는 등 경찰대응 단계에서 정신질환자를 분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정신질환자 분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범죄자 중 정신질환자의 파악을 위한 여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질환 범죄자 파악의 사각은 존재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 등 각 기관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념 정의·범위가 다르고,⁷¹⁾ 피의자들이 정신질환 병력을 알릴 의무가 없으며, 비전문가인 경찰관들이 범죄자의 정신질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등의 한계가 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발생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 판단의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전국적인 범죄발생비 감소

범죄의 발생수준은 절대적인 발생건수보다는 지역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하는 범죄발생 건수를 의미하는 발생비⁷²⁾를 비교하면 대체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지난 5년 간의 지역별 범죄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범죄가 감소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의 감소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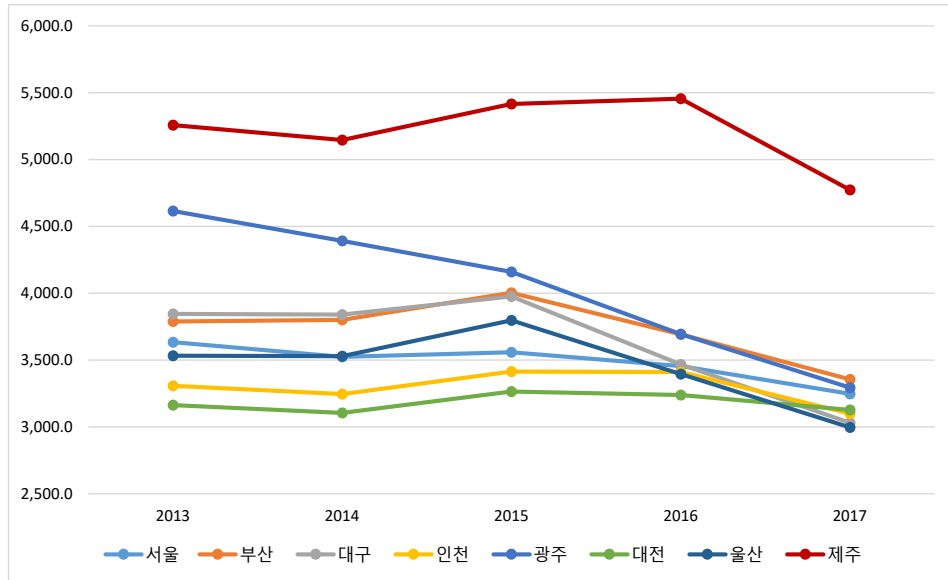
구체적인 지역별 비교를 위해서 전국의 시도를 범죄발생비 수준과 도시화 수준에 따라 크게 세 개 유형으로 구분했을 때 지역별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 지역, 이들 지역 이외의 시도, 그리고 제주도이다. 우선 광역시 지역의 경우 그동안 지역별 편차가 컸었지만 광주광역시의 범죄율 급감, 다른 지역의 감소추세로 인해서 2016년에 나타났던 범죄발생비의 수렴 현상은 2017년에 더욱 강화되었다.

71) DSM-IV를 바탕으로 기분장애(주요우울장애(우울증), 기분부전장애, 양극성장애 등), 불안장애(강박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사회공포증, 범불안장애, 특정공포증 등), 조현병 스펙트럼,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자살생각 및 시도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경찰에서는 정신이상(정신분열병자), 정신박약(의사가 박약하거나 불안정한 백치, 저능자), 기타 정신장애(조울병자, 성격이상자(난폭자, 변태성욕자 등))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두 기관의 정신질환 분류 기준은 상이하다. 경찰의 정신질환 분류는 그 개념과 범위에 있어서 정신의학적인 기준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2) 발생비 = (발생건수 * 100,000) / 해당년도 추계인구수.

[그림 3-1-7]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광역시(+제주)의 범죄발생비 변화 추이

(단위 : 건)



출처 : 경찰청(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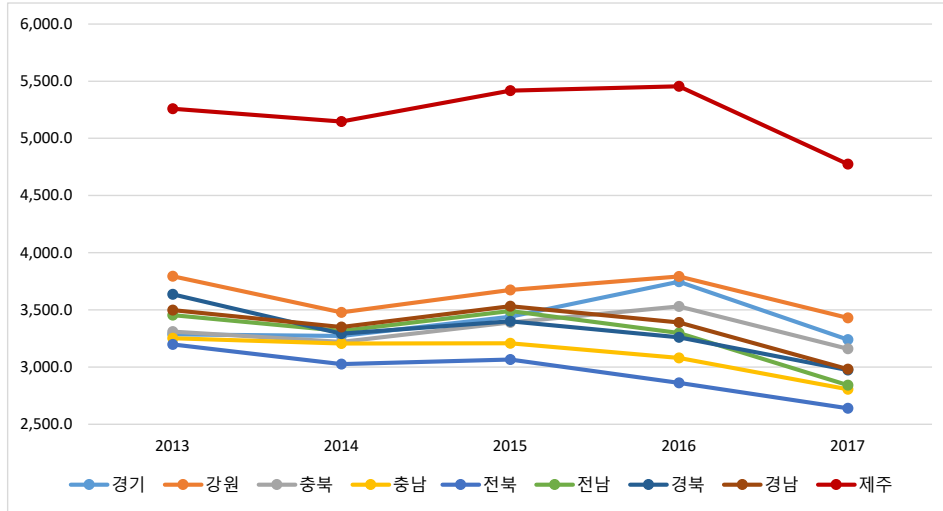
반면 광역시 이외의 시도들의 경우 광역시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범죄발생비가 낮은 특징을 보였었다. 하지만 2016년에 경기, 강원, 충북 등 수도권 또는 인접 지역에서 범죄율이 증가하는 반면, 그 이외 지역의 범죄율이 감소함으로써 지역들 간의 편차가 커졌고, 2017년에는 이런 편차가 유지되는 상태로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여전히 범죄발생비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⁷³⁾ 제주도의 범죄발생비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제주도의 경우 지역 인구에 비해 외부 지역 유동인구의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거주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범죄발생비 계산방식이 범죄발생 수준을 과대추정하게 하여 부적합하다는 반복되는 지적을 고려한다면, 2017년의 대폭적인 감소는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이다. 2017년 초부터 중국과의 사드 갈등으로 인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많이 감소한 것이 제주도 범죄발생비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73) 2017년 제주도의 범죄발생건수는 31,368건으로, 전체 범죄발생건수 중 1.89%에 불과하다.

[그림 3-1-8] 최근 5년간 각 시도별(+제주) 범죄발생비 변화 추이

(단위 : 건)



출처 : 경찰청(2018)

〈표 3-1-9〉 최근 5년간 지역별 범죄발생비* 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서울	3,633.6	3,523.5	3,557.9	3,455.0	3,248.2
부산	3,788.1	3,800.5	4,004.2	3,693.3	3,355.2
대구	3,845.0	3,840.5	3,975.2	3,467.4	3,030.7
인천	3,308.2	3,245.7	3,414.9	3,411.0	3,099.3
광주	4,614.6	4,392.1	4,159.4	3,693.9	3,293.8
대전	3,163.1	3,105.2	3,265.3	3,238.2	3,127.9
울산	3,532.1	3,529.5	3,797.8	3,394.9	2,996.4
경기	3,285.5	3,272.3	3,440.1	3,745.8	3,239.6
강원	3,795.3	3,478.4	3,673.9	3,792.5	3,430.1
충북	3,310.5	3,221.0	3,390.4	3,529.7	3,160.2
충남**	3,252.5	3,206.6	3,207.7	3,080.3	2,806.8
전북	3,198.5	3,026.5	3,066.9	2,862.3	2,640.9
전남	3,454.7	3,316.1	3,491.0	3,298.2	2,841.8
경북	3,636.4	3,293.0	3,399.3	3,261.0	2,974.4
경남	3,497.8	3,350.6	3,532.1	3,391.1	2,981.2
제주	5,258.1	5,146.0	5,416.3	5,455.6	4,773.8

* 지역별 발생비 = (지역별 발생건수*100,000)/해당년도 지역별 주민등록 인구수

: 2018 치안전망부터 지역별 발생비의 산식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전의 발생비 자료와 차이가 있음

** 세종자치시의 경우 충남지역에 포함

출처 : 경찰청(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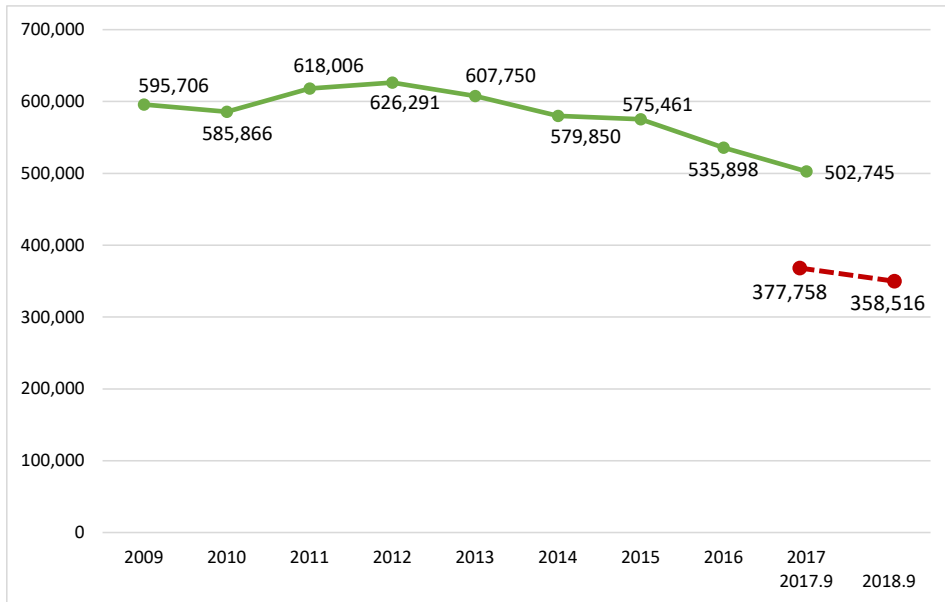
II. 5대 범죄의 변화와 전망

5대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우리가 직관적으로 ‘범죄’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범죄유형들이다. 이러한 범죄들은 국민들의 범죄인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요 범죄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도 5대 범죄는 주요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수사와 예방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는 등 강력한 범죄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5대 범죄에 대한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최근 10년(2009~2018. 9) 사이 5대 범죄의 발생 현황을 보면, 2012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별 범죄유형별로 발생 건수 변화의 차이가 있지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절도와 폭력의 감소에 힘입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5대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강화 등을 고려하면, 2019년에도 5대 범죄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강간 및 강제추행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5대 범죄에서의 상대적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5대 범죄 전체의 발생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9] 최근 10년간 5대 범죄 전체 발생 추이

(단위 : 건)



출처 : 경찰청(2018)

〈표 3-1-10〉 최근 10년간 5대 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연도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계
2009	1,374	6,370	15,693	256,419	315,850	595,706
2010	1,252	4,425	18,258	269,439	292,492	585,866
2011	1,204	3,994	19,498	281,362	311,948	618,006
2012	995	2,587	19,670	290,460	312,579	626,291
2013	930	1,980	22,310	288,343	294,187	607,750
2014	914	1,586	21,055	266,222	290,073	579,850
2015	929	1,446	21,286	245,853	305,947	575,461
2016	906	1,149	22,193	202,874	308,776	535,898
2017	825	967	24,110	183,757	29,086	502,745
2017. 9	647	737	17,991	138,164	220,219	377,758
2018. 9	598	645	17,583	127,313	212,377	358,516
전년대비	-7.6%	-12.5%	-2.3%	-7.9%	-3.6%	-5.1%

출처 : 경찰청(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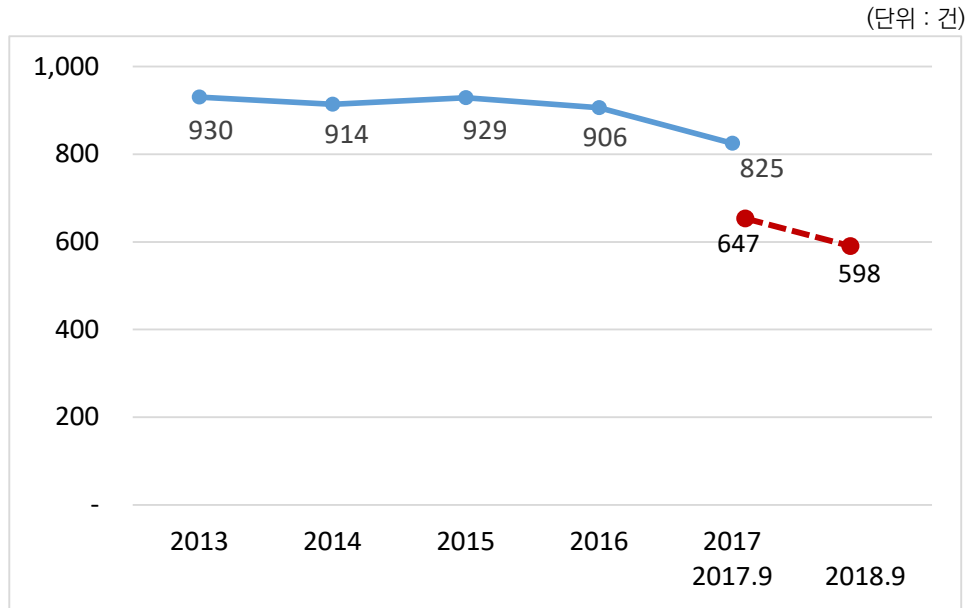
개별 범죄에 있어서는 1년 후의 범죄 발생 수준을 예측하기 위해서 최근 5년, 2018년 9월까지를 포함하여 6년간의 추세를 활용하여 변화를 예측하였다. 특히 2017년 9월과 2018년 9월까지의 동기간 범죄 발생 건수를 비교하여 2019년의 5대 범죄 발생을 예측하였다.

5대 범죄 유형별 범죄 발생 예측 범죄통계에 근거한 발생추세를 기본으로 하되, 2019년의 범죄를 예측할 수 있는 외적 변수에 관한 자료들, 그리고 5대 범죄의 발생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1. 살인범죄 소폭 감소 전망

최근 6년간 살인범죄 발생 건수는 2015년 이후로 전반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2017년에 이전보다 감소의 폭이 컸고, 살인 기수와 미수를 합쳐서 825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기준 2017년의 동기 598건 대비 49건이 감소하여, 2019년에도 소폭 감소가 예상된다.

[그림 3-1-10] 살인범죄 발생 추이



출처 : 경찰청(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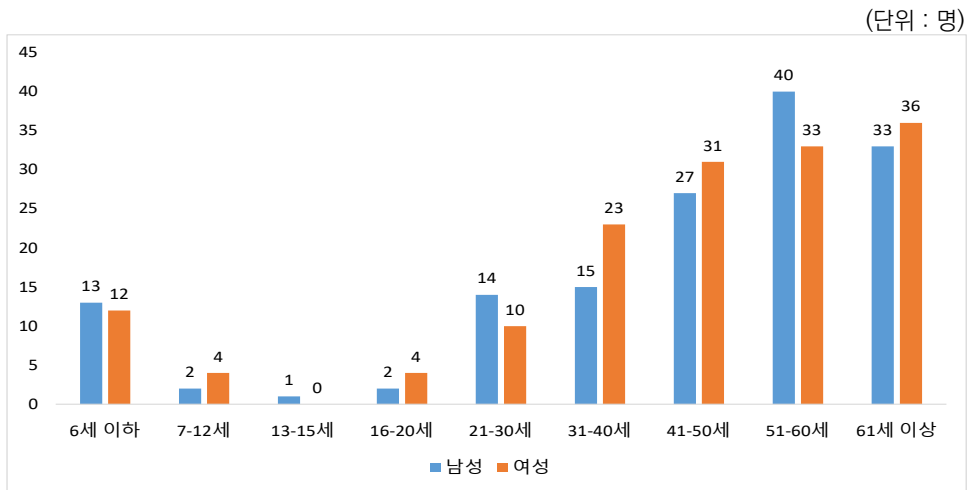
2017년 기준으로 살인범죄(기수)는 친족(34.0%), 친구·애인(10.7%), 또는 직장 동료(3.8%) 등에 의해서 발생하였으며, 이웃·지인 간(11.9%)의 발생비율도 여전히 높았다. 타인(15.7%)의 비율을 고려하였을 때 친족 등 주변인에 의해서 발생한 살인의 비중이 여전히 높았다. 사회·경제적인 불안정으로 인한 현실 불만과 가정불화 등 개인적 좌절을 경험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분노·충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는 대상은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다.⁷⁴⁾ 실제로 살인의 피해자 중 아동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세 이하 아동의 경우 2017년 8.3%로, 2016년에 비해서도 증가하였고, 61세 이상의 피해자도 22.9%로 2016년보다 증가하였다.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2017년 기준 50.8%로, 2016년의 54.2%에 비해서 소폭 감소하였다.⁷⁵⁾

74) 좌절상태에서 사람들은 종종 직접적인 분노 유발자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 공격성을 전이시키며, 그 공격성은 주로 약하거나 상황적으로 용이한 대상을 향한다. Marcus-Newhall, A., Pedersen, W. C., Carlson, M., & Miller, N., Displaced Aggression Is Live and Well :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4), 2000, p.670.

75) 살인 피해를 입은 남녀 비율이 비슷한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인데, 범죄조직의 활동으로 인한 남성 사망률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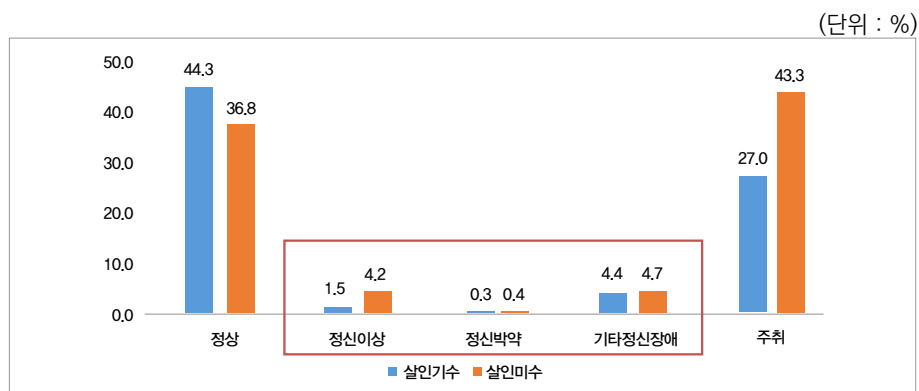
[그림 3-1-11] 살인범죄 피해자 연령 분포



* 연령미상, 성별불상 제외
출처 : 경찰청(2018), 2017 범죄통계

살인 범죄자 중에서 정신이상이나 정신박약 등 정신장애를 겪고 있었던 범죄자는 살인기수의 경우 6.2%(정신이상 1.5%, 정신박약 0.3%, 기타 정신장애 4.4%)에 이르며, 이는 전체 범죄 평균 0.6%나 다른 5대 범죄 평균 1.2%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정신질환의 유병율 감소⁷⁶⁾를 기계적으로만 적용한다면 살인범죄 중 정신질환자에 의한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림 3-1-12] 살인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출처 : 경찰청(2018), 2017 범죄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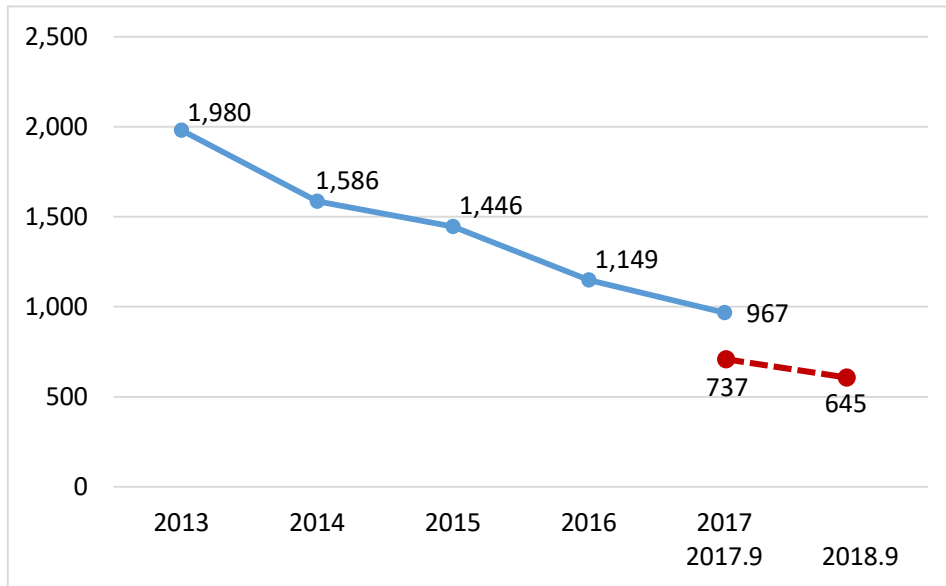
76)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1년 유병률은 2001년 18.5%, 2006년 15.2%, 2011년 15.4%, 2016년 12.8%로 대체로 감소추세에 있다.

2. 강도범죄 지속적 감소 전망

강도범죄의 발생 건수 역시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5대 범죄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서 2017년에는 967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8년 9월까지의 발생 건수가 2017년 동기간의 발생 수 645건에 비해서 92건이 감소하여 강도범죄의 경우 2019년에도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13] 강도범죄 발생 추이

(단위 : 건)



출처 : 경찰청(2018)

강도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17년에는 마취강도나 감금강도 등 발생량이 매우 적은 강도 유형을 제외하고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특히 비침입강도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상강도의 발생건수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우범지대를 중심으로 CCTV의 설치가 증가되면서 노상범죄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3-1-11〉 최근 5년간 강도범죄의 범죄수법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822 (100.0)	1,547 (100.0)	1,446 (100.0)	1,149 (100.0)	967 (100.0)
침입강도	일반강도(%)	275 (15.1)	243 (15.7)	205 (14.2)	169 (14.7)	144 (14.9)
	감금강도(%)	25 (1.4)	23 (1.5)	16 (1.1)	11 (1.0)	12 (1.2)
	인질강도(%)	25 (1.4)	11 (0.7)	14 (1.0)	14 (1.2)	4 (0.4)
	기타 침입강도(%)	508 (27.9)	416 (26.9)	372 (25.7)	289 (25.2)	257 (26.6)
비침입 강도	차내·운전자 상대 강도(%)	77 (4.2)	74 (4.8)	70 (4.8)	44 (3.8)	44 (4.6)
	노상강도(%)	285 (15.6)	226 (14.6)	185 (12.8)	158 (13.8)	105 (10.9)
	차량이용강도(%)	16 (0.9)	29 (1.9)	17 (1.2)	10 (0.9)	8 (0.8)
	마취강도(%)	35 (1.9)	21 (1.4)	37 (2.6)	14 (1.2)	23 (2.4)
	약취유인강도(%)	61 (3.3)	76 (4.9)	112 (7.7)	80 (7.0)	49 (5.1)
	기타 비침입강도(%)	507 (27.8)	414 (26.8)	407 (28.1)	355 (30.9)	315 (32.6)
해상강도(%)		0 (0.0)	1 (0.1)	0 (0.0)	0 (0.0)	0 (0.0)
강도강간(%)		8 (0.4)	13 (0.8)	11 (0.8)	5 (0.4)	6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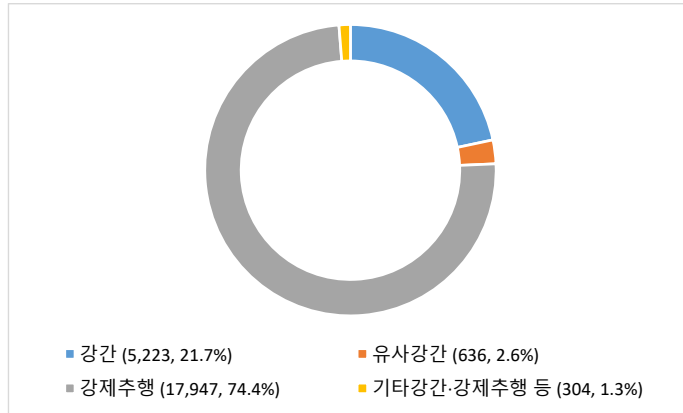
* 연도별로 미상 또는 결측치의 편차가 커서 이를 제외하고 유형별 비율을 계산하였음(2013년 : 158건, 2014년 : 39건, 2015년 : 0건, 2016년 : 0건, 2017년 : 0건)
출처 : 경찰청(2014~2018)

3. 강간·강제추행 증가세 유지 전망

강간·강제추행범죄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성격이 다른 몇 가지 유형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강간(유사강간 포함)과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전체 강간·강제추행범죄 중 강제추행이 74.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강간이 21.7%, 유사강간이나 기타 강간·강제추행범죄는 각각 2.6%와 1.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1-14] 강간·강제추행의 유형별 분포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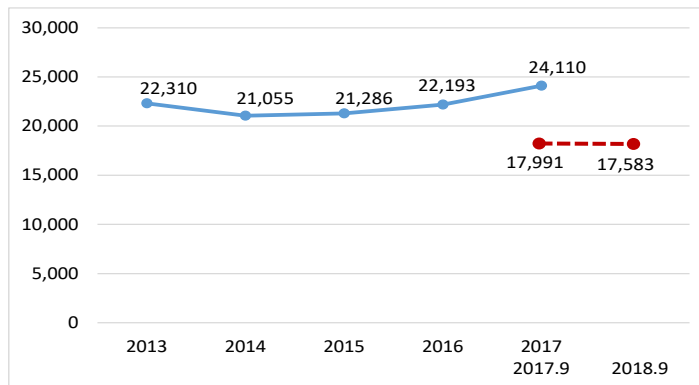


출처 : 경찰청(2018), 2017 범죄통계

2012년 12월에 형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성범죄에 대한 최고죄가 폐지되고 2013년 6월부터 개정내용이 전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강간·강제추행범죄는 2013년 22,310건이 발생하여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해인 2014년 21,055건이 발생하면서 한 차례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6년과 22,193건에서 2017년에 24,110건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 9월 기준 17,583건이 발생하여, 2017년 동기 대비 408건이 감소한데 그쳤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강간·강제추행범죄의 발생건수는 2019년에도 소폭 증가하거나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1-15] 최근 6년간 강간·강제추행범죄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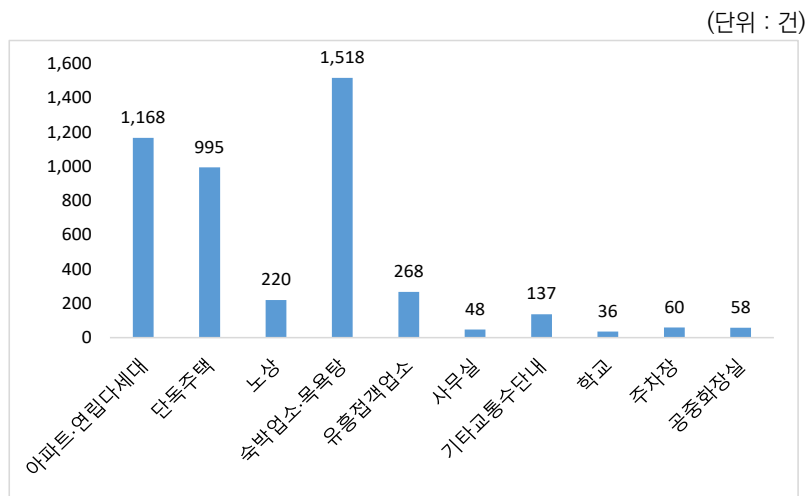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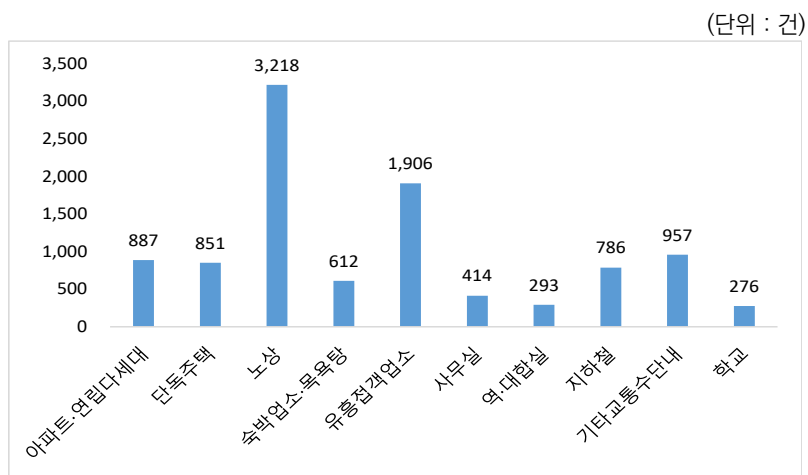
출처 : 경찰청(2018)

강간과 강제추행의 경우 범죄 발생 특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발생 장소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강간의 경우 주로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의 사적인 주거공간이나 숙박업소·목욕탕 등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지 않는 이상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거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 강제추행의 경우 사적인 공간보다는 노상이나 유흥접객업소 등 타 인과의 접촉 빈도가 높은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주요 발생 장소와 발생 시간대 중심의 순찰 확대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그림 3-1-16] 강간의 주요 발생장소



[그림 3-1-17] 강제추행의 주요 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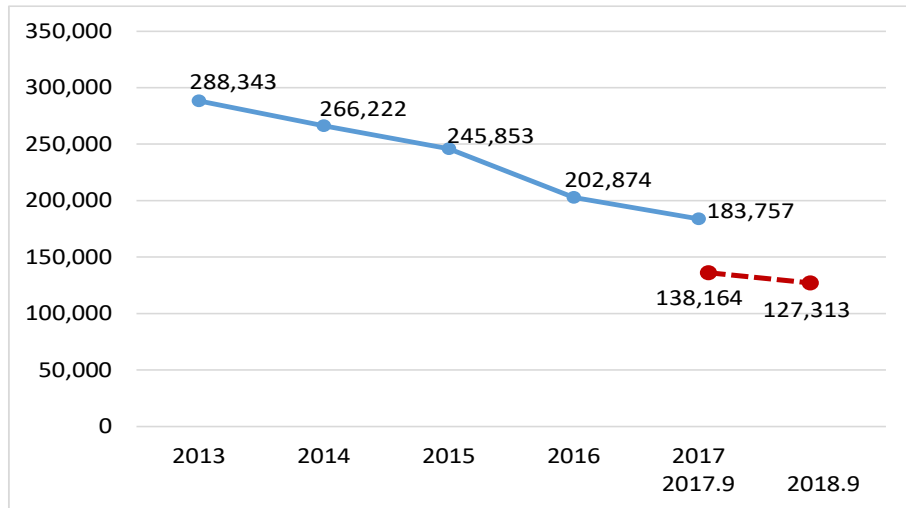
* 미상·기타장소 제외 상위 10위 발생장소
출처 : 경찰청(2018), 2017 범죄통계

4. 절도범죄의 지속적 감소 전망

절도범죄는 비교적 장기간 증가 추세가 이어지던 끝에 2012년 29,460건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수년 간 감소의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9월 기준 138,164건으로 2016년 동기간 대비 7.8% 감소하여, 2018년에도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절도의 감소가 상당 수준으로 진행되었고 2016년 대폭 감소 후 2017년 9월까지의 2016년 동기 대비 감소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감소세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3-1-18] 절도범죄 발생 추이

(단위 : 건)



출처 : 경찰청(2018)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절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 수단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평소에 현금 등을 소지하거나 큰 금액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범행으로 인한 비용에 비해서 기대 가능한 이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강·절도의 주요 대상 중 하나였던 전자제품의 교환가치가 감소한 것도 관련 범죄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다. 절도 범죄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0대 인구비율이 줄어드는 것도 한 가지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연도별로 유형별 변화의 추세를 확인해보면 최근에 절도수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침입절도는 발생건수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발생비율에 있어서도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침입 절도의 경우 특히 기타 유형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 등의 수법에 비해서 신종 절도수법들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에 대한 절도가 한때 성행하였으나 지금은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다. 자전거의 경우 2014년과 2015년에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2016과 2017년에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동수단의 경우 주차시설 등에 CCTV 설치가 증가하고 경로 추적 기술 등이 발달하여 적발 가능성이 높고 자전거 절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얻어진 결과로 추정된다.

〈표 3-1-12〉 최근 5년간 절도범죄의 범죄수법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273,024 (100.0)	260,511 (100.0)	245,823 (100.0)	203,037 (100.0)	183,757 (100.0)
침입 절도	빈집 절도 (%)	30,337 (11.1)	23,753 (9.1)	17,919 (7.3)	11,908 (5.9)	8,109 (4.4)
	사무실 절도 (%)	3,380 (1.2)	3,615 (1.4)	2,825 (1.1)	2,113 (1.0)	1,711 (0.9)
	공장 절도 (%)	1,096 (0.4)	1,393 (0.5)	819 (0.3)	466 (0.2)	393 (0.2)
	상점 절도 (%)	17,120 (6.3)	17,875 (6.9)	14,830 (6.0)	10,362 (5.1)	7,684 (4.2)
	숙박업소 절도 (%)	1,436 (0.5)	1,079 (0.4)	963 (0.4)	798 (0.4)	498 (0.3)
	기타 침입절도 (%)	35,911 (13.2)	34,605 (13.3)	29,904 (12.2)	22,098 (10.9)	17,286 (9.4)
	비침입 절도	소매치기 절도 (%)	1,819 (0.7)	1,454 (0.6)	1,401 (0.6)	1,047 (0.5)
날치기 절도 (%)	1,248 (0.5)	746 (0.3)	384 (0.2)	260 (0.1)	168 (0.1)	
기타 치기절도 (%)	4,674 (1.7)	4,409 (1.7)	5,327 (2.2)	5,192 (2.6)	5,163 (2.8)	
들치기 절도 (%)	26,439 (9.7)	23,128 (8.9)	22,809 (9.3)	19,628 (9.7)	18,658 (10.2)	
속임수 절도 (%)	4,442 (1.6)	2,967 (1.1)	2,572 (1.0)	2,149 (1.1)	1,792 (1.0)	
기타 비침입절도 (%)	92,459 (33.9)	94,644 (36.3)	99,645 (40.5)	94,970 (46.8)	94,564 (51.5)	
기타	차량 절도 (%)	7,045 (2.6)	5,636 (2.2)	4,608 (1.9)	3,501 (1.7)	2,733 (1.5)
	오토바이 절도 (%)	17,669 (6.5)	13,365 (5.1)	9,627 (3.9)	6,394 (3.1)	5,392 (2.9)
	자전거 절도 (%)	15,774 (5.8)	22,357 (8.6)	22,538 (9.2)	15,170 (7.5)	12,713 (6.9)
	축산물 절도 (%)	473 (0.2)	571 (0.2)	580 (0.2)	540 (0.3)	414 (0.2)
	기타 절도 (%)	11,702 (4.3)	8,914 (3.4)	9,072 (3.7)	6,439 (0.0)	5,657 (3.1)

* 연도별로 미상 또는 결측치의 편차가 커서 이를 제외하고 유형별 비율을 계산하였음(2013년 : 15,319건, 2014년 : 5,711건, 2015년 : 30건, 2016년 : 2건, 2017년 : 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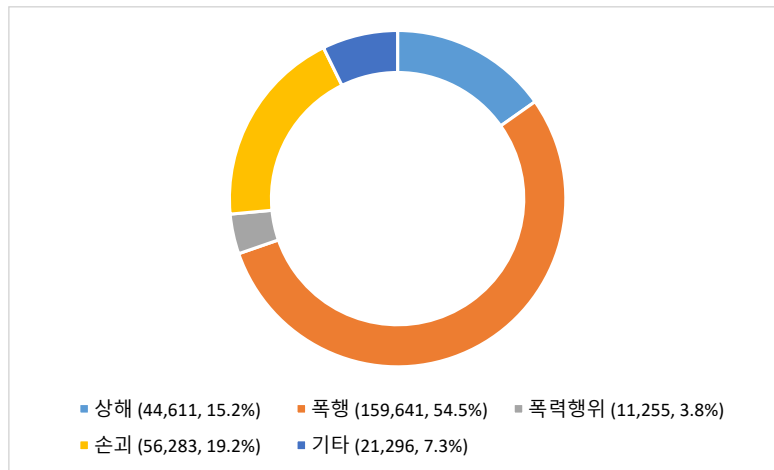
출처 : 경찰청(2014~2018)

5. 폭력범죄 소폭 감소 전망

폭력범죄의 경우 폭행죄, 상해죄, 폭력행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손괴죄, 기타 등의 범죄를 포함한다. 2017년을 기준으로 폭력범죄의 유형별로 비율을 확인한 결과 폭행이 54.5%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손괴 19.2%, 상해 15.2%, 폭력행위 3.8%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는 단순 폭력범죄, 즉 폭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3-1-19] 폭력범죄의 유형별 분포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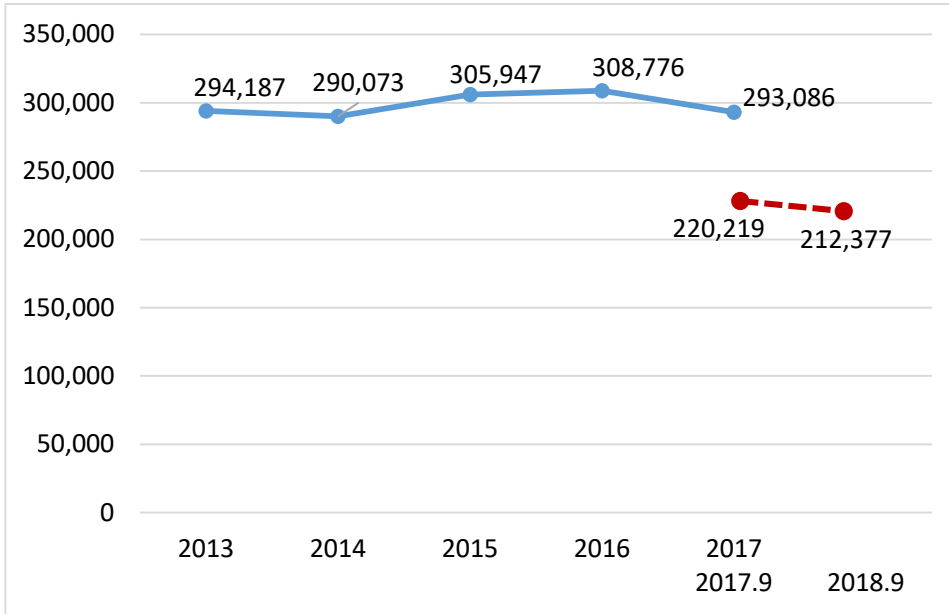


* 기타 : 체포 감금, 협박, 약취유인, 공갈
출처 : 경찰청(2018), 2017 범죄통계

폭력범죄는 2014년 이후 소폭 증가하여 2015년에 30만 건 이상 발생하였다. 그러나 2017년에는 30만 건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8년 9월 기준 2017년 동기간 212,377 건 대비 7,842 건이 감소하였다. 폭력범죄는 전체 범죄의 감소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며, 2019년에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20] 폭력범죄 발생 추이

(단위 : 건)



출처 : 경찰청(2018)

III. 지능 범죄 전망

기술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들이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산업과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용하여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지능 범죄들이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능 범죄자들은 범행 수법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다양화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형태 또는 수법을 이용하는 범죄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새로운 범죄에 대한 사전적 예측의 한계로 인해 법집행기관은 이미 일어난 범죄를 기반으로 사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사전에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피해를 예방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까지의 범죄 추세와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추가적인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데 본 치안전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발달하는 기술과 통신을 악용하여 범행 수법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발현되어 오고 있는 지능 범죄의 경우, 더욱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장에서는 지능범죄 중에서도 가장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고, 범행이 대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질 수 있으며, 피해자 국민 개개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여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있는 전화금융사기 및 불법사금융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전화금융사기 및 불법사금융의 의의와 동향

전화금융사기는 흔히 우리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알려진 범죄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의 정의에 따르면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 범죄”이다.⁷⁷⁾

이처럼 사기 범죄인 보이스피싱과는 다르게, 불법사금융의 경우는 금융업 영위를

77) “피싱사기 정의.” 보이스피싱지킴이 (2018. 12. 6. 검색).

위해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없이 운영을 하거나, 준수가 요구되는 규제 사항들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행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불법사금융은 대부업법 관련하여 인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불법 대부업, 허가되지 않은 양태로 채권을 추심하는 불법채권추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는 고금리 대부 행위 등이 있고, 방문판매업법을 위반하여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는 행위, 그리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비록 전화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은 서로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으나,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들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1,500조 시대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이 생계유지라는 각박함 속에서 찾아온 절망감에 심지어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도록 만든다.

불법다단계 업체를 이용한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이라는 조희팔 사건에서 가족, 친지, 친구까지 끌어들이고 빚까지 내어 투자했다가 모든 돈을 사기 당하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자살을 한 피해자들만 수십여명에 달한다.⁷⁸⁾ 또한, 대부업으로 돈을 빌려쓰고 고리의 사채에 시달리다 자살을 하기도 하고,⁷⁹⁾ 전화금융사기로 인해 금액을 편취당하고 피해사실을 비판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⁸⁰⁾

하지만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 범죄들은 아직까지 그 유형과 수법을 변형시켜가면서 계속되어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 전화금융사기는 불법사금융과 혼재되어, 대출이 필요한 서민을 기망하는 형태인 대출빙자형 전화금융사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먼저 전반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 발생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래 표〈표3-1-13〉에서 볼 수 있듯이, 2018년 상반기는 2017년 상반기에 비하여 피해액수, 피해자수, 피해건수 및 관련 대표통장 건수 모두에 있어서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피해

78) “강태웅 리스트에 벌벌 떠는 檢·警”, 일요서울, 2015. 10. 19.

79) “[단독] 연 250% 조폭고리사채업자 빚 독촉에 자살”, MBC뉴스, 2011. 6. 10; “사채의 밧, 유흥업소 여종업원 3명 자살”, 서울경제, 2010. 7. 11; “채무자 자살까지 부른 고리 사채”, 광주일보, 2012. 4. 24; “노점상 자살 기도까지-고리사채 40대 女 영장”, 뉴시스, 2007. 2. 26; “고리사채 힘들다” 중소기업 대표 자살, 동아일보, 2010. 2. 18.

80) “광주 보이스피싱 피해자 자살 “괴로워했다” 네티즌 “살인죄로 적용해라”, 서울경제, 2017. 7. 28; “[데스크 칼럼] 목숨까지 앓아간 보이스피싱, 남의 일 같습니까?”, 한국스포츠통계, 2017. 7. 29.

액과 피해자수에 있어서 50%를 넘는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8년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피해액 규모는 1,802억원으로 2017년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피해 규모인 1,038억원 대비 73.7%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2018년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수는 2만 1,006명으로 2017년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수인 1만 3,433명 대비 56.4% 증가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피해건수는 3만 996건으로 2017년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피해건수인 2만 2,051건 대비 40.6%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계좌인 대포통장의 경우 또한 2018년 상반기 2만 6,851건으로 2017년 상반기 2만 1,012건 대비 27.8% 증가하였다.

〈표 3-1-13〉 18년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현황

(단위 : 억원, 명, 건,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증감(율)(B-A)
				상반기 (A)	상반기(B)**	
피 해 액	2,444	1,924	2,431	1,038	1,802	764 (73.7)
피해자수	32,764	27,487	30,919	13,433	21,006	7,573 (56.4)
피해건수	57,695	45,921	50,013	22,051	30,996	8,945 (40.6)
대포통장*	57,299	46,629	45,495	21,012	26,851	5,839 (27.8)

*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계좌
 ** 추가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변동 가능(이하 같음)
 출처 : 금융감독원(2018)

특히, 아래 표〈표 3-1-14〉와 같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계좌는 금융권역별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으로 구별하여 보았을 때, 2018년 상반기 총 2만 6,851건 중에서 1만 7,135건으로 은행권이 63.8%, 9,716건으로 제2금융권이 3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2017년과 비교하여 볼 때, 은행권의 경우 전체 발생 건수의 증가로 인해 발생건수는 16.4%p 증가하였으나, 전체 발생 건수에서의 비중은 70.1%였던 2017년에 비해 6.3%p 감소한 63.8%로 나타났다. 반면에 같은 기간 2017년과 비교하여 볼 때, 제2금융권의 경우 발생건수는 54.5%p나 증가하였으며, 전체 발생 건수에서의 비중 또한 29.9%였던 2017년에 비해 36.2%로 증가하였다.

〈표 3-1-14〉 금융권역별 대포통장 발생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16	2017	상반기(A)		2018 상반기(B)		증감(율)(B-A)	
			계좌수	(비중)	계좌수	(비중)		
은행	33,672	31,014	14,725	70.1	17,135	63.8	2,410	(16.4)
제2금융권	12,954	14,481	6,287	29.9	9,716	36.2	3,429	(54.5)
상호금융	6,907	7,171	3,002	47.7	4,793	49.3	1,791	(59.7)
새마을금고	3,176	4,010	1,703	27.1	3,054	31.4	1,351	(79.3)
우체국	2,759	3,172	1,532	24.4	1,765	18.2	233	(15.2)
증권 등	112	128	50	0.8	104	1.1	54	(108.0)
합 계	46,626	45,495	21,012	100.0	26,851	100.0	5,839	(27.8)

출처 : 금융감독원(2018)

특히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유형별 피해액은 아래 〈표3-1-15〉에서 볼 수 있듯이, 앞서 언급한 대출빙자형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2018년 상반기에만 1,274억 원에 이르러, 2017년 같은 기간 피해액수인 740억 원과 비교할 때 72%나 증가하였다. 기존의 정부기관등 사칭형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또한 2018년 상반기에만 528억 원으로 2017년 같은 기간 피해액수인 298억 원과 비교할 때 77.6%나 증가하였다. 유형 간 비교 분석에 의하면, 2018년 상반기 대출빙자형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전체 피해액의 70.7%로 29.3%의 피해액을 차지하는 정부기관 등 사칭형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3-1-15〉 18년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유형별 현황

(단위 : 억원, %, %p)

구 분		2017	상반기(A)	2018	증감(율)(B-A)	
				상반기(B)		
대출빙자형	피해액	1,808	740	1,274	533	(72.0)
	(비중)	(74.4)	(71.3)	(70.7)	(Δ 0.6)	
정부기관 등 사칭형	피해액	622	298	528	231	(77.6)
	(비중)	(25.6)	(28.7)	(29.3)	(0.6)	
합 계	피해액	2,431	1,038	1,802	764	(7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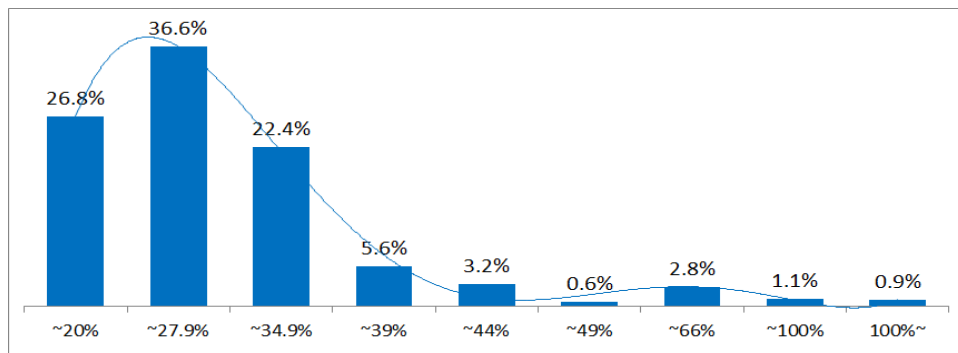
출처 : 금융감독원(2018)

불법사금융 발생 현황의 경우, 앞서의 전화금융사기와 달리 명백한 피해자가 없을 수도 있으며 피해가 있더라도 대체자금 마련 수단 부재 등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발생 건수가 많을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

금융감독원은 2017년도 말부터 매년 정례적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사금융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시계열 통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갤럽이 조사한 만 19세 이상~79세 이하 국민 5천명 대상 표본조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불법사금융 실태를 보여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 실태조사에서 불법 사금융시장의 대출잔액은 2017년도 말 기준으로 6.8조원으로, 약 52만명(전국민의 1.3%)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불법사금융 금리는 아래 [그림 3-1-21]과 같이 10.0%~120.0% 수준이며, 66% 초과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이 중 실태조사 당시 법정 최고금리인 27.9%를 초과하는 불법사금융은 36.6%로,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내려간 것을 감안할 때 현행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사금융은 50%를 상회하거나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21] 불법사금융 금리 분포



출처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8)

나아가, 불법사금융의 문제점은 단순히 불법적인 초과 금리를 통한 사업 영위만이 아니라, 차주들이 다양한 형태의 불법채권 추심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위 실태 조사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차주의 8.9%가 반복적 전화·문자, 야간 방문, 공포심 조성, 제3자에게 변제강요, 신규대출로 변제 강요, 소속·성명 미고지 및 검사 사칭 등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중에서 64.9%의 차주는 보복우려, 대체 자금마련 곤란 등을 이유로 신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2018년 상반기 전화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 발생 현황에 대비하여 동년 9월까지 경찰에 의해 검거된 전화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 현황을 살펴보면 각각 다음

〈표3-1-16〉과 〈표3-1-17〉과 같다. 전체적으로 불법사금융은 대체로 2017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와 인원 모두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전화 금융사기는 2017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와 인원 모두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난다.

보다 구체적으로, 불법사금융의 경우 아래 〈표 3-1-16〉에 나타나듯이, 총 1,632건, 4,361명을 검거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검거 건수 대비 4.3%, 검거 인원 수 대비 13.2% 감소하였다. 유사수신의 경우 검거건수는 467건에서 401건으로 14.1% 감소, 검거 인원은 1,499명에서 1,559명으로 4% 증가하였으며, 불법다단계의 경우 검거 건수는 141건에서 87건으로 38.3% 감소, 검거 인원은 1,149명에서 414명으로 64%나 감소하였다. 특히, 불법대부업은 검거 건수와 인원 모두 각각 전년도 대비 10%와 4.8% 증가하였으나,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검거 건수와 인원 모두 각각 전년도 대비 21.5%와 21.8%나 감소하였다.

〈표 3-1-16〉 불법사금융 유형별 검거 건수 및 인원

구분	계		불법대부업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2013	2,722	5,749	2,087	3,693	285	522	225	935	125	599
2014	1,802	4,209	1,259	2,330	216	387	232	1,089	95	403
2015	1,417	3,747	781	1,677	198	339	241	1,142	197	589
2016	1,821	5,010	808	1,755	229	472	628	2,053	156	730
2017	2,098	6,459	1,062	2,418	271	512	598	2,134	167	1,395
2017. 9	1,705	5,024	897	1,990	200	386	467	1,499	141	1,149
2018. 9	1,632	4,361	987	2,086	157	302	401	1,559	87	414
전년대비	-4.3%	-13.2%	10.0%	4.8%	-21.5%	-21.8%	-14.1%	4.0%	-38.3%	-64.0%

출처 : 경찰청(2018)

명확한 발생 건수를 집계하기 어려운 불법사금융 범죄의 특성상, 위와 같은 검거 건수와 인원의 변화는 검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찰의 단속 노력 뿐 아니라 발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우선 불법다단계 검거 건수와 인원의 급감은 2017년도에 가상화폐를 미끼로 하는

불법다단계 사기 발생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불법다단계 검거 건수와 인원이 급증한 데 대한 반사적 효과로 보인다. 실제로 2018년도 상반기를 2017년도 상반기와 비교하였을 경우에 급감한 것이지만, 그 이전인 2016년도부터 2013년까지와 비교를 하였을 경우 대체로 비슷한 정도의 검거 건수와 인원을 유지하고 있다.

불법채권추심 검거 건수 및 인원의 감소에도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차주의 대체자금 마련 곤란으로 인한 미신고가 일부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다중 채무자 및 저소득, 저신용층 등 생계형 취약 차주들이 불법사금융 외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채권추심 등에 시달리더라도 대출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이를 감수하는 것으로 보인다.⁸¹⁾

반면, 불법채권추심 행위의 실제 발생 자체도 일부 감소하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사, 대부업자 등이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도록 하면서 동시에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면 채권추심회사에도 최대 80%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18년 입법 예고하였으며, 동 개정안은 5월 29일부터 공포·시행하였다.⁸²⁾ 이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일부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억제되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화금융사기 검거건수 및 인원의 경우 아래<표3-1-17>에서 보듯이, 총 2만 4,876건 발생하여 2,825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 중에서 2만 2,311건에 대한 2만 8,170명을 검거하였다. 전년도 대비 발생과 피해액수가 각각 45.6%, 63.5% 증가하였으나, 검거 건수 및 인원수 또한 전년도 대비 각각 44.9%, 40.3% 증가하였다.

81) “저신용·저소득자 불법사금융 내모는 최중구 규제철폐”, 스카이드일리, 2018. 10. 4.

8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2018. 2. 13. (2018. 12. 6. 검색).

〈표3-1-17〉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 피해액, 검거건수 및 인원

구 분	발생건수(건)	피해액(억원)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2013	21,634	1,429	8,143	14,010
2014	22,205	1,887	8,170	12,814
2015	18,549	2,040	15,887	22,644
2016	17,040	1,468	11,386	15,566
2017	24,259	2,470	19,618	25,473
2017. 9	17,090	1,728	15,399	20,077
2018. 9	24,876	2,825	22,311	28,170
전년대비	45.6% ↑	63.5% ↑	44.9% ↑	40.3% ↑

출처 : 경찰청(2018)

2016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으로 도입된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 및 대포통장 과다발생 금융회사에 대해 개선계획 제출 명령제도 등으로 인해 2017년 전화금융사기 발생과 피해의 감소가 전망되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늘어난 것과 같은 이유로, 2018년에도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범죄자들이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갈수록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범죄 대상의 취약성을 공략하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범죄 수법과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2018년 역대 최대의 피해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⁸³⁾ 아래 〈표3-1-18〉에서 보듯이 범죄자들은 기존에 국민들 대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 예방 효과가 늘어난 정부사칭형이 아닌, 대출 수요가 높은 40대와 50대를 대상으로 하는 저리로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원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유도하는 대출빙자형 전화금융사기로 수법을 진화시켰다. 나아가 범죄자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비트코인 또는 실물 없이 카드 번호만 있으면 사용가능한 영수증 형식의 상품권 등 범죄 대상에게 익숙하지 않은 다양한 새로운 범죄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대출빙자 전화가 금융사기라는 것을 피해자가 알아채기 어

83) 「[서민 울리는 불법금융 기승 | ① 보이스피싱 역대 최대 피해 우려] 중국·대만·한국이 '보이스피싱 트라이앵글'」, 내일신문, 2018. 10. 30.

렵게 하고 있다.⁸⁴⁾

〈표 3-1-18〉 2018 대출빙자형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성별·연령 분포

(단위 : 억원, %)

구분	2017 상반기						2018 상반기						
	남		여		계		남		여		계		
피 해 액	20·30대	89	(12.1)	77	(10.5)	166	(22.6)	121	(9.7)	103	(8.2)	224	(17.8)
	40·50대	270	(36.7)	205	(27.8)	475	(64.5)	494	(39.3)	351	(27.9)	845	(67.2)
	60대 이상	60	(8.2)	34	(4.6)	94	(12.8)	128	(10.2)	59	(4.7)	188	(14.9)
	합 계	420	(57.1)	316	(42.9)	735	(100.0)	744	(59.1)	514	(40.9)	1,258	(100.0)

* 법인 제외, ()는 전체 대비 비중
출처 : 금융감독원(2018)

2. 전화금융사기 및 불법사금융 계속 증가 전망

2018년 전화금융사기에 있어서 기존 공공기관 사칭정보다 대출빙자형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불법사금융 중에서도 다른 범죄들에 비하여 유독 불법대부업 범죄만이 증가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가계부채 1,500조라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반영하는 동시에, 수많은 서민들이 범죄의 피해자로 노출이 되는 원인을 알려준다. 다시 말해, 수많은 서민들이 대출을 필요로 하지만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대출 이자의 압박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의 발생은 범죄에 적합한 대상이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바, 대출을 필요로 하지만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출 이자의 압박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서민들은 대출 또는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을 미끼로 하는 불법사금융 및 대출빙자형 전화금융사기의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범죄 대상으로서 매력을 가진 피해자들이다.

2017년 적극적인 정부의 단속으로 인해 전화금융사기 및 불법사금융에 대한 검거 건수와 인원이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부의 단속 노력이 무의미할 정도로 2018년에도 계속하여 전화금융사기 및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렸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위와 같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제반

84) 금융감독원 블로그, “17년 상반기중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2018. 12. 6. 검색).

환경적 요인이 나아지지 않는 한 2019년에도 2018년과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전화금융사기 및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019년에도 범죄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현재의 제반 환경적 요인이 쉽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18년도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하여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조기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한국은행 또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정부의 가계 대출에 대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가계 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2%로,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 경제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⁸⁵⁾ 이는 2017년 대비 2.3%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BIS가 집계한 43개 주요국 가운데 중국(3.7% 포인트), 홍콩(3.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⁸⁶⁾

따라서 2018년도에 이어 2019년에도 가계부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그림 3-1-22]와 같이 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실업자수 등 고용 쇼크와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금년 10월 한국은행은 추가적인 기준 금리 인상 대신 현 수준인 연 1.5%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장의 금융 불균형 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정치권의 금리 인상 압박 등을 고려할 때 조만간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견하였었다.⁸⁷⁾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행은 11월에 기준 금리를 1.75%로 인상하였다.⁸⁸⁾ 또한,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정부의 2018년 新DTI 및 DSR 적용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 및 여신심사 강화조치 또한 계속되어, 국내은행의 가계 대출태도 지수는 아래 [그림 3-1-23]에서 살펴보듯이 계속하여 강화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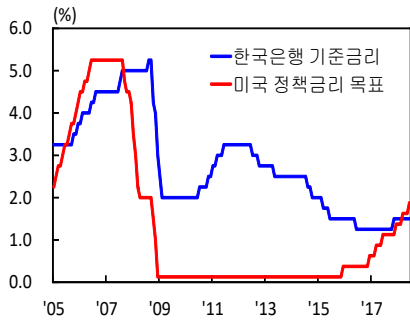
85) “누르고 놀러도…한국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3위”, 연합뉴스, 2018. 10. 3.

86) “누르고 놀러도…한국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3위”, 연합뉴스, 2018. 10. 3.

87) “[속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집값보다 고용쇼크 급했다”, 중앙일보, 2018. 10.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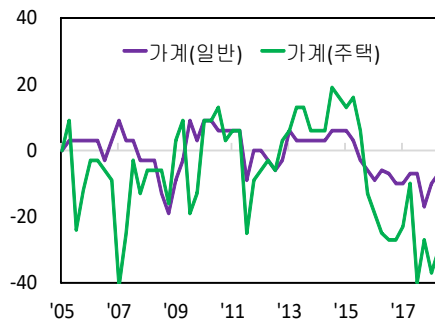
88) “한은 기준금리 연 1.75% 인상에 빚 낸 가계, 중기·소상공인 비상”, 경기일보, 2018. 12. 2.

[그림 3-1-22] 한·미 정책금리 추이



* 미국의 경우 정책금리 목표 범위(target range)의 중간치
출처 : 한국은행(2018)

[그림 3-1-23] 국내은행의 가계 대출태도 지수



* 지수가 0보다 크면 '완화', 0보다 작으면 '강화' 응답 비중이 높음을 의미
출처 : 한국은행(2018)

이는 곧 2019년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은 더욱 어려워지고, 서민들은 대출을 미끼로 하는 범죄에 더욱 취약하게 된다는 것이다. 범죄자에게 매력적인 범죄 취약 대상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사금융 중에서도 불법대부업과 전화금융사기 중에서도 대출빙자형 전화금융사기는 2019년에도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불법대부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은 미등록 대부업의 불법성과 법정 이자율 초과 부분의 무효성, 이미 지급한 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분의 원본에의 충당 또는 반환 청구 가능성 등에 대한 대국민 설명과 홍보를 강화하여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수사 협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출빙자형 전화금융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은 비대면식 은행 서비스나 가상화폐를 악용한 새로운 범죄 수법으로의 진화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대국민 홍보를 보다 활성화하여야 한다.

나아가, 범죄‘자’만이 아니라 범죄‘수익금’에 대한 엄정한 사후 대응을 통하여 불법 대부업 및 대출빙자형 전화금융사기 범죄 억제 및 피해 회복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보다 적극적인 집행을 강조함으로써, 범죄수익창출 행위로서의 범죄 뿐 아니라 범죄수익은닉 행위에 대한 별개의 범죄로서 처벌 및 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적과 보전·몰수·추징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적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이 유죄 판결이 없이도 몰수가 가능하게 하는 민사 몰수 제도의 도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V. 과학수사 발전 전망

1. 과학수사 환경의 변화

1)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의 활용

최근 국제사회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출범 후 미·중 무역전쟁,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등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맞서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개혁에 적극 참여하여 이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입장⁸⁹⁾을 밝히는 등 국제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속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2019년 세계의 치안환경 또한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ICT의 융합으로 이뤄낸 혁명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사 및 과학수사, 법률 환경 또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범죄의 해결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완전 범죄를 위한 수법의 지능화로 현장에 증거를 남기지 않거나 현장 파괴 등 다양한 원인으로 과학수사의 어려움과 과학적 증거의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빅데이터와 AI 연동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의료, 뷰티, 패션 사업 및 금융권의 데이터 인텔리전스를 이용한 차별화된 서비스, 인슈어테크(Insurtech)⁹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전 세계 각국들은 4차 산업의 주요 기술과 치안정책과의 접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찰에서도 첨단기술을 접목한 치안과학기술을 개발 중이다. 국내·외에서 개발된 스마트 위치, 치안드론, 로봇경찰, 치안과학 기술의 활용은 과학수사에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광원 개발, CCTV영상검색 고도화, 레이저를 활용한 겹친 지문식별 기술 개발, 법의 곤충학을 활용한 사후 경과시간 추정 프로그램 개발 등 R&D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지문식별 및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폴리스랩 사업 구축 등 세부사업 진행

89) “시진핑, 세계정세는 중국에 유리한 변혁기 맞아”, 중앙일보, 2017. 6. 24.

90)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데이터분석, 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IT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보험서비스를 일컫는다. 김난도 외 8, 트렌드코리아 2019 미래의 창, 2018, 330~335쪽.

으로 과학수사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사물인터넷(IoT)⁹¹⁾, 드론, AI, VR 등의 분야는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과학수사를 열어갈 방안 마련을 위해 과학치안 R&D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활용도가 높은 드론을 경찰의 현장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영상분석 기술을 개발하여 실종자 수색에 활용하거나 용의자의 상태나 휴대 무기, 용의 차량 위치, 범죄현장 수사 등에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IoT와 관련 AI·VR 등 최신 ICT를 치안활동에 접목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과학수사 역량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과학수사 영역의 확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범죄 형태가 다양화, 지능화되면서 과학수사 요원의 전문성, 과학수사 기술 개발, 시스템의 고도화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치안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의 활용과 과학수사 인력의 전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과학수사의 전문성 제고와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2016년 과학수사센터를 과학수사관리관실로 확대 개편한 후 인적자원의 전문화, 과학수사 기법·장비의 첨단화, 대내·외 협력강화, 법률·조직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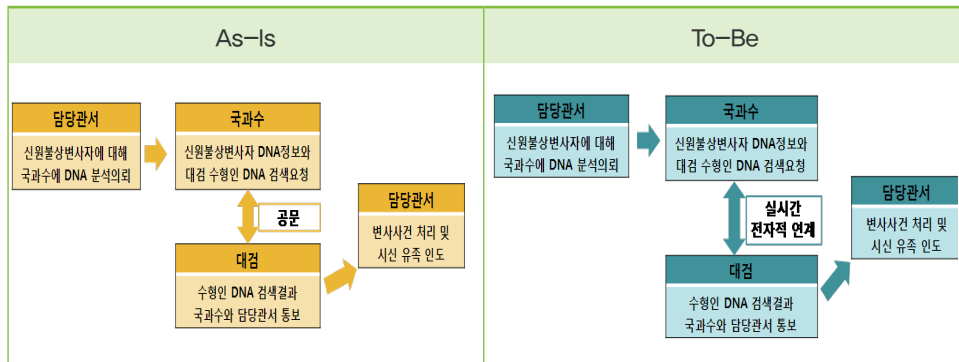
2018년에는 서울 등 3개 지방경찰청에 과학수사과를 신설하여 형사과에서 분리하는 등 조직 인프라 확장과 함께 검시조사관, 범죄분석요원 등 과학수사요원 경력 채용을 확대하여 전문 인력을 증원하였다. 그리고 전문 인력이 범죄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하도록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과학수사요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범죄 현장의 보이지 않는 혈흔을 찾기 위해 신제품 루미놀 시약을 개발하고, 고품질 수사 영상자료 확보 및 지속적인 DB구축 고도화를 통해 신속한 범죄 해결 역량을

91) 사물 인터넷(IoT) : 디지털의 발전 3단계로서, 사물(가전 장치)에 센서를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모은 후에 인터넷을 통해 개별 사물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 기술이다.

강화하고 있다.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고도화⁹²⁾ 및 지문감정관의 숙련도를 향상시켜 미제사건 중 786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⁹³⁾ 그리고 신원불상 변사자 DNA와 수형인 DNA DB 간 실시간 연계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0년 이후 약 2,700건에 대한 일괄 검색으로 변사자 신원을 확인하여 유족에게 인도하는 등 과학수사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림 3-1-24] 신원확인변사자 DNA, 수형인 DNA DB 실시간 연계 검색시스템 구축



출처 : 경찰청(2018)

신형 몽타주 장비를 도입하고 작성 능력을 향상시켜 나이변환 기능 등 다양한 얼굴 모습을 제공하고 있다. 장기 실종아동의 현재 나이 변환 모습 작성, 몽타주 기능을 활용한 CCTV상 희미한 얼굴 영상 인상 구체화, 범죄면 검사 중 얼굴 기억회상 몽타주 작성 등 세밀한 몽타주 작성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이상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의학, 법과학 등 총 6개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과학수사 주요 현안에 대한 객관적 조언을 바탕으로 과학수사의 객관화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

그리고 지문감정,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탐지), 영상분석, 범죄행동분석(프로파일링), 지리적 프로파일링(GeoPros), 체취증거견(犬), 수증과학수사 등 범죄분석과

92) 주민등록 지문자료 4천만 매(2007. 4.~2009. 12.) DB를 개선(이미지 보정)하고, 서버증설(기존 2기→3기)로 지문검색 속도를 향상하였다.

93) 2006년부터 2015년까지 AFIS를 통한 지문검색 건수 중 신원이 확인된 건수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6(46.8%) → 2009(53.8%) → 2012(51.1%) → 2015(59.8%). 권형진 외, 혈액으로 덮인 후 이를 세척한 잠재지문 현출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2018, 266쪽.

경험한 과학수사 활동에 대한 만족도 등을 검사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있다. 이렇듯 과학수사 업무 영역 확대는 물론 과학수사 기법의 고도화까지 다양하게 과학수사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 2019 과학수사 발전 전망

2018년에는 ‘과학수사 기법·장비의 첨단화, 인적자원의 전문화, 대내·외 협력 강화, 법률·조직 인프라 확충’이라는 네 가지 전략을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수사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과학수사 전공자 경력채용 확대, 과학수사 위상의 국제화, 국제적 인증의 재획득과 함께 서울 등 3개 지방경찰청에 과학수사과 신설 등 조직 인프라 확충의 성과를 이뤘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 「법과학감정실」 구축 기반도 마련하였다.

2019년에도 과학수사 분야의 현장 전문 인력의 확충은 필요하다. <표 3-1-19>의 과학수사요원의 5년간 현장감식 현황을 보면 절도는 감소하고 있으나 살인, 성폭력, 화재, 변사사건 등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사건의 증가에 따른 현장감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이와 더불어 전문 경력채용도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과학수사과 미설치 지방경찰청의 과학수사과 신설을 확대하고,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 통합 「법과학감정실」을 점차적으로 설치하여 과학수사 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다양한 과학수사기법·기술 개발과 함께 과학수사의 국제공인 인증, 국제 CSI 콘퍼런스 개최, 다양한 국가에 과학수사요원 파견·현장 감식교육 전수 등으로 한국경찰의 국제적 위상 강화도 예상된다.

과학수사에 첨단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기술·장비 개발 등 중·장기 R&D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현장에서 신속하게 신원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 지문식별 신원확인 시스템(폴리스랩 사업) 등 빅데이터와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과학수사에 폭넓게 도입하여 과학수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드론에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범죄사건 용의자 추적, 실종자 수색 및 증거 채집 등 과학수사에서의 활용 증가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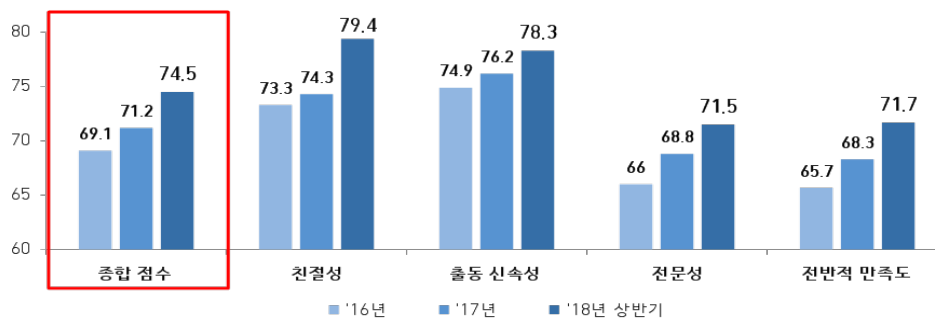
1) 과학수사 전문 인력 지속 충원

과학수사 현장 증거물의 무결성 입증 및 과학수사요원의 전문성 요구 등 사법 환경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에서는 인적 전문성에 대한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과학수사 전문 인력의 충원을 위해 전공자 경력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경찰 과학수사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전문성 부분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4월 16일 ~ 4월 18일 간 전화 설문으로 실시된 2018년 경찰 과학수사 국민 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종합 만족도는 74.5점으로 전년도 대비 3.3점, 4.7% 향상되었음에도 아직도 타 분야에 비해 전문성 부분에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성 분야에 대한 만족도는 2016년 66점, 2017년 68.8점, 2018년 상반기 71.5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친절성, 출동신속성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⁹⁴⁾

주된 요인으로는 증거 미채취 및 사건 미해결 등을 들 수 있는데, 현장 감식 책임 실명제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학수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첨단 장비·기법 개발뿐만 아니라 특성화된 교육으로 감정인 개인별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25] 과학수사 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 종합 점수 = 분야별 만족도(3개 × 각 20%) + 전반적 만족도(40%)

출처 : 경찰청(2018)

94) 친절성(79.4점, 전년 대비 6.9% 상승) > 출동 신속성(78.3점, 전년 대비 2.8% 상승) > 전문성(71.5점, 전년 대비 3.9% 상승)의 순이다.

국제화 시대에 따라 범죄가 광역화·지능화되어갈 뿐만 아니라 교묘한 방법으로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과학수사요원의 전문성은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특히, <표 3-1-19>와 같이 5년간의 과학수사요원의 현장감식 현황을 분석해 보면 강도, 절도 범죄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살인, 성폭력, 변사, 화재, 기타 범죄에서 매우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 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현장감식 인력 증원 및 과학수사요원의 전문성 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19〉 과학수사요원의 현장감식 현황

(단위 : 건)

구분	총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절도	변사	화재	기타
2013	135,778	797	840	1,319	461	71,994	35,814	13,600	10,953
2014	133,862	897	631	1,070	507	64,167	38,556	14,952	13,082
2015	124,657	771	536	938	474	52,063	40,446	14,948	14,481
2016	123,221	812	387	919	420	42,228	46,203	15,891	16,361
2017	127,524	1,005	420	1,467	476	37,437	49,928	15,971	20,820

출처 : 경찰청(2018)

아래 <표 3-1-20>의 5년간 과학수사요원의 현장 입장률을 살펴보면 비슷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절도범죄 발생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현장감식 대상 건수도 급격히 줄고 있으나 강력범죄 발생 건수와 현장 입장률은 매우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요범죄 증가로 인한 과학수사의 전문 인력 확대 및 전문성의 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20〉 과학수사요원의 현장 입장률

(단위 : %, %p, 건)

구분	현장 입장률		현장감식 대상 건수		강력범죄 발생 건수		절도범죄 발생 건수	
2013	37.23%		364,653		26,990		288,249	
2014	38.80%	+1.57%p	344,978	-5.4%	25,280	-6.3%	266,190	-7.7%
2015	38.17%	-0.63%p	326,566	-5.3%	25,333	+0.2%	245,839	-7.6%
2016	42.36%	+4.19%p	290,882	-10.9%	25,766	+1.7%	203,022	-17.4%
2017	46.05%	+3.69%p	276,906	-4.8%	27,278	+5.9%	183,729	-9.5%

출처 : 경찰청(2018)

각 지방경찰청에는 검시조사관, 범죄분석요원, 화재감식, 폴리그래프, 법최면, 과학수사 전공자 등이 다양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과학수사 전문화를 위한 각 분야별 인력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표 3-1-21〉 전문 과학수사 분야별 인력 현황

(2018. 9. 30. 기준, 단위 : 명)

구분	검시조사관	범죄분석요원	화재감식	폴리그래프	법최면	체취증거	수중과학수사
현원	144	39	104	42	22	11	74

출처 : 경찰청(2018)

경찰은 법의전문가(부검의 등) 등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검시조사관을 채용하고 있다. 2018년 37명을 신규 채용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수사연수원, 지방경찰청에서 현장 실무교육 이수 후 각 지방경찰청에 배치하여 과학수사·형사요원과 함께 변사현장에 직접 임장하여 변사자 및 증거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

일반 과학수사 전공자는 2018년 8월 31일 현재 총 94명이 배치되어 있다. 2017년 10명 채용에 이어 2018년에는 20명을 더 채용하였고 2019년에도 경력 채용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22〉 과학수사 전공자 배치 현황

(2018. 8. 31. 기준, 단위 : 명)

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4	2	15	6	5	5	4	4	5	13	4	4	4	5	3	4	4	4	3

출처 : 경찰청(2018)

경찰은 연쇄강력범죄, 이상심리·행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프로파일링 기법을 수사에 도입하고 있다. 범죄분석요원은 심리·사회·범죄학 전공자 및 해당 분야 경력자로 전국에 현재 39명이 근무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범죄의 동향 및 치안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범죄해결은 물론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대책 수립이 중시되고, 범죄 분석 또한 축적된 범죄 데이터를 활용한 다각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범죄 심리 행동분석을 통한 수사지원 뿐만 아니라 범죄정보(데이터) 분석에 의한 범죄예방 대책 수립지원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범죄분석·대응은 과학치안 역량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1-23〉 경찰청·지방경찰청 범죄분석요원 배치현황

(2018. 10. 기준)

구분	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	경기(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현원	39	2	4	2	3	2	3	2	2	3	1	2	2	2	2	1	2	2	2

* 2005년 이후 총 7회 4~16명 수준 61명을 비정기적 채용, 현재 39명 근무, 나머지는 타부서 근무 또는 퇴직
출처 : 경찰청(2018)

과학수사 전문 인력 확대와 더불어 살인, 부패·토막·영아시체 등 충격적 사건에 대한 잦은 경험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취약한⁹⁵⁾ 과학수사 요원의 심리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과학수사요원 및 검시조사관 전체 1,265명에 대해 PTSD 위험도 자가 진단을 실시하여 PTSD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및 조기 개입을 통한 만성화를 차단하고 있다. 고위험군은 마음동행센터 이용 및 정기적인 자가진단을 정례화하고 동료지지 프로그램(Peer Supporting Program) 발굴 등 과학수사요원 맞춤형 마음건강 증진대책 등 사후관리에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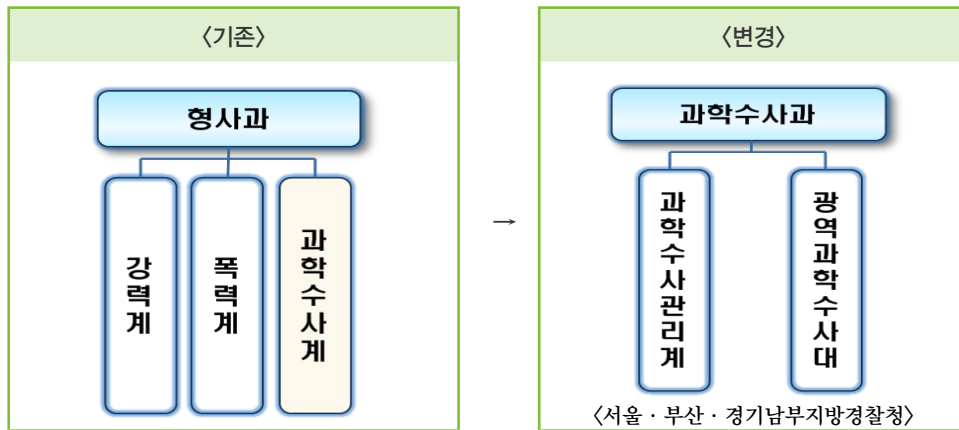
현장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검시조사관, 과학수사 분야 경력 채용자를 대상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실습 위주(실습 60%, 이론 40%)의 기법 교육을 시키고 있다. 범죄 상황에 맞는 물리적 증거수집 방법과 수집된 증거물의 무결성, 연계성, 지문현출 기법, 과학수사에서 자주 활용되는 AFTS 프로그램 사용법 등 범죄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특성화된 교육으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 사진촬영 기법과 과학수사 기본교육 외 분야별 전문화를 위한 차별화된 재교육 과정도 필요하다. 향후 미비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정기적인 재교육으로 현장에 강한 전문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다.

95) “경찰 CSI요원 10명 중 2명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위험수위”, 연합뉴스, 2018. 4. 8.

과학수사 전문 인력 확대와 함께 현실에 맞도록 제도 개편은 불가피하였다.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 신설 후에도 직제에 반영되지 않았던 지방경찰청 형사과 내 과학수사계 체제는 2018년에 들어서야 서울·부산·경기남부 3개 지방경찰청에 별도의 과학수사과를 신설하여 형사과에서 분리하였고, 직급도 경정에서 총경으로 조정하였다.

2019년에도 대구·경기북부·경남·충남 4개 지방경찰청에 과학수사과 신설을 정부안에 반영하는 등 각 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 설치를 계속 확대해 가고 있다.

[그림 3-1-26] 과학수사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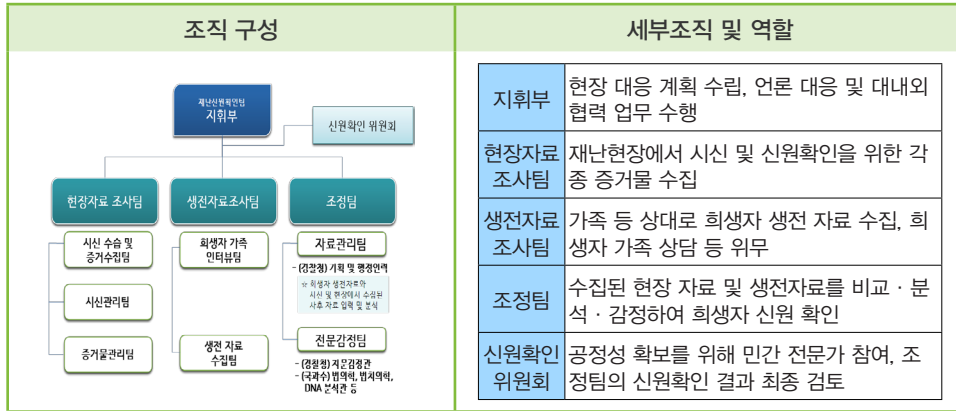


출처 : 경찰청(2018)

2) 다양한 과학수사기법 활용

세계적으로 잦은 테러 발생 등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대형 재난희생자 신원 확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9.11테러와 같은 대형사건·사고의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경찰청 2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명, 민간 법과학 전문가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 협의체’를 운영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 희생자 신원 확인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재난 현장의 희생자 신원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그림 3-1-27] 재난신원확인팀 조직 구성 및 역할



출처 : 경찰청(2018)

또한, 경찰견(犬)을 활용하는 체취증거(Human Scent Evidence) 검색기법⁹⁶⁾을 도입하여 실종사건 등 강력범죄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갈수록 범죄가 지능화되고 수사기법이 노출되면서 범죄 현장의 증거물 확보가 점점 어려워져 기존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과학수사기법 도입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범죄현장에 남아 있는 냄새를 이용하여 범인을 추적하고 범인을 식별하는 ‘체취증거팀’의 역할은 2015년 서울 북한산 경남기업 회장 자살사건, 2016년 안산 단원 토막살인 시체 수색, 2018년 전남 강진 실종 여고생 사건 시신 발견을 통해 입증되고 있으며, 2015년 129회, 2016년 280회, 2017년 279회로 계속 증가 추세이다.

〈표 3-1-24〉 체취증거팀 현황

(2018. 10. 기준)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	경기(북)	경남	제주
핸들러(명)	11	1	1	1	1	1	1	1	1	1	1	1
체취견(두)	17	2	2	1	2	1	2	2	2	1	1	1

출처 : 경찰청(2018)

체취증거팀은 또한 수중과학수사팀과 합동 훈련을 추진하여 체취증거견의 수중 부패 시체 탐지력 향상 및 현장 수색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체취증거견의 역할은 실종자 수색과 강력범죄 수사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96) 체취증거기법은 발달된 후각능력을 가진 개(犬)를 수사목적에 맞도록 훈련시켜 증거물을 검색·추적하거나 범인을 식별하는 수사기법이다.

[그림 3-1-28] 체취증거팀의 훈련 현황



출처 : 경찰청(2018)

그 동안 수중 발생 또는 수중에 유기된 시체나 증거물은 소방관이나 민간 잠수부에 의해 단순 인양되어 증거물의 가치가 낮거나 훼손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증거물의 훼손·멸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증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중과학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전문 인력을 74명으로 증원하였다.

또한 수중시체 훼손방지, 증거물 촬영기법 등 이론 및 실전교육과 함께 수중 시체 보존·인양에 필요한 공기부양 시체포를 도입하여 수중 증거물 보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체취증거기법, 수중과학수사기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찰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진국과 같이 경찰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 인증제 도입도 필요하다.

[그림 3-1-29] 수중 자체부력 시체포



출처 : 경찰청(2018)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 경찰견은 용의자 추적, 실종자·변사체 수색,

마약 발견 등 전문 훈련을 받고 지정된 체취견 활동 영역은 확대되고 있다. 미국에는 주(州) 마다 경찰견 운용부대와 경찰견센터가 있다. 특히 수중 추락사, 자살자의 수색에 수중탐지견을 적극 활용한다. 이를 위해 경찰견의 교육을 강화하여 9종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국제공인자격증을 주는 등 까다롭게 경찰견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

아직 경찰견 인증제도가 없는 우리나라는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도 국제적 수준의 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한 경찰견과 핸들러 양성이 필요하다. 우수한 경찰견의 훈련시설과 기법, 경찰견과 라포 형성을 위한 동행 출·퇴근, 은퇴 후 핸들러에게 분양 등 경찰견의 복지문제와 후생시설까지 갖추고 경찰견의 역할을 확대해 가면서 과학수사에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⁹⁷⁾

3) 과학수사의 국제적 위상 강화

경찰청은 지문감정 분야에서 감정 처리절차 및 방법의 표준화를 통하여 한국인정기구(KOLAS)에 의해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증되었다. 인증서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상호인증이 협정된 국가에서는 자국의 인증서와 마찬가지로 공인 받는 것으로 현재 경찰청은 미국과 영국 등 59개국의 국제적 인증을 받고 있다.

2014년 7월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지문감정 분야 국제공인기관 인증을 받았고 유효기간 4년으로 KOLAS 자격 갱신 유지를 위해 지문감정관을 대상으로 국내·외 오류감정(부적합) 사례와 감정(측정) 결과 신뢰성 제고 및 KOLAS 자격 유지 관련 사항 등 보수교육으로 자격을 관리하고 있다. 2018년 5월 28일 ~ 30일, 3일간 KOLAS 운영 매뉴얼에 의한 관리 적정여부, 감정 환경·장비 측정방법 및 감정물 취급절차 적정여부 등에 대해 평가를 받았고 국제상호 인정 협정(ILAC, APLAC)에 따라 95개 가입국에서 통용이 가능하다.

한국인정기구에 의한 국제공인기관 인증 유지 관리를 통해 과학수사가 표준화, 객관화, 중립화된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공인 받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우리 과학수사의 수준을 인정받고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97) 경찰청, 경찰종합훈련센터 해외선진교육, 경찰청 외사국, 2011; 김민철, “경찰견 핸들러의 현장 업무 수행 경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18, 20~21쪽.

과학수사 분야에서도 학문과 현장 과학 실무가 함께 접목된 발전적인 모델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과학수사관리관실에서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국제 CSI 콘퍼런스는 점차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 자리 잡고 있다.

2018년에도 11월 6일 ~ 7일, 양일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관에서 2018 국제 CSI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미국, 캐나다, 중국, 네덜란드 등 해외 과학수사 전문가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 기관·학계, 일반인 등이 참석하였다. 일반인들은 지문, 족적 등 대표적인 과학수사 기법뿐만 아니라, 과학수사 VR, 드론, 3차원 몽타주 등 수사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경찰 ‘프로파일러’와의 대담 행사를 마련하여 과학수사에 대한 관심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미국육군범죄수사대(CID)와 과학수사 기법·사례 등을 공유하여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군범죄 및 피해 등 관련사건 발생 시 경찰과 CID 합동감식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범죄 현장 조사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미(美) FBI 18년 경력의 9.11테러 등 주요사건 현장대응 팀장(로버트 위더홀드)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적 테러 등 대형사건 현장 감식의 전문성을 키워 나가는 한편 대내·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치안한류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과학수사요원들을 해외 96개국에 파견하여 경찰관 등 56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진 과학수사기법을 전파하고 있다. 2018년 과학수사요원의 해외 파견은 UAE 아부다비(7. 22 ~ 7. 26; 1주, 9. 2 ~ 9. 6; 1주, 10.14 ~ 10. 18; 1주)에 3회 파견하여 수증과학수사, 혈흔 형태 분석, 현장 감식 교육을 이수하는 등 우리 경찰의 국제적 위상은 더 높아질 것이다.

4) 「법과학감정실」 설치, 과학수사 협력체제 강화

증거의 무결성 입증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법과학감정실」 설치 등 과학수사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업무의 약 94%가 경찰 의뢰 사건으로 양 기관의 협업은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증거물 채취 및 감정 업무가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원화되어 증거물 감정의 신속·연계·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설치되지 않은 11개 지역에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 통합 「법과학감정실」을 최초로 구축하여 지문, DNA, 화재 등 수

요가 많은 증거물에 대한 채취부터 분석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는 종합 증거분석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정이 이뤄지게 된다.

2019년 경기남부·전북지방경찰청 2개소 신설을 시작으로 2020년 충남·경기북부지방경찰청, 2021년 경남·충북지방경찰청, 2022년 경북·인천지방경찰청 등 단계적인 설치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개별 「법과학감정실」에는 과학수사의 중요한 두 축인 경찰(과학수사요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원이 각각 10여명 내외 투입되어 근무하면서 증거 분석 협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찰이 요청할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원도 곧바로 현장에 나가 증거물 채취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이 해오던 지문·혈흔감정, 영상분석 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했던 DNA 감정, 혈중 알코올 농도, 독극물 분석 등의 결과가 즉각 연계되지 않았던 불편함도 해소된다. 그 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업무 중 경찰 의뢰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추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데 「법과학감정실」이 설치되면 증거물을 송부하는 과정에서 훼손될 우려가 없어지고 감정에 걸리는 기간도 1주 이내로 축소되는 등 과학수사 업무의 효율성이 예상된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경찰 내 감정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경찰의 업무가 가장 많은 감정분야는 경찰로 이관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과학수사 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5) 과학수사 첨단기법 도입 확대

경찰은 과학치안 전 분야에 걸쳐 R&D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치안활동에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3D 얼굴인식 시스템, 범보행 분석 기법, 지문래핑 키트 등 과학수사 기법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3D 얼굴인식 시스템은 범죄수법 자료에 입력된 주요 범죄자들의 얼굴 사진과 범 죄현장에서 확보된 영상정보를 검색·대조하여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4년에 착수하여 기술을 개발하였다. 2018년에는 수직하단 15°와 좌·우 45°이내 등 복합각도에서 촬영된 얼굴 인식 기술과 모자, 선글라스 등으로 가려진 부분 얼굴 인식 기술까지 개발하였다. 향후 CCTV 등 영상자료 수사 활용도가 높아

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각도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영상정보는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저해상도 카메라의 경우 용의자나 사건관계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어렵고, 용의자가 일부러 얼굴을 숨기거나 신체 측·후면을 노출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보완하고자 2013년 ‘법보행 분석’ 기법을 도입하였다. 2014년부터 분석결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등 현재까지 총 130여건의 법보행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향후에도 법보행 분석기법 활용 증가에 대비하여 다양한 기법 개발이 요구된다.

과학수사 분야의 중·장기 R&D 사업으로는 과학수사 역량 강화, 과학수사시스템 구축 등 2개의 세부사업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첨단 과학수사 기술의 현장 활용을 예상할 수 있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술·장비 개발 R&D 과제와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 개발 및 스마트폰 지문식별 신원확인 시스템(폴리스랩 사업) 등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나노기술을 활용한 범죄현장 생체시료 시각화 기술 개발 등 과학수사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신규 R&D 과제를 발굴하여 개발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스마트 치안’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첨단 장비와 과학수사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과학수사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표 3-1-25〉 과학수사분야 연구개발(R&D) 과제

(2018. 7. 16. 기준)

연번	연구개발(R&D) 과제명	연구기간	비 고
1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지문·족흔적 채취용 법광원 개발	2015~20(5년)	
2	CCTV 영상검색 고도화 및 신원확인 기술 개발	2015~20(5년)	
3	레이저를 활용한 겹친 지문 식별 기술 개발	2016~20(5년)	
4	법의근중학의 과학수사 활용을 위한 기반정보와 사후경과시간 추정기법 개발	2016~20(5년)	
5	성문 분석을 통한 실시간 화자 검색 기술 개발	2017~21(5년)	
6	혈액 성분변화를 활용한 혈흔 유류경과시간 분석 기법 개발	2017~21(5년)	
7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 개발	2017~24(7년)	다 부처
8	스마트폰 지문식별 및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2018~21(3년)	폴리스랩
9	나노기술을 활용한 범죄현장 생체시료 시각화 기술 개발	2019~22(4년)	19년신규

출처 : 경찰청(2018)

최근 사물인터넷의 드론은 성능과 기능의 고도화가 가속되면서 업무수행에 편리성, 신속성을 제공하는 도구로 주목 받으며 4차 혁명의 한 축이 되고 있다. 범죄예방, 현행범 추적, 실종자 수색, 다기능의 로봇캡 등을 목표로 개발은 가속화될 것이다.⁹⁸⁾

처음엔 군사용으로 개발되었던 드론이 소형화, 대중화되면서 상업용, 레저용 및 공공부문의 재난구조, 화재현장 등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엔 경찰활동 실종 수색 등 현장 업무에서도 드론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드론에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범죄 사건의 용의자 추적, 실종자 수색과 증거 채집이 쉽지 않은 도박 수사 등 과학수사에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향후 드론 자체의 기술적 진보 외에도 최근 IT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구축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과 ICT 구축이 실현될 경우 그 활용도는 매우 확장될 것으로 전망한다. 범죄증거 수집이 어려운 사건, 현장 범죄자 검거, 인질 범죄자 무력화를 통한 피해자 보호, 대형사건 수사본부에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통한 수사지휘 등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⁹⁹⁾ 다만, 치안 드론의 활용 증가에 대비하여 경찰 조직 내 드론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드론 활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98) 김형주 외, “경찰의 안티드론 실증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2권 2호, 치안정책연구소, 2018, 75쪽.

99) 이상원 외, “경찰활동에서의 드론 활용방안과 그 법적 문제 연구”, 치안논총, 2017, 293~295쪽.

V. 사이버범죄 전망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치안위해요소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사이버안전국이 출범한 이래 경찰은 최근까지 사이버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였다. 사이버범죄는 2015년 14만 4,679건에서 2016년에 15만 3,075건으로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는 13만 1,734건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사이버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2015년에 72.5% 수준에 있었으나 2016년에는 83.5%, 2017년에는 81.6%로 높아져 검거율이 80%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2018년에 들어서 사이버범죄는 9월까지 총 10만 8,825건 발생하였고, 이중 8만 2,058건을 검거하였다(검거율 75.4%). 이는 작년 동기간(2017. 1~9월) 사이버범죄가 10만 1,653건 발생하고, 8만 4,197건을 검거(검거율 82.8%)한 것과 비교할 때, 발생건수는 약간 늘어나고(7.1%) 검거건수는 감소(-12.6%)한 것이다.

경찰의 사이버범죄 차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이용과 모바일 기기의 확산 속에 사이버 불법행위는 더욱 지능형 신종 범죄로 진화함으로써 최근 검거율은 예년의 80% 내외에서 정체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검거율 감소에 따라 검거 인원 규모 역시 축소되고는 있으나 2018년 3분기까지 구속인원(1,017명)은 전년 동기과 같은 전체 검거인원의 약 2.4% 수준이 유지됨으로써, 어려워지는 수사 환경 속에서도 경찰의 사이버범죄 사건 수사가 여전히 중요 피의자 중심으로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26〉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2015~2018. 9)

연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2015	144,679	104,888	72.5%	75,250(1,041)
2016	153,075	127,758	83.5%	75,400(1,319)
2017	131,734	107,489	81.6%	59,369(1,373)
2017. 9	101,653	84,197	82.8%	45,169(1,126)
2018. 9	108,825	82,058	75.4%	42,834(1,017)
전년대비	7.1%	-2.5%	-7.4%p	-5.2%(-9.7%)

* ()는 검거인원 중 구속인원

** 사이버범죄 통계는 2014년부터 경찰청 KICS 전산 통계로 산출. 사이버범죄 통계 분류체계에서도 범죄 최종 등에 새로운 통계 산출방식이 적용되어 2013년까지의 통계와는 다름

출처 : 경찰청(2018)

2018년 들어 9월까지 사이버범죄의 발생유형을 전체적으로 보면 인터넷사기 및 사이버금융범죄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가 9만 1,10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도박 및 명예훼손 등의 죄종이 주로 포함된 불법콘텐츠 범죄가 1만 5,527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 DDoS 등 서비스 거부공격, 악성프로그램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총 2,192건 수준에 머물렀다.

사이버범죄 유형을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예년과 같이 인터넷 사기(8만 2,716건)가 전체 사이버범죄(10만 8,825건)의 76.0%로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명예훼손·모욕(1만 1,236건)이 전체 사이버범죄의 10.3%로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사이버 금융범죄(3,786건), 저작권침해(3,128건), 사이버 도박(2,437건) 등의 세부 유형 그룹이 사이버범죄의 주종을 이루는 양상을 띠고 있다.

〈표 3-1-27〉 2018년 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2018. 1~9)

구분 \ 유형	총 계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불법콘텐츠 범죄					
		소계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	악성 프로그램	기타	소계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도박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스토킹	기타
발생(건)	108,825	2,192	1,668	20	90	414	15,527	1,667	2,437	11,236	46	141
검거(건)	82,058	690	448	14	37	191	11,550	1,396	2,402	7,627	38	87
검거인원(명)	42,834	777	503	15	55	203	15,778	1,439	3,304	10,850	39	146
구분 \ 유형	소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인터넷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위치 정보침해	사이버 저작권침해	기타						
발생(건)	91,106	82,716	3,786	148	3,128	1,328						
검거(건)	69,818	65,184	1,672	79	2,015	868						
검거인원(명)	26,279	21,088	1,708	126	2,501	856						

* 사이버범죄 유형은 2013년까지 '사이버테러형 범죄' 및 '일반 사이버범죄' 로만 구분하였으나, 다양화되는 사이버범죄 추세를 반영하여 2014년부터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불법콘텐츠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등으로 세분화
출처 : 경찰청(2018)

경찰은 사이버 음란물 차단에도 주목하여 지난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불법촬영물 등 유포행위 집중단속 계획」에 의거 음란물(불법촬영물) 집중단속(2018. 6.5 ~

8.24, 100일간)을 추진하였으며¹⁰⁰⁾, 2018년 들어 3분기까지 누적하여 일반음란물 총 749건 859명(구속 37명), 아동음란물 총 647건 580명(구속 16명)을 검거하였다. 그 외에도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 불법촬영 범죄 공동대응 체계를¹⁰¹⁾ 구축하는 한편 해외 불법음란사이트 단속을 위해 美 국토안보부 수사청(HSI)·해외 서버임대업체와 공조수사를 추진함으로써 사이버 불법음란물에 엄정 대응해나가고 있다.

〈표 3-1-28〉 2018년 사이버 음란물 단속 성과(2018. 1~9)

구분	계	일반음란물	아동음란물
건수	1,396	749	647
인원(구속)	1,439(53)	859(37)	580(16)

출처 : 경찰청(2018)

경찰은 2018년 하반기 중에도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음란물(불법촬영물) ▲사이버금융범죄 ▲해킹·디도스·악성프로그램 ▲인터넷사기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도박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특별단속(2018. 7. 23~10. 30, 100일간)을 전개함으로써, 사이버공간에 대한 안전한 환경 및 대국민 신뢰를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사이버범죄 수사 활동에서 중요한 경찰의 디지털 증거분석 건수는 2009년 5,493건, 2010년 6,247건에서 2015년 2만 4,295건, 2016년 3만 2,281건, 2017년 3만 6,06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8년간 연평균 26.5%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모바일기기의 증거분석 건수는 2009년 658건에서 2018년 3만 238건으로 연평균 61.4% 씩 급증함으로써 전체 디지털 증거분석 활동에서 주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2018년 들어서도 9월까지 전체 디지털 증거분석 건수는 3만 3,351건에 달하여 전년 동기 2만 9,569건에 비해서 12.8%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실적은 이미 2016년에

100)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 2017. 7~2018. 9월까지 미국 서버를 임대, 총 3만5천여 건의 음란물을 게시·유포하고 5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검거(2018. 9. 11)(대전청 사이버), ▶ 5개 웹하드에 음란물 76,800개를 유포하고 5,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해비업로더 및 자동 업로드프로그램 개발자 검거(2018. 10. 1)(경북청 사이버), ▶ 2018. 7. 19일 서울 종로 ○○모텔에서 성명불상 노년여성의 나체사진 7매를 촬영하고, 같은 날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한 피의자를 검거(2018. 8. 17)(충남청 사이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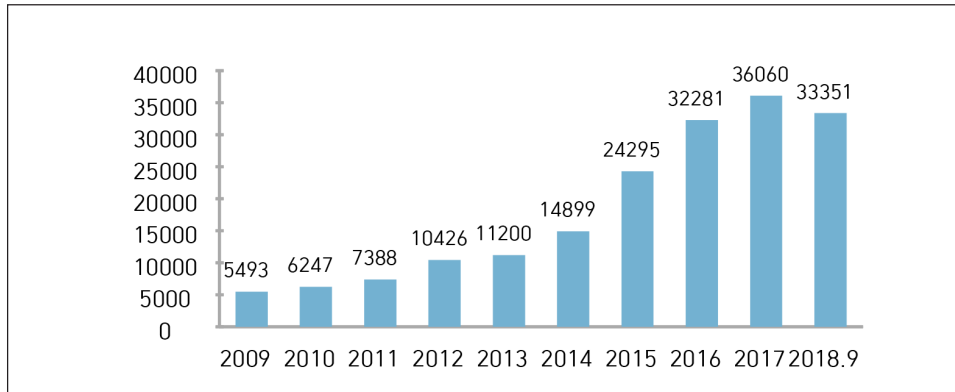
101) 공동대응 체계로는 구체적으로 ▶ (유도행위 감시) 시민단체·여가부·방심위 등에서 경찰청으로 불법 음란사이트 제보, ▶ (피해자 지원)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 ▶ (범죄수익 환수)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미과세소득 국제청 통보 등이 있다.

이루어진 총 분석건수 3만 2,281건을 넘어서고 있다.

2019년에도 스마트폰 등 혁신을 가속화하는 모바일기기를 중심으로 디지털 증거 분석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마약범 등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각종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중요도가 증가하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이처럼 급증하는 디지털 증거분석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분석관 증원¹⁰²⁾, 첨단 분석장비의 확보, 분석기법의 연구·개발, 신규 모바일 기기 전문교육 강화 등에 충분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30] 연도별 디지털 증거분석 추이(2009~2018. 9)

(단위 : 건)



* 2018년은 1-9월까지 통계
출처 : 경찰청(2018)

<표 3-1-29> 디지털 증거분석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계	컴퓨터기기 (PC,노트북 등)	디지털기기 (CCTV,네비)	모바일기기 (스마트폰,휴대폰)	파일/기타 (해킹,암호,DB 등)
2009	5,493	3,820	187	658	828
2010	6,247	3,864	276	1,611	496
2011	7,388	3,356	479	3,352	201
2012	10,426	3,830	393	5,870	333
2013	11,200	3,138	483	7,332	247
2014	14,899	3,079	510	10,656	654
2015	24,295	3,357	712	19,526	700

102) 2017년 지방청 증거분석관 정원 총 38명 증원 및 인력재배치를 통해, 지방청 1인당 연간 분석건수가 증원 전 523건에서 증원 후 339건으로 축소되어 증거분석의 신속도를 제고하였다.

구 분	합계	컴퓨터기기 (PC,노트북 등)	디지털기기 (CCTV,네비)	모바일기기 (스마트폰,휴대폰)	파일/기타 (해킹,암호,DB 등)
2016	32,281	3,923	794	26,408	1,156
2017	36,060	4,198	867	30,238	757
2017. 9	29,569	3,427	688	24,816	638
2018. 9	33,351	4,551	713	27,570	517
전년대비	12.8%	32.8%	3.6%	11.1%	19.0%

출처 : 경찰청(2018)

1.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전망

1) 사물인터넷(IoT) 및 암호화폐 공격위험 증가

해킹범죄 발생건수는 2015년 2,247건, 2016년 1,878건으로 감소하는 조짐을 보였으나 지난 2017년에는 총 2,430건으로 늘어나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18년 들어서는 9월까지 누적하여 1,668건 발생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2017년의 동기간의 발생건수(1,917건)에 비해서 13.0% 감소하였다. 반면 발생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현재까지 경찰이 검거한 해킹범죄 사범(503명)은 전년 동기 검거인원(469명) 대비 7.5% 증가하였다. 다만 그간 경찰의 해킹범죄 대응 노력을 통해 최근까지 40% 대를 상회하였던 사건 검거율은 9월 현재까지 예년에 비해 다소 못 미치는 수준(26.9%)에 머물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인 해킹은 구체적인 세부유형으로 나누어 볼 때 계정도용과 침입, 자료유출 및 훼손 등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 인터넷 기기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과 모바일 통신기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를 이용한 국민안전 위협과 사이버범죄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즉, 일반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기들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일반 인터넷을 넘어 사물인터넷 및 모바일 통신기기 그리고 이와 결합된 각종 형태의 통신, 거래서비스로 확산되면서 사이버 보안위협과 범죄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표 3-1-30〉 해킹 발생 및 검거 현황(2015~2018. 9)

연 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2015	2,247	524	23.3%	633
2016	1,847	537	29.1%	615
2017	2,430	990	40.7%	655
2017. 9	1,917	855	43.6%	469
2018. 9	1,668	448	26.9%	503
전년대비	-13.0%	-47.6%	-16.7%p	7.5%

출처 : 경찰청(2018)

예컨대 홈CCTV로도 불리는 가정용 IP카메라가 해킹될 경우 개인 사생활이 즉시 침해되고, 자동차와 진료기기가 해킹되면 교통사고나 의료사고로 연결되어 생명이 위협해 질 수도 있다. 실제로도 2014년 1월 미국에서 와이파이에 연결된 스마트TV와 냉장고가 해킹되어 수십 만 건의 스팸메일을 보낸 사고가 있었고, 2015년 8월에는 인터넷에 연결된 자동차가 해킹되어 조작되는 동영상이 공개되자 해당 자동차 회사가 차량 140만 대를 리콜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IoT기기의 출시와 관련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시민들은 단순한 프라이버시 침해 또는 경제적 손실에 머물지 않고 생명의 위협과 같은 심각한 보안사고와 범죄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성능의 IoT 기기에 대한 보안은 매우 중요하다.

IoT기기 취약성 문제에 대해서 보안관계자들 간에는 2016년 이른바 미라이(Mirai) 사태 이후 최근까지 프록시 서버 등 지속적인 변종의 등장¹⁰³⁾으로 인해 그 관심이 높아져 왔지만 사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다소 생소한 감이 있었다. 그러나 2017년 8월 정부 차원에서 ‘몰카’ 범죄 관련 대책을 지시하고¹⁰⁴⁾ IP 카메라나 스마트 홈 기기를 해킹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사례와 다수의 검거 관련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IoT 보안 위협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¹⁰⁵⁾

103) “새롭게 나타난 미라이 변종, 이번엔 프록시 서버도 만들어”, 보안뉴스, 2018. 2. 23.
 104) “문재인 대통령, 몰카범죄 대책 재차 지시...8월 들어 두번째”, 여성신문, 2017. 8. 29.
 105) “IP카메라 해킹, 여성 5000명 은밀한 사생활 털렸다”, 머니투데이, 2018. 11. 1.

[그림 3-1-31] IP카메라 해킹 사건 관련 보도



출처: “IP카메라 해킹해 사생활 엿본 피의자 10명 검거”, 뉴스1, 2018. 11. 1; “IP 카메라 수천대 해킹, 침실·탈의실 등 사생활 털려...”, 이투데이, 2017. 11. 3.

2019년에는 4차 산업혁명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IoT 기기가 보급되어 전 세계 사물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 시장이 1조 7,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즉 시장조사전문기관인 스태티스타는 세계 IoT 시장이 2010년 2,400억 달러에서 2019년 1조 7,000억 달러로 연평균 24.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국내 IoT 시장 규모도 2015년 4조 7,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17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¹⁰⁶⁾

이 같은 IoT 기기의 증가로 인해 2019년에는 사생활 침해와 범죄피해를 발생시키는 보안위협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도 ‘스마트홈’ 사업과 함께 가정용 감시카메라 시장이 빠르게 확장해 갈 것으로 보이고, 일반 소형 사무실 또한 보안이 취약한 여건에 있는 만큼, 가정이나 사무실 내의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된 네트워크 카메라, 스마트 TV, 네트워크 결합 스토리지(Network-Attached Storage, NAS) 등 IoT 기기에 대한 해킹 피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킹 관련,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은 암호화폐의 유출 사고라 할 수 있다. 2016년 이후 국내에서는 총 7번의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해킹을 통해 부정인출된 금액만 무려 1,1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을 통해 도난당한 암호화폐 금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⁷⁾

106) “세계 IoT 시장, 내년에 1.7조 달러 규모 넘어 고성장 예상돼”, 서울와이어, 2018. 10. 20.

1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18년 10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피해 현황 및 조치 내역에 따르면, 2016년 1건 3억원에 불과했던 부정인출 금액이 2017년에는 4건 405억원으로 늘어났고, 2018년에는 2건의 해킹사건에서 부정인출로 도난당한 금액이 713억원에 달하고 있다. “2018년 하반기 가장 ‘핫’ 한 사이버위협 4가지”, 보안뉴스, 2018. 10. 7.

암호화폐를 노리는 공격은 특히 랜섬웨어와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지능형 지속 위협) 공격 등과 결합하는 추세이며, 보안이 취약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공격하거나 암호화폐 지갑 탈취, 암호화폐 마이닝(채굴) 기능의 악성코드 유포 등의 수법으로 암호화폐를 노린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

2019년에도 보안기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취약 기업과 개인 암호화폐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 용도의 블록체인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공격이 쉬우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암호화폐 지갑 등이 공격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악성코드 위협의 지속

일반 인터넷 도메인 URL에서의 악성코드 유포 외에도 2010년대 태블릿PC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유출, 부당과금 유발, DDoS 등 피해를 발생시키는 악성 URL과 악성코드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악성 앱의 근원인 악성 URL의 차단 건수를 살펴보면 모바일 환경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악성코드 위협을 뚜렷이 알 수 있다. 즉 2018년 들어 8월까지의 차단건수 9,215건은 2017년 차단건수 3,647건에 대비하여 이미 2.5배(252%) 증가한 것이고 2016년 대비해서는 3.1배(310%), 2015년에 비해서는 무려 4.3배 이상(432%) 급증한 수치다.

〈표 3-1-31〉 악성 앱 악성 URL 차단 건수(2015~2018. 8)

(단위 : 건)

연 도	2015	2016	2017	2018. 8
악성 URL 차단 건수	2,133	2,976	3,647	9,215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ZNet Korea, 2018. 9. 30, 재인용)

최근 악성 앱 유형은 원격 C&C(명령제어) 서버로부터 명령을 받는 원격제어형과 여러 가지 악성행위를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기능형 악성 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악성 앱 피해 유형으로는 사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입력토록 유도하는 금융기관 사칭형과 택배를 위장하여 악성 앱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택배조회사칭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¹⁰⁸⁾ 다양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첨단기술과 지능화된 수법으로 진화하고

108) “스마트폰 대상 악성 URL 차단 건수 급증” , ZNet Korea, 2018. 9. 30.

있는 악성코드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모바일 금융거래와 모바일 물품주문·유통이 확대되는 환경 속에 향후 더욱 더 그 공격위험을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랜섬웨어¹⁰⁹⁾의 확산으로 악성프로그램은 더욱 사용자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가 발표한 ‘2018년 랜섬웨어 침해분석 및 2019년 공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랜섬웨어 피해접수 현황은 1분기 1,290건, 2분기 1,037건, 3분기 906건, 4분기(예측) 1,050건 등 총 4,283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랜섬웨어 피해 규모는 2015년 총 1,090억 원, 2016년 3,000억원, 2017년 7,000억 원 달하고 2018년에는 무려 1조 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어 전체적으로 랜섬웨어 침해 건수는 전년 대비 줄어든 반면, 피해 규모나 공격 양상은 갈수록 대형화·고도화 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3-1-32〉 국내 랜섬웨어 침해 현황(2015~2018)

연 도	2015	2016	2017	2018(추정)
접수 건수	2,678	3,255	4,475	4,238
총 피해금액(억 원)	1,090	3,000	7,000	10,500

* 실제 피해자 신고 기준
출처 : 한국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보안뉴스, 2018. 11. 8, 재인용)

2018년 랜섬웨어 피해 현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2018. 1~7월) 중소기업 43%, 소상공인 25%, 개인 2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커에게 지급한 비트코인 추정액은 전 세계적으로 2016년 1조 1,000억 원(10억 달러), 국내의 경우 2015년 30억 원, 2016년 100억 원, 2017년 300억 원, 2018년 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¹¹⁰⁾

범죄수익 모델의 측면에서 보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파일을 암호화하는 랜섬웨어가 등장하면서 랜섬웨어 시장이 형성된데 이어 2017년 상반기에는 랜섬웨어 시장 자체의 확대와 함께 기존 랜섬웨어 재활용의 일반화,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의 보편화 등에 편승하여 범죄 건당 고수익을 추구하는 대형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다.

109) 납치된 사람에 대한 몸값을 뜻하는 랜섬(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결합한 용어인 랜섬웨어(Ransomware)는 사용자의 컴퓨터 파일을 암호화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한 후 암호화된 파일을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이다.

110) “2018년 랜섬웨어 피해, 1조 500억원 규모 이를 듯” , 보안뉴스, 2018. 11. 8.

랜섬웨어 범죄자들이 변종 공격 및 암호화 기법 개발을 통해 보안기술을 무력화하고 가상화폐(비트코인) 거래기반을 넓혀감에 따라 앞으로도 경찰의 추적수사가 더욱 어려워지는 여건에 있는 반면, 랜섬웨어 수익 모델에 따른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는 쉬워져 2018년 역시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개인 사용자를 중심으로 피해 위협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불법콘텐츠 범죄 전망

1) 사이버 도박의 조직화·지능화

국무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16년 실시한 불법도박 실태조사(3차)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2012년 실태조사(2차)에서의 75조 1,474억 원 보다 11.5% 증가한 83조 7,822억 원(매출기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인터넷도박은 25조 355억 원, 사설 스포츠도박은 21조 8,119억 원, 사설 경마·경륜·경정은 12조 7,34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불법 인터넷도박의 경우를 보면 2016년 25조 355억 원에 달하여 2012년도 추정 금액(17조 985억 원)보다 무려 46.4%가 증가함으로써 같은 기간 전체 불법도박 금액의 평균 증가율 11.5%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3〉 불법도박 매출 규모 추이

(단위 : 억 원)

종류	불법 인터넷도박*	사설 스포츠도박	불법 하우스도박	불법사행성 게임장	사설 경마, 경륜, 경정	사설 카지노	계
1차 조사 (2008)	320,000	**	n.a.	115,596	31,817	69,615	537,028
2차 조사 (2012)	170,985	76,103	193,165	187,488	99,250	24,484	751,474
3차 조사 (2016)	250,355	218,119	62,700	145,152	127,342	34,155	837,822
전차 대비	46.4%	186.6%	-67.5%	-22.6%	28.3%	39.3%	11.5%

* 온라인카지노, 웹보드, 릴게임

** 사설 스포츠도박은 1차 조사에서 불법 인터넷도박에 포함

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2016, 150쪽

특히 스포츠도토와 같은 사설 스포츠도박은 IT 기술발전,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의 확산 등으로 인해 그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서 2016년 사설 스포츠도박의 매출은 2012년 2차 조사 당시 7조 6,103억 원의 3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2012년 가장 규모가 컸던 불법 하우스도박의 경우는, 온라인 도박의 활성화로 그 규모가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2016년의 경우 6조 2,700억 원으로서 2012년 제 2차 실태조사 시기의 1/3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불법도박의 급속한 확대 속에 사이버 도박 사건의 발생건수 및 경찰에 의한 검거건수 역시 급증하여 2016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무려 3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경찰의 지속적인 불법 사이버 도박 차단 노력에 따라 최근까지 그 발생 및 검거 규모가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년 9월까지 사이버 도박의 발생건수와 검거건수를 보면 2,437건 발생, 2,402건 검거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5%, 37.8% 감소하였다.

〈표 3-1-34〉 사이버 도박 발생 및 검거 현황(2015~2018. 9)

연 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2015	3,352	3,365	100.4%	5,459
2016	9,538	9,394	98.5%	13,702
2017	5,130	5,080	99.0%	6,530
2017. 9	3,883	3,861	99.4%	4,714
2018. 9	2,437	2,402	98.6%	3,304
전년대비	-37.2%	-37.8%	-0.8%p	-29.9%

출처 : 경찰청(2018)

이러한 사이버 도박 발생 건수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그간 성장해 온 불법시장 규모는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범죄가 조직화·대형화되면서 그 범죄수법은 더욱 지능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는 3월에 제29회 러시아 동계 유니버시아드, 5월에 24회 영국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와 22회 폴란드 FIFA U-20 월드컵, 7월에 제30회 이탈리아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개최된다. 국내에서는 7월부터 제18회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11월에는 대중적 관심이 높은 프리미어12가 열리고, 아울러 2015년 이후 4년 만에 UFC 대회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예정되어 있다. 흥행성이 높은 스포츠 행사와 병행하여 불법도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2019년에도 불법 스포츠도박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사이버 도박은 동남아 등 해외에 사무실과 서버를 두고, 국내 총책의 대포폰·통장 관리, 철저한 회원 관리와 치밀한 계좌 관리(대포통장 이용 후 조기 폐기), 인출조직 별도 운영 등의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어¹¹¹⁾ 향후 더욱 지능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 도박 사이트 운영의 대규모 조직화와 국제화로 상선 조직까지의 검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국내적으로도 누리캡스¹¹²⁾ 등 민·경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조기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증가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은 불법콘텐츠 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로서 2017년도의 경우에는 불법콘텐츠 범죄 발생건수 2만 1,307건의 60%를 훨씬 상회하는 1만 3,348건(62.6%)을 차지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건수 추이를 보면 2015년 1만 5,043건에서 2016년 1만 4,908건으로 0.9% 감소하고 지난 2017년에도 1만 3,348건으로 전년 대비 10.5% 감소함으로써 2015년 이후에는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찰의 사건 검거율 또한 2015년 67.8%에서 2016년 70.7%, 2017년 73.1%로 점차 높아져왔다.

그러나 2018년 들어서 9월까지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는 1만 1,236건으로서 전년 동기 9,760건과 비교하여 1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발생 규모의 안정세가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검거율 또한 67.9%로서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하여 지난 2015년도 수준으로 회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1) 2011년 초부터 2018년 3월까지 1조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필리핀과 중국에서 7년간 운영하면서 약 5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거둬들인 운영진 14명(구속 9명) 등 106명 검거(서울·사이버수사대, 2019. 11. 8).

112) 누리꾼의 '누리'와 'cops(경찰)'의 합성어로, '사이버 명예경찰'을 의미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유해정보 신고 등 민·경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07년 발족하였으며 2018년 10월 현재 총 839명이 활동하고 있다.

〈표 3-1-35〉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및 검거 현황(2015~2018. 9)

연 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2015	15,043	10,202	67.8%	14,017
2016	14,908	10,539	70.7%	14,545
2017	13,348	9,756	73.1%	13,133
2017. 9	9,760	7,303	74.8%	9,601
2018. 9	11,236	7,627	67.9%	10,850
전년대비	18.0%	4.4%	-6.9%p	13.0%

출처 : 경찰청(2018)

2015년 이후 모처럼 자리 잡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안정세가 다시 동요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이 확대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방송인을 비롯한 사회 유명인사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댓글과 가짜뉴스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고소 역시 대중화하고 있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2019년에도 온라인 기사 및 댓글, 카페·블로그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명예훼손·모욕 범죄와 그에 대한 고소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와 달리 연예인·정치인 등 유명인들이 악성댓글 피해에 대한 엄정한 입장에서 고소를 이어가고 있다. 일반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성 사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산되어 피해가 증폭되는 실정이고 심지어는 비난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도 침해되어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의 분쟁이 사실상 합의금 취득을 목적으로 한 고소 남발로도 이어질 위험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2019년 3월에는 전국의 각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되고 여기에 이어서 4월에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재보궐 선거와 기초의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치러질 예정이어서, 선거와 관련 인터넷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지지후보와 성향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커지고 악플, 댓글조작, 가짜뉴스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선거 기간에 접어들수록 선거 관련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고소 사건도 빈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전망

1) 모바일 환경에서의 금융범죄와 피싱메일 위협 증가

2015년 연간 1만 4,686건에 달하던 사이버 금융범죄는 경찰의 적극적인 악성 금융범죄 근절 활동과 피해 예방 노력에 따라 최근까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16년의 경우 몸캠피싱이 1,193건으로 증가하기는 했으나,¹¹³⁾ 피싱과 파밍 외에 스미싱, 메모리해킹, 기타 사이버 금융범죄까지도 전체적으로 급감하여 한 해 동안 발생한 사이버 금융범죄 총 건수가 6,721건으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54.2%)하였다.

2017년에도 사이버 금융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9.3% 감소한 6,066건에 머물러 안정적 수준에서 축소·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사이버 금융범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파밍이 2016년 2,817건에서 2017년 1,933건으로 큰 폭 감소하여(-31.4%) 전체적인 발생 규모 축소에 큰 기여를 하였다. 다만 스마트폰 사용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스미싱 범죄가 18.7% 증가하고, 몸캠피싱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싱은 2016년 427건에서 2017년 545건으로 증가하여 여타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27.6%) 양상을 보였다.

2018년 들어서도 9월까지 사이버 금융범죄 발생 규모는 최근의 감소세가 이어져 전년 동기 대비 24.2% 줄어든 3,786건에 머물고 있다. 유형별로는 사이버 금융범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파밍이 183건에 불과하여 무려 89.2% 감소하고, 모바일 환경에서 증가 조짐을 보였던 스미싱도 웹발신 문자표시, 휴대폰 발송번호변경 문자차단 등 예방대책의 효과로 2017년 597건에서 2018년 245건으로 감소하였다(-59.0%). 다만 2016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였던 몸캠피싱 경우에는 2018년 들어서도 9월까지 9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3) 2015년 몸캠피싱 발생건수 102건은 해당 통계가 시작된 7월부터의 하반기 6개월간의 수치임.

〈표 3-1-36〉 사이버 금융범죄 발생건수(2015~2018. 9)

연도	계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몸캠피싱*	기타
2015	14,686	1,726	9,233	1,120	124	102	2,381
2016	6,721	427	2,817	562	12	1,193	1,710
2017	6,066	545	1,933	667	12	1,234	1,675
2017. 9	4,996	392	1,688	597	7	932	1,380
2018. 9	3,786	1,195	183	245	8	988	1,167
전년대비	-24.2%	204.8%	-89.2%	-59.0%	14.3%	6.0%	-15.4%

* 2015년 7월부터 사이버범죄 유형 분류에서 금융범죄 내 '몸캠피싱' 추가
출처 : 경찰청(2018)

특히 주목할 것은 2018년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발생이 증가한 피싱 범죄이다(392건→1,195건). 2018년 급증하고 있는 피싱메일의 특징은 과거에 비해 현지화·지능화·다양화의 양상을 보인다는 데 있다. 즉 이전에 번역 투의 어색한 문체와 달리 자연스러운 한글 문체의 메일을 유포하고(현지화), 한글 문서파일 내에 악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삽입하는 등 신종수법을 구사하며(지능화), 시기별로 이목을 끄는 다양한 주제를 피싱메일에 담아 배포하는 방식(다양화)을 취하고 있다.

피싱메일의 주제도 일반인이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금융거래·취업 등의 경제적 문제, 소환·조사 등 소송 당면 사안, 가상통화·남북 관계 등 사회적 이슈들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문서 내용으로 위장해 공공기관 사칭까지 행해지는 피싱 범죄가 최근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1-37〉 2018년 시기별 주요 피싱메일 현황

2018년	2018. 1 →	2018. 3 →	2018. 5 →	2018. 7 →
피싱메일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대출 관련자료 • 저작권 침해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통화 법안 • 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회담 전망* • 입사지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찾기* • 조사통지서*

* 공공기관 사칭
출처 : 경찰청(2018)

총량적으로 사이버 금융범죄 발생은 최근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스마트폰 등 확대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이버 금융범죄 위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보다 지능화된 수법으로 진화한 피싱메일은 2019년에도 빈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미싱도 2018년 들어 잠시 위축되어 있으나 향후 피싱메일과 같이 다양한 수법과 내용으로 진화되어 재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모바일기기 사용 증가와 보안 취약점을 노린 사이버 금융범죄는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피싱메일 등에 첨부된 악성코드로 랜섬웨어, 개인정보수집·탈취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향후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에 대한 첩보수집·분석, 다중 피해 발생 시 사이버갑 피해경보 발령, 피해예방수칙 등 대국민 홍보 매뉴얼의 보완, 예상 범죄 유형과 수법에 대한 연구 등 실질적 대책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

2) 사이버 저작권 고소남발 우려 상존

2018년 들어 9월까지 사이버 저작권 침해 건수는 3,128건으로, 전년 동기 5,292건에 비해 40.9% 감소하였다. 이는 지난 2015년 정점에 달했던 사이버 저작권 침해 1만 8,770건(검거건수 8,832건, 검거인원 1만 2,533명)에서, 2016년 9,796건(검거건수 5,616건, 검거인원 8,037명), 2017년 6,667건(검거건수 4,134건, 검거인원 5,445명) 등으로 매년 줄어 온 추세를 고려할 때, 감소 의미가 더욱 큰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경찰의 사건 검거율은 2015년 47.1%에서 2016년 57.3%, 2017년 62.0%, 2018년 9월 64.4%로 매년 높아지고 있어 경찰의 사이버 저작권 침해 근절 및 단속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1-38〉 사이버 저작권 침해 발생 및 건거 현황(2015~2018. 9)

연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2015	18,770	8,832	47.1%	12,533
2016	9,796	5,616	57.3%	8,037
2017	6,667	4,134	62.0%	5,445
2017. 9	5,292	3,294	62.2%	4,403
2018. 9	3,128	2,015	64.4%	2,501
전년 대비	-40.9%	-38.8%	2.2%p	-43.2%

출처 : 경찰청(2018)

고소 대상 저작물은 웹툰, 인터넷소설, 사진, 동영상, 음원, 폰트(글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 다양하다. 문제는 침해 건수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이 ‘친고죄’라는 점을 악용한 합의금 목적의 고소가 인터넷 만화나 소설, 소프트웨어 등 여러 저작물 유형에 걸쳐서 남발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명백한 무혐의 사건에 대한 각하 처리 등을 통해 일선 경찰관서의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는 저작권 관련 고소 남발 억제 노력을 기울여 오고는 있으나, 저작권 침해가 사실상 민사적 성격을 포함한 사안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고소인들이 현행법상 손쉬운 고소 접수 절차를 이용함으로써 결국 고소남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I. 112신고 추이와 전망

1. 112신고 건수 안정세 유지 전망

아래 <표 3-2-1>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112신고 건수를 나타낸다. 표와 같이, 112신고 건수는 2013년 이후 1,900만 건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112신고 건수는 2013년 처음으로 1,900만 건을 넘은 이후 2014년 및 2017년에 다소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6년간 1,900만 건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2018년 9월 말 기준 1,419만 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이러한 추세라면 2018년 한 해 동안 대략 1,920만 건의 112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2-1> 최근 6년간 112신고 접수 현황

(단위 : 천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9
총 접수	19,115	18,778	19,104	19,567	18,953	14,195
출동신고	9,344	10,387	10,719	10,701	10,539	7,784
비출동신고	9,771	8,390	8,385	8,865	8,413	6,411
출동신고 비중(%)	48.9	55.3	56.1	54.7	55.6	54.8

출처 : 경찰청(2018)

이처럼, 최근 들어 112신고 건수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정된 인력으로 관할 내의 치안을 담당하는 지역경찰 입장에서 112신고 건수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불과 10여 년 전인 2007년도에 112신고 건수가 620만 건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112신고 건수가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¹¹⁴⁾ 이는 휴대폰 등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112신고가 간편¹¹⁵⁾

114) 경찰청, 2016 경찰통계연보, 2017, 74쪽.

115) 경찰청은 2011년부터 시범 실시하였던 '112긴급신고 앱'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112긴급신고 앱' 서비스는 무료로 다운받아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이용 동의 후 사용가능하다. 앱사용자가 위급 상황 시 앱의 '긴급신고' 버튼을 터치하면, '112긴급신고 앱'은 관할 지방청의 112종합상황실에 자동으로 112신고를 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위치정보를 경찰에 전송한다.

해졌고, 경찰활동을 단순히 범죄와 관련된 국가작용이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로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112신고의 급격한 증가에 경찰은 112신고를 출동신고와 비출동신고로 구분하여 대응하는 등 신속한 경찰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¹¹⁶⁾ 이러한 노력은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112신고 건수가 1,900건 내외에서 유지될 것을 예측된다.

2. 112신고 사건종별 접수 현황

아래 <표 3-2-2>는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112신고의 사건종별 접수현황을 나타낸다.

<표 3-2-2> 최근 6년간 사건종별 112신고 접수 현황

(단위 : 천 건)

구분	계	중요범죄*	기타범죄	질서유지	교통	기타경찰업무	타기관,기타
2013	19,115	452(2.4%)	2,601	2,983	1,868	2,854	8,355
2014	18,778	488(2.6%)	2,757	3,181	2,051	3,526	6,772
2015	19,104	461(2.4%)	2,582	3,373	2,076	4,126	6,483
2016	19,567	594(3.0%)	2,257	3,467	2,088	4,351	6,627
2017	18,953	625(3.3%)	2,215	3,464	1,920	4,318	6,408
2018. 9	14,195	414(2.9%)	1,171	2,666	1,454	3,335	4,607

* 중요범죄란 살인, 강도, 치기, 절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을 의미한다.
출처 : 경찰청(2018)

위의 표와 같이, 112신고는 각 유형별로 매년 일정한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중요범죄는 40~60만 건, 기타범죄는 220~280만 건, 질서유지는 290~350만 건, 교통은 180~210만 건, 기타경찰업무는 280~440만 건, 타기관·기타는 640~840만 건 정도로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18년에도 유사할 것으로 보이고, 2019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요범죄의 경우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체

116) 2010년, 경찰은 '112신고 대응시스템'을 도입하여, 112신고의 필요성·긴급성을 기준으로 개별사건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현재 112신고를 긴급출동(Code 0,1), 비긴급출동(Code 2,3), 비출동(Code 4)등으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출동신고 비중은 90%에서 50%중반대로 감소하였다.

112신고 건수에서 중요범죄 신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도 2.4%정도에 머물렀으나, 2016년 처음으로 3.0%를 넘었고 2017년 3.3%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 9월 말 기준 2.9%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8년 한 해 약 3.0%의 중요범죄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2017년 대비 일시적인 감소인지, 감소의 추세가 2019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경찰은 중요범죄의 증감 추이를 추적·분석하여 한정된 경찰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3-2-3〉 112신고 처리 현황

(단위 : 천 건)

구분	계	처리건수						
		검거	현장종결	계속수사	인계종결	미처리	허위장난/오인	기타
2015	10,719	392	5,921(55.2%)	912	485	773	405(3.8%)	1,828
2016	10,701	423	5,297(49.5%)	908	450	729	692(6.5%)	2,201
2017	10,539	363	5,469(51.9%)	984	414	799	362(3.4%)	2,144
2018. 10	8,651	241	4,643(53.7%)	931	623	623	244(2.8%)	1,640

출처 : 경찰청(2018)

한편, 위 〈표 3-2-3〉은 각 112신고 접수 코드별¹¹⁷⁾ 처리현황을 보여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긴급성이 없는 민원 상담 신고(Code 4)를 제외한 4가지 코드의 사건들 중 절반 이상이 현장에서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 10월까지 총 865만 건의 112신고가 경찰의 현장출동이 필요한 사건으로 접수되었는데, 그 중 464만 건(53.7%)이 현장에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의 51.9%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허위장난이나 오인신고로 확인된 신고의 비율은 2017년 3.4%에 비해 소폭 감소한 2.8%로 나타났다. 허위신고 혹은 오인신고의 비중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신고들은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117) 각 Code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ode 0 : 이동범죄, 강력범죄 현행범 등 실시간 전파가 필요한 경우
- Code 1 :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 진행 중, 직후인 경우 또는 현행범인인 경우
- Code 2 : 생명·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Code 3 : 즉각적인 현장조치는 불필요하나 수사, 전문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 Code 4 : 긴급성이 없는 민원 상담 신고

3. 허위신고 근절을 통한 경찰대응의 효율성 제고

아래 <표 3-2-4>은 112 허위신고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처벌 현황을 나타낸다.

<표 3-2-4> 112 허위신고 및 처벌 현황

(단위 : 건)

구 분	허위신고	허위신고 처벌 현황								
		계	처벌 비율 (%)	형사입건			경범죄처벌 (즉심)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벌금	구류	과료
2013	7,504(0.04%)	1,844	24.4	188	7	181	1,649	1,571	52	26
2014	2,350(0.01%)	1,913	81.4	478	30	448	1,435	1,384	42	9
2015	2,927(0.02%)	2,734	93.4	759	22	737	1,975	1,946	22	7
2016	4,503(0.02%)	3,556	78.9	947	24	923	2,609	2,580	12	17
2017	4,641(0.03%)	4,192	90.3	1,059	21	1,038	3,133	3,094	26	13
2018. 10	4,053(0.02%)	3,541	87.4	877	21	856	2,677	2,669	2	6

출처 : 경찰청(2018)

위의 표와 같이, 112 허위신고의 비율은 2013년 이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112 허위신고는 2013년 7,504건(0.04%)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 2,350건(0.01%)으로 급격히 감소한 이후, 2016년부터는 4,500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는 2013년 8월부터 시행을 시작한 「112허위신고 근절 종합 대책」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경찰은 불필요한 112신고를 감소시키고, 경찰력 낭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위신고 근절 대책을 펼쳐왔다. 그러한 대책들은 상습·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 등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국민 홍보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위의 표와 같이, 2013년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비율이 24.4%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81.4%로 급격히 증가한 이후,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에도 허위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위협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시민

들이 적시에 경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허위신고의 감소 추이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4. 112신고 현장출동 관련 전망

〈표 3-2-5〉은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112신고 출동시간을 보여준다. 표의 좌측은 긴급출동 대상인 Code 0과 Code 1신고의 출동시간이고, 우측은 비긴급출동 대상인 Code 2와 Code 3신고의 출동시간을 나타낸다.

〈표 3-2-5〉 최근 6년간 112신고 평균출동시간

(단위 : 분, 초)

구 분	긴급출동 (Code 0,1)						비긴급출동 (Code 2,3)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8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8
도착시간	04:30	03:50	05:04	05:02	05:21	05:18	04:34	04:00	05:15	05:20	05:50	05:35

출처 : 경찰청(2018)

위의 표와 같이, 2013년 및 2014년도에는 출동시간이 3~5분 이내에서 관리되었으나, 2015년도에 출동시간이 처음으로 5분을 넘은 이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출동인 경우, 2017년 평균출동시간이 5분21초였으나, 2018년 8월말 기준 5분18초로 나타났고, 비긴급출동인 경우, 2017년 5분50초였으나, 2018년 8월말 기준 5분35초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8년 1년 동안의 평균출동시간이 5분40초 정도로 기록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2017년 대비 일시적인 감소인지, 감소의 추세가 2019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최근 몇 년 사이에 출동 시간이 늘어난 이유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의 도착보고 관행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청에서는 2015년부터 신고자를 직접 만나거나 현장에 정확하게 도착했을 때 도착처리를 하도록 지속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12월에는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서 순찰차 수동도착 처리기능을 폐지함으로써 통계상 현장출동 시간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¹¹⁸⁾ 최근의 현장출동 시간 증가는 이러한 변화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 2017년도 시행 ‘현장대응시간 목표관리제’ 전망

신속한 현장출동이 국민안전 확보 및 신뢰도 제고와 직결되는 만큼 대응시간을 단축하거나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경찰관이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한다는 것을 신고자들이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동안 경찰이 신속출동을 강조하고 홍보하는 것과 신고자들이 체감하는 것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청은 ‘지령을 완료하고 출동을 시작한 이후’부터 도착시간을 산출하고 있으나 신고자는 ‘접수경찰관과 통화를 완료한 이후’부터 순찰차가 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도착시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경찰이 관리해온 도착시간과 신고자가 생각하는 도착시간 간에 ‘통화완료 후부터 지령’하는 데 까지 걸린 시간만큼 공백이 발생해 온 셈이다.¹¹⁹⁾

이러한 괴리를 좁히기 위해 경찰은 2017년 3월 ‘112 긴급신고 신속출동을 위한 현장대응시간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¹²⁰⁾ 경찰청은 2017년도에 현장대응시간 7% 단축을 목표로 삼고 지방청별로 ‘현장대응시간 단축목표’를 차등 부여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현장출동 시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5분 중반 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순찰차 도착시간의 경우 ‘자동도착처리’를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출동 경찰관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현장 대응시간에 대한 개념을 신고자 위주로 재정비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현장대응시간 단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경찰은 정기적으로 현장대응시간 및 자동도착 처리율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행도를 측정하여 문제점을 지속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2017년부터 기울여

118) 자동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무전으로 도착 보고를 하면, 지령요원이 폴맵에서 위치를 확인한 후 도착처리를 하고 있다.

119) 2016년 기준, 총 64초(통화완료 후 처리시간 31초, 지령소요시간 33초)의 갭이 발생하였다.

120) 현장대응시간이란 통화완료 후 현장도착시까지 소요시간을 의미한다. 즉, 신고자 입장에서 느끼는 출동시간을 의미한다. 경찰청은 기존의 출동시간 통계와는 별도로 현장대응시간을 수치화하고 단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온 노력들로 인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긴급출동에 대한 평균출동시간이 2017년 5분21초에서 2018년 8월말 현재 기준 5분18초로 소폭이나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폭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감소폭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추세가 2019년에도 이어진다면, 국민이 느끼는 체감치안 혹은 치안만족도는 조금이나마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II. 젠더폭력¹²¹⁾ 전망

1. 성폭력 사건의 감소 추이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의 적극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필요성은 증대

성폭력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성폭력의 추이에 대한 분석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성폭력의 개념을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관련 언어나 행동을 일방적으로 표출하여 상대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넓게 파악한다면, 성희롱 등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면, 성폭력을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분석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국한된다. 사회학적으로는 광의의 개념에 따른 분석과 전망도 의미가 있겠으나, 경찰업무와의 직접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현행법상 성폭력범죄로 규정된 협의의 성폭력의 추이에 대하여 분석, 전망하기로 한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폭력 범죄 중 강간 및 강제추행의 발생 및 검거건수는 2014년 전년도 대비 감소였다가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한 후 2018년에는 다시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8년의 경우 9월까지 발생한 전체 강간 및 강제추행은 17,583건, 검거건수는 17,02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3%, 2.4%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찰청 통계에 의할 경우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강간 및 강제추행이 최근 특별히 악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121) 「젠더 폭력(gender-based violence)」은 특정 성(gender)에 대한 혐오에 기인하여 저질러지는 다양한 형태의 직접적·간접적 폭력을 의미한다. 남성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도 그 개념 범위에 포함되지만, 주로 여성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본 전망에서는 그중에서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데이트 폭력에 한정하여 젠더 폭력을 논하고자 한다.

〈표 3-2-6〉 강간 및 강제추행 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2013	22,342	19,760	88.4%
2014	21,172	20,045	94.7%
2015	21,352	20,529	96.1%
2016	22,229	21,475	96.6%
2017	24,106	23,284	96.6%
2017. 9	17,991	17,450	97.0%
2018. 9	17,583	17,028	96.8%
전년대비(%)	-2.3	-2.4	0.1%p

출처 : 경찰청(2018)

또한 각 지방경찰청 여청수사팀에서 검거한 전체 성폭력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성폭력 검거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의 경우 9월까지 검거한 전체 인원은 2,292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2% 감소하여 안정적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장애인 및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검거인원은 지난해 대비 각각 14.5%, 5.6% 증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7〉 지방청 여청수사팀 성폭력 검거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계	장애인	아동(13세 미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19세 이상
2013	2,356	680	1,010	486	180
2014	3,133	1,056	1,415	404	258
2015	3,267	906	1,613	339	409
2016	3,047	869	1,411	274	493
2017	3,197	1,045	1,441	256	455
2017. 9	2,367	751	1,072	194	350
2018. 9	2,292	860	1,132	97	203
전년대비(%)	-3.2	-14.5	-5.6	-50.0	-42.0

출처 : 경찰청 (2018)

이와 같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은 최근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 캠페인」의 영향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는 등 성폭력은 여전히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은 명확하다. 특히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부의 법·제도적 노력에 대한 인지도 역시 낮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더불어 성폭력 관련 구제 절차의 홍보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의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2-8〉 누군가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적이 있는지 유무

(단위 : %)

구분	없음	있음
전체	62.1	37.9
여성	51.9	48.1
남성	86.0	14.0

출처 : 여성가족부(2016),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2016)

〈표 3-2-9〉 정부의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노력에 대한 인지도

(단위 : %)

구분	없음	여성	남성
전혀 모른다	15.3	15.2	15.5
들은 적은 있지만 내용은 모른다	69.3	71.5	67.2
내용은 잘 알고 있다	15.3	13.3	17.3

출처 : 여성가족부(2016),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2016)

2. 가정폭력은 완화 추세이나 가정폭력 신고율은 여전히 저조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¹²²⁾ 가정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벌어지고 가·피해자가 친밀하다는 특징을 갖고

1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가정구성원의 범위는,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③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는 해당 없음)를 말한다.

있다. 그 때문에 피해 내용을 외부에 알리기를 꺼려하거나 보복으로 인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에는 가정의 해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경찰에서 처리한 가정폭력사건 및 인원은 2015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한 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의 경우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검거건수는 소폭 상승하였지만 검거인원은 10.4% 감소하였다. 또한 구속된 인원 역시 21.7% 감소하여 질적으로도 안정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10〉 가정폭력 검거 및 조치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명)	
			구속	불구속
2015	40,828	47,543	602	46,941
2016	45,619	53,511	503	53,008
2017	38,489	45,206	384	11,345
2017. 9	28,866	33,815	309	8,389
2018. 9	29,006	30,287	242	7,979
전년대비(%)	0.48	-10.4	-21.7	-14.7

출처 : 경찰청(2018)

이렇듯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과거에 비하여 완화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각 부처간의 노력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은 2014년 1월 가정폭력 전수 합심조사제를 도입하고, 2016년 4월 학대전담경찰관을 출범시키는 등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가 계속된다면 가정폭력범죄는 당분간 현 상태와 비슷한 안정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발생한 강서구 살인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정폭력 범죄의 암수화와 조기 발견의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위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 의사는 아래의 표와 같이 여전히 60%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배

우자를 고소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전체의 57.5%에 그치는 등 시민들의 가정폭력에 관한 법·제도의 인지도 역시 결코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정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보호·지원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일반 시민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3-2-11〉 부부폭력 발생 시 경찰신고 의사

(단위 : %)

구분	본인가정 발생시			구분	이웃가정 발생시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신고의사	61.4	67.2	55.5	신고의사	65.0	66.7	63.2

출처 : 여성가족부(2016),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2016)

〈표 3-2-12〉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인지도

(단위 :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정폭력(아동 및 노인학대 포함)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83.5	82.4	84.7
가정폭력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65.3	63.6	67.1
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52.5	51.1	54.0
가정 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57.5	57.0	58.0
전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다	62.1	61.0	63.1
가정폭력을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73.1	71.8	74.4

출처 : 여성가족부(2016),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2016)

3. 채팅앱 등 스마트폰을 악용한 성매매 우려는 계속

200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경찰은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지만, 성매매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의 특성상 성매매의 단속 추이를 토대로 성매매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구체적인 단속 내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최근 성매매의 경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는 있다.

먼저, 업종별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성매매 단속 건수는 해마다 차이가 있

기는 있지만, 신변종업소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단속 비율이 대체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채팅앱에 대한 단속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성매매의 형태가 기존의 점포형 성매매에서 벗어나,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13〉 성매매 업종별 단속현황

(단위 : 건)

구분	계(건)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용업	숙박업	오피스텔	안마시술소	변태마사지	키스방	립카페	채팅앱	기타
2014	8,977	26	308	220	429	1,546	383	2,575	263	304		2,923
2015	7,286	54	455	173	450	1,809	242	2,277	201	247		1,378
2016	15,474	26	231	60	294	2,006	215	1,866	98	242		10,436
2017	10,782	13	200	40	244	1,466	141	1,125	90	46	2,778	4,639
2018. 8	5,046	7	123	18	182	961	74	751	44	35	1,323	1,528

출처 : 경찰청(2018)

또한 최종별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을 살펴보면, 2016년 이후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18년 9월말까지 성매매 전체 건수 및 검거인원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9.5%, 35.9%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즉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단속한 건수 및 인원의 추이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표 3-2-14〉 성매매 단속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구속인원		
	합계	성매매	아청법	합계	성매매	아청법	합계	성매매	아청법
2015	7,286	6,999	287	20,097	19,387	710	311	232	79
2016	15,474	15,086	388	42,950	41,929	1,021	577	442	135
2017	10,782	10,126	656	22,845	21,744	1,101	493	385	108
2017. 9	9,220	8,671	549	19,612	18,722	890	443	349	94
2018. 9	5,577	5,332	245	12,573	12,051	522	253	184	69
전년대비(%)	-39.5	-38.5	-55.4	-35.9	-35.6	-41.3	-42.9	-47.3	-6.3

출처 : 경찰청(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의 매개 수단이 채팅앱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상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에 있어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채팅앱 등을 통한 개인 간의 성매매는 전통적인 업소형 성매매에 비해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고 행동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가출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들이 그 피해자가 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채팅앱에 대한 규제는 일반 성매매의 근절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들의 높은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개인 간의 성매매 확산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한 성매매 근절 대책 마련의 필요성 역시 높아질 것이다.

4. 연인간(데이트) 폭력은 증가 추세, 주요 치안 이슈 중 하나로 계속 부각 예상

연인사이 또는 과거 연인사이였던 남녀 간에 발생한 데이트 폭력이 최근 여론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실제로도 데이트 폭력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2018년의 경우 9월말 기준 신고인원 총 13,981명으로 지난해 동기간에 비하여 무려 33.7%나 증가하는 등 데이트 폭력은 악화 추세에 있다. 더욱이 경찰에서 입건한 데이트 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폭행·상해(7,736명), 체포·감금·협박(816명), 경범죄 등 기타(629명), 주거침입(487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및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도 각각 69건, 27건이 발생하는 등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표 3-2-15〉 데이트 폭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신고건수	형사입건(명)						
		계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살인(미수포함)	성폭력	주거침입	경범죄 등 기타
2016	9,364	8,367	6,233	1,017	52	224	-	841
2017	14,136	10,303	7,552	1,189	67	138	481	876
2017. 9	10,459	7,888	5,788	921	51	120	351	657
2018. 9	13,981	7,736	5,708	816	27	69	487	629

출처 : 경찰청(2018)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가해자 및 피해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기

반으로 하므로 장기간 지속·은폐되기 쉽고,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에 이르기까지 폭력의 범위가 확산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2016. 9. 12부터 9. 21까지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실시한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에 따르면,¹²³⁾ 전체 설문에 답변을 완료한 성인 여성 중 무려 61.6%가 폭력 피해(통제,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신체적, 성적)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를 입었다고 답변한 여성 중 95.2%는 피해 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여 데이트 폭력의 경우 여타 젠더폭력에 비해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트 폭력의 경우 직접적인 개념 정의나 행위 규제를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살인, 성폭력 등 개별적인 행위유형에 따라 대응을 하는 외에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¹²⁴⁾ 데이트 폭력은 앞으로도 중요한 치안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관련 법안의 성립 및 이를 근거로 한 경찰권의 적정한 행사 여부가 데이트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23) 손문숙·조재연,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한국여성의 전화, 2016, 1~37쪽. 동 보고서는 응답을 완료한 1,082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124)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입법안으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102, 2016. 6. 3)” ;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2063, 2016. 9. 2)” ;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2537, 2016. 9. 30)” ;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2641, 2016. 10. 13)” ;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8108, 2017. 7. 20)” 등이 있다.

Ⅲ. 학교폭력 전망

1. 학교폭력 증가 추세 지속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등장한 이후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후로도 몇 차례 관련부처합동으로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학교폭력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그 행위유형은 날로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학교폭력 유형은 ‘폭행, 협박, 따돌림’이 전부였으나 2008년 개정 법률에서는 ‘상해, 감금,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피해 행위’가 추가되었고, 2012년 개정 법률에서는 ‘강제적인 심부름’과 ‘사이버 따돌림’이 추가되었다.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추가해 온 것은 학교폭력의 양상이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치안수요 예측은 학교폭력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 파악이 이뤄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매년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까닭도 정확한 실태 파악에 기초하여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학교폭력 실태 파악은 크게 두 가지 조사결과에 기초해 이뤄진다. 하나는 전국적 규모의 전수조사 혹은 표본조사 결과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와 경찰에서 집계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 심의 및 조사 결과이다. 후자와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조치결과를 집계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학교폭력 유형 중 폭행·상해, 금품갈취, 성폭력 등 경찰의 개입이 요구된 학교폭력 사건 처리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각각의 조사결과 및 집계자료는 나름의 특성과 의미를 갖는다. 전수 및 표본 실태 조사 결과는 학교당국이나 경찰에 알려지지 않은 피해경험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피

해 규모와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는 학교당국에 드러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결과로서, 경찰에서 집계한 학교폭력 검거 현황 자료는 형사사법기관의 공식적 집계자료로서 각각 그 의미를 갖는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전국적 규모의 전수조사와 민간기관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표본조사가 대표적이다. 이 두 기관의 조사결과는 매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서 학교폭력 실태 추이분석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각각 전수조사¹²⁵⁾와 표본조사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상호보완적 성격을 띤다.

2012년부터 교육부에서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전수 실태조사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교 전체이다. 한편 민간단체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 전국적 규모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이 조사는 온·오프라인 표집조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수조사 방식의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중요한 지표로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을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지난 1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경험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이다. 이 지표는 학교폭력 피해규모를 추정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추이를 통해 학교폭력의 실태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2년 첫 조사가 이뤄진 후 지속되어 온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감소 추세는 상승 반전됨으로써 새로운 추세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6년(1차) 조사에서 12.3%를 기록했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1차) 조사에서 0.9%까지 크게 감소했으나, 2018년(1차) 조사에서는 전년과 같은 0.9%를 나타내어서 감소세를 멈추었고, 2018년(1차) 조사에서는 전년대비 0.4%p 상승한 1.3%를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는 지난 2014년(1차)

125) 교육부의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도 2018년 조사부터 1차시기는 전수조사방식, 2차시기는 표본조사 방식을 도입하였다.

조사 수준으로 복귀한 것이다.

〈표 3-2-16〉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추이(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

(단위 : %)

조사 시기	2012(1차)	2013(1차)	2014(1차)	2015(1차)	2016(1차)	2017(1차)	2018(1차)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2.3	2.2	1.4	1.0	0.9	0.9	1.3

* 연도와 병기된 차수는 해마다 두 차례 실시되는 학교폭력실태조사 차수임.
출처 : 교육부(2018)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추이와 더불어 목격응답률의 추이도 주목할 만하다. 목격응답률은 지난 1년 동안 학교폭력 목격경험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이다. 학교폭력 목격응답률은 지난 2013년(1차) 조사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냈으나, 지난 2017(1차) 조사 이후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구체적으로 2013년(1차) 조사 시기 7.6%에 이르던 학교폭력 목격응답률이 2016년(1차) 시기에는 2.5%까지 낮아졌으나, 2017년(1차) 시기에는 2.6%, 2018년(1차) 시기에는 전년대비 0.8%p 증가한 3.4%를 기록하고 있다.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최근 피해응답률과 목격응답률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학교폭력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2-17〉 학교폭력 목격 응답률 추이(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

(단위 : %)

조사 시기	2013(1차)	2014(1차)	2015(1차)	2016(1차)	2017(1차)	2018(1차)
학교폭력 목격 응답률	7.6	7.2	3.0	2.5	2.6	3.4

출처 : 교육부(2018)

표본조사 방식을 취하고 있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이미 2015년부터 추세 전환을 보여 왔다. 즉, 2012년 12.0%에 이르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14년에 3.8%까지 감소하였으나, 2015년 조사에서는 4.6%로 반전되었고 2016년 6.4%, 2017년 6.5%를 기록함으로써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표 3-2-18〉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추이(청소년폭력예방재단 조사)

(단위 : %)

조사 시기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12.0	6.3	3.8	4.6	6.4	6.5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8)

교육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두 기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조사에서는 이미 3년 전부터 증가 추세를 나타내 왔다는 점에서 볼 때, 지난 2012년 이후 감소해 온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추이는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의 증가 추세는 바로 학교폭력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학교폭력 증가 추세는 학교당국의 학교폭력 사건 처리 집계 수치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당국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사안을 심의 처리하는데, 전국적으로 집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집계 수치는 학교폭력 증감 추이를 가장 잘 보여준다.

〈표 3-2-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단위 : 건)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심의건수	24,709	17,749	19,521	19,968	23,673	30,993

출처 : 교육부(2018), 국감자료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수립 이후 6년 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감소 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수립된 2012년에 심의건수는 24,709건이었는데 2013년에는 17,749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런데 2014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서 2016년에는 2012년 수치에 육박하는 23,673건에 이르고, 2017년에는 전년대비 32.1% 증가한 30,993건을 기록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로 볼 때, 2017년 심의건수 수치는 지난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되던 시기의 심의건수 수치를 크게 넘어섰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추이는 다른 변수들이 작용할 여지가 있어서 그 자체로 학교폭력 실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보조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

〈표 3-2-20〉 학교폭력 검거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검거인원	23,877	17,385	13,268	12,495	12,805	14,000

출처 : 경찰청(2018)

학교폭력 증가 추세는 근래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 수치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6년 동안 경찰에 검거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23,877명이던 검거 가해학생 수는 2015년 12,495명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냈지만, 지난 2016년 12,805명으로 소폭 증가한 데 이어서 2017년에도 전년대비 9.3% 증가한 14,000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검거된 가해학생 수 추이로 볼 때, 학교폭력 발생 추이는 한 동안 지속된 감소추세를 멈추고 근래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2-21〉 학교폭력 신고·도움 응답 추이(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

(단위 : %)

조사 시기	2014(1차)	2015(1차)	2016(1차)	2017(1차)	2018(1차)
피해 후 알림·신고 비율	78.3	79.6	80.3	78.8	80.9
목격 후 알림·도움 비율	79.1	85.2	87.3	78.9	68.2

출처 : 교육부(2018)

한편, 학교폭력 발생 추이의 변화는 학교폭력 피해 및 목격 신고율의 변화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후 그 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한 비율은 2016년(1차) 조사 시기 80.3%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감소와 증가를 나타내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고, 학교폭력을 목격 후 알림 혹은 도움을 준 비율은 2016년(1차) 조사 시기 87.3%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감소하고 있다. 2018년(1차) 조사에서 학교폭력 목격 후 알림 혹은 도움 비율은 전년대비 10.7%p 감소한 68.2%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수치는 지난 2014년(1차) 조사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학교폭력 피해 후 알림 및 신고비율이 감소 추세를 멈추고 혼조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편, 학교폭력 목격 후 알림 및 도움 비율이 지난 2017년 조사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은 학교폭력 발생 추이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 당사자나 주변사람들의 신고의식이 학교폭력 억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학교폭력 신고의식의 고양은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는 반면, 학교폭력 신고율의 감소는 학교폭력 억제요인의 약화로 해석된다.

학교폭력 발생 규모 파악을 위한 객관적 지표가 되는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추이를 비롯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심의건수 추이, 경찰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검거 추이는 2012년 이후 지속되어 온 학교폭력 감소추세가 근래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단지 각 자료는 그 추세 전환의

시점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더하여 교육부 학교폭력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학교폭력 피해 및 목격 신고 비율의 추이도 학교폭력 발생 추이에 부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다.

근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교육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산출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모두 추세 전환을 하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2019년에도 학교폭력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학교폭력 집단성 및 폭력성 다소 악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배경에는 학교폭력의 폭력성과 집단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학교폭력에 부여된 일반적 이미지는 집단적인 따돌림과 폭력이다.

학교폭력의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는 학교폭력 피해경험률이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조사대상자 가운데 피해경험자의 비율을 산출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피해응답률만으로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판단은 양적 규모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에 대한 파악을 요구한다. 학교폭력의 집단성과 폭력성을 논의하는 것은 그 질적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집단성은 학교 내 폭력서클의 존재와 활동여부를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지만, 보다 객관적 지표는 학교폭력 사건당 가해학생수의 추이를 통해 산출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현황은 그 근거자료가 된다.

〈표 3-2-22〉 연도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당 가해학생 수

(단위 : 건, 명)

학년도	심의건수	가해 학생 수	심의 건당 가해 학생 수
2011	7,443	27,021	3.63
2012	24,709	42,232	1.71
2013	17,749	29,325	1.65
2014	19,521	28,949	1.48
2015	19,968	28,393	1.42
2016	23,673	32,947	1.39
2017	30,993	44,346	1.43

출처 : 교육부 2013 국감자료; 교육부 2018 국감자료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당 가해학생 수 규모는 감소추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되었다. 구체적으로 2011년 심의 건당 가해학생 수는 3.63명이었는데, 이후 5년 동안 매년 감소하여 2016년에는 1.39명으로 낮아졌으나, 2017학년도에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1.43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2014~2015학년도 수준으로 복귀한 것으로 학교폭력의 집단성이 다소 나빠진 것을 보여준다.

학교폭력의 집단성과 함께 주목해야 할 특성은 폭력성이다. 폭력성은 대표적으로 학교폭력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특성으로서 폭력적인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체감 안전도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학교폭력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물리적 신체폭력 발생 비중이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의 구체적 행위유형별 피해응답 건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학생 천 명당 신체폭행 피해응답 건수 추이는 학교폭력의 폭력성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표 3-2-23〉 학생 천 명당 신체폭행 피해 건수(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

(단위 : 건)

연도	2013(1차)	2014(1차)	2015(1차)	2016(1차)	2017(1차)	2018(1차)
신체 폭행	4.7	3.1	2.4	2.2	2.2	2.5

출처 : 교육부(2018)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생 천 명당 신체 폭행 피해건수는 지난 2013년(1차) 조사 이후 2017년(1차) 조사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2018년(1차) 조사에서는 상승 전환된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2013년(1차) 조사에서 학생 천 명당 신체폭행 피해건수는 4.7건으로 조사되었는데, 2017년(1차) 조사에서 2.2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으나, 2018년(1차) 조사에서는 2.5건으로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지난 2014년~2015년 수준으로 복귀한 것으로 최근 학교폭력의 폭력성이 다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당 가해학생수의 증가 전환과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학생 천 명당 신체 폭행 피해건수 증가 전환은 학교폭력의 집단성과 폭력성이 최근 다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추세는 201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성폭력 증가 추세 가속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유형에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공갈, 금품갈취, 강요, 강제적 심부름, 따돌림,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정보, 사이버 따돌림, 성폭력 등이 포함된다.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은 가해 유형별로 성폭력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학교폭력 유형상 성폭력의 증가는 학교당국과 경찰의 사건처리 집계자료에서 잘 나타난다.

〈표 3-2-2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성폭력 심의건수

(단위 : 건)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성폭력 심의건수	652	878	1,429	1,842	2,387	3,622

출처 : 교육부 국감자료(201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사건 중 성폭력 심의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2012년 성폭력 심의건수는 652건으로 집계되었는데, 2014년에는 1,429건, 2016년에는 2,387건, 2017년에는 전년대비 51.7% 증가한 3,622건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성폭력 심의건수는 5.5배 증가한 셈이다.

학교폭력 유형별로 성폭력 증가 추이는 경찰에서 집계한 학교폭력 검거 및 조치 현황에서도 확인된다. 경찰이 개입하는 학교폭력 사건은 유형별로 폭행·상해, 금품갈취, 성폭력으로 구분되는데, 폭행·상해와 금품갈취 유형의 경우 2017년 검거 건수는 지난 2012년 대비 크게 감소한 반면, 성폭력은 2015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구체적으로 2011년 444명이던 성폭력 가해학생은 2016년 1,364명, 2017년에는 전년대비 24.2% 증가한 1,695명을 기록하고 있다. 2018년 9월 현재 1,802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2.9% 증가한 상태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성폭력 심의건수 추이와 경찰의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현황 추이로 살펴볼 때, 학교폭력 유형별로 성폭력은 뚜렷한 증가 추세에 있다.

〈표 3-2-25〉 학교폭력 검거 및 조치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유형별				조치별			
		폭행·상해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구속	불구속	소년부송치	기타
2012	23,877	14,637	5,912	509	2,819	333	15,615	2,657	5,272
2013	17,385	11,048	2,603	1,067	2,667	294	11,016	1,824	4,251
2014	13,268	8,974	1,582	1,295	1,417	167	8,586	1,191	3,324
2015	12,495	9,188	1,153	1,253	901	93	9,157	1,059	2,186
2016	12,805	9,396	1,161	1,364	884	62	9,852	1,097	1,794
2017	14,000	10,038	1,191	1,695	1,076	61	10,556	1,296	2,087
2017. 9	10,431	7,577	865	1,261	728	53	7,882	971	1,525
2018. 9	9,785	5,837	1,057	1,802	963	69	7,026	952	1,738
전년대비	-6.2%	-23.0%	22.2%	42.9%	32.3%	30.2%	-10.9%	-2.0%	14.0%

출처 : 경찰청(201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성폭력 심의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급은 중학교이다. 중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심의건수가 전체 학교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학년도 56.7%, 14학년도 54.9%, 15학년도 49.2%, 16학년도 48.3%, 17학년도 46.6%로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심의 건수 비중은 학교급별로 가장 낮지만 지난 5년 동안 가장 높은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성폭력 심의건수가 전체 학교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학년도 14.8%, 14학년도

21.7%, 15학년도 23.8%, 16학년도 22.6%, 17학년도 25.8%를 나타내고 있다. 이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8학년도에는 고등학교 성폭력 심의건수 비중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표 3-2-26〉 학교급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성폭력 심의건수

(단위: 건, %)

	학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학교급	초	130(14.2)	310(21.7)	439(23.8)	539(22.6)	936(25.8)
	중	497(56.7)	784(54.9)	907(49.2)	1,152(48.3)	1,688(46.6)
	고	221(25.2)	305(21.3)	448(24.3)	660(27.6)	948(26.2)
	특·각	30(3.4)	30(2.1)	48(2.6)	36(1.5)	50(1.4)
	계	878(100.0)	1,429(100.0)	1,842(100.0)	2,387(100.0)	3,622(100.0)

* 각 학년도는 해당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9일까지임.

** 특·각은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줄임 말임.

출처: 교육부 국감자료(2018)

학교급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성폭력 심의 건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초등학교 성폭력 심의건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중학교 성폭력 심의건수가 13학년도 497건에서 17학년도 1,688건으로 약 3배 증가하였고, 고등학교는 13학년도 221건에서 17학년도 948건으로 약 4배 증가하였는데, 초등학교는 13학년도 130건에서 17학년도 936건으로 약 7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5년 동안 전체 학교급에서 성폭력 사건이 크게 증가했는데, 특별히 초등학교 성폭력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2-2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당 피해 학생 수

(단위: 건, 명)

학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심의건수	878	1,429	1,842	2,387	3,622
피해학생수	1,075	1,885	2,632	3,426	5,247
심의 건당 피해학생수	1.22	1.32	1.42	1.44	1.45

출처: 교육부 국감자료(2018)

전체 학교급에서 성폭력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성폭력 가·피해학생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해당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피해학생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구체

적으로 성폭력 심의건당 피해학생수는 13학년도 1.22명 수준을 나타냈는데, 14학년도 1.32명, 15학년도 1.42명, 16학년도 1.44명, 17학년도 1.45명으로 증가추세이다. 심의건당 피해학생수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유형상 성폭력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폭력 유형상 성폭력 증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성폭력 하위유형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성폭력 심의사안과 경찰의 학교폭력 유형상 성폭력 범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광범위하게 정의된 ‘성폭력 범죄’ 개념에 따라 형법상 성폭속에 관한 범죄로 분류되는 범죄유형을 포함한다.¹²⁶⁾ 다시 말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에는 강간·강제추행 행위 외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 등을 포함하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성폭력 사건 집계자료와 경찰의 성폭력 사건 집계자료도 이러한 법률적 성폭력 범죄개념에 근거하여 성폭력 사건이 집계된다. 공식적인 집계자료는 없으나 경찰에 검거된 학교폭력 유형별 성폭력의 주요 유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속칭, 몰카)로 추정된다. 적절한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성폭력으로 범주화된 행위유형에 세부 분류와 어떠한 행위유형이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인터넷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도 음란물 유통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음란물 유통공간의 확장은 성폭력 증가 추세를 강화하는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이 날로 확장되는 외적 환경과 성폭력 범죄 발생 추이에 근거해서 학교폭력 유형상 성폭력 증가 추세는 201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4. 학교 밖 청소년 폭력은 여전히 심각하나 비중은 소폭 감소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교 공간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가해자가 성인일지라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는 모두 학교폭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학교 밖 청소년이

1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에는 강간, 추행 범죄 유형 외에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등과 같이 형법상 성폭속에 관한 죄로 분류되어 있는 범죄도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어 있다(제2조).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가해자인 학교폭력 발생 추이는 경찰의 학교급별 학교폭력 현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표 3-2-28〉 학교폭력 유형별 학교급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유형별				학교급별			
		폭행·상해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초	중	고	학교 밖(%)
2012	23,877	14,637	5,912	509	2,819	1,182	11,845	8,795	2,055(8.6)
2013	17,385	11,048	2,603	1,067	2,667	593	6,513	5,857	4,422(25.4)
2014	13,268	8,974	1,582	1,295	1,417	291	4,502	4,276	4,199(31.6)
2015	12,495	9,188	1,153	1,253	901	357	3,127	3,842	5,169(41.4)
2016	12,805	9,396	1,161	1,364	884	358	3,365	3,957	5,125(40.0)
2017	14,000	10,038	1,191	1,695	1,076	485	3,814	4,851	4,850(34.6)

출처 : 경찰청(2018)

경찰에 신고가 되거나 인계된 학교폭력 사건은 상대적으로 심한 학교폭력 유형에 속한다. 폭행·상해, 금품갈취, 성폭력 등이 그 다수를 차지한다. 경찰에서 집계한 학교급별 학교폭력 현황에는 가해자가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의 비중은 지난 2012년 이후 2015년까지 급증하였다가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2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의 비중은 8.6%였는데, 2015년에는 41.4%까지 급증했다가 2016년에는 40.0%, 2017년에는 전년대비 5.4%p 감소한 34.6%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가해자인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2년 동안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경찰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급별 집계에 학교 밖 청소년의 비중이 높은 까닭은 경찰에 검거되는 사안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 외에도 학교폭력대책 사안 처리과정에서 퇴학 처리되거나 자퇴하여 더 이상 재학생으로 분류되지 않는 가해학생이 포함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3-2-29〉 학교 밖 청소년 범죄 추이

(단위 : 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소년범죄	전체	107,018	90,694	78,794	80,321	76,356	72,752
	학교 밖	37,817	40,411	34,403	36,185	32,466	29,745
	비율(%)	35.3	44.5	43.6	45.0	42.5	40.9

출처 : 경찰청(2018)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에서도 주목해야 할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체 소년범(만 14세~18세)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5.3%였는데 2013년에는 44.5%로 크게 높아진 이후 소폭의 증감을 나타내며 혼조양상을 보이다가 2015년(45.0%)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전체 소년범 중 학교 밖 청소년 비중은 40.9%로서 전년대비 1.6%p 낮아진 상태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부산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강릉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폭력예방 대책은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 부처의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이탈과 범죄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폭력은 재학생 대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인 학교 밖 청소년 범죄예방대책 시행과 더불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I. 교통 환경의 변화와 전망

1. 교통 관련 지표의 변화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5,178만 명, 도로연장은 110,091km, 자동차 등록대수 2,253만여 대, 운전면허 소지자는 3,167만여 명,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16,335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인구, 도로연장과 운전면허 소지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5년도를 정점으로 2016년에 대폭 감소하였다가 2017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교통사고는 2013년 이후 2015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2015년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3-1〉 주요 교통 지표의 변화

연도	인구 ¹⁾ (천명)	도로연장 ²⁾ (km)	자동차 등록대수 ³⁾ (천대)	교통사고 발생건수 ⁴⁾	운전면허 소지자 ⁵⁾ (천명)
2013	50,219	106,414	19,401	215,354	28,848
2014	50,423	105,673	20,117	223,552	29,544
2015	50,801	107,527	24,755	232,035	30,293
2016	51,170	107,527	21,803	220,908	31,190
2017	51,778	110,091	22,528	216,335	31,665

출처 : 1), 2), 3) 통계청, e-나라지표(kosis.kr), 2018. 11.
4), 5) 경찰청(2018)

최근 5년 간 월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10월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다음은 11월, 5월, 9월의 순서로 많이 발생하였다.

〈표 3-3-2〉 최근 5년 간 월별 교통사고 현황

(단위: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215,354	223,552	232,035	220,917	216,335
1월	16,016	15,905	16,902	17,067	16,970
2월	14,187	14,061	14,939	15,664	14,832
3월	17,465	18,420	18,616	17,946	17,047
4월	18,031	18,443	19,386	19,452	17,717
5월	19,686	20,314	20,543	19,554	18,502
6월	18,329	18,530	18,649	17,977	18,047
7월	18,441	19,649	20,278	18,955	18,158
8월	18,691	19,603	19,864	18,398	18,682
9월	17,806	19,243	20,811	17,883	19,891
10월	19,797	20,760	21,587	19,918	18,863
11월	19,396	19,872	21,170	19,234	19,377
12월	17,509	18,752	19,290	18,869	18,249

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자료(2013~2017년 통계), 2018. 12. 3, 검색

요일별 교통사고 현황은 2013년 이전까지는 토요일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금요일이었으나, 2014년 이후에는 금요일의 발생건수가 토요일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주 5일제 근무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3-3-3〉 최근 5년 간 요일별 교통사고 현황

(단위: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215,354	223,552	232,035	220,917	216,335
일	26,239	26,477	27,475	25,535	25,379
월	30,120	31,697	33,278	31,327	30,947
화	31,470	31,819	32,947	31,410	30,531
수	30,689	33,256	33,481	32,036	31,698
목	30,545	32,279	34,268	31,663	31,457
금	33,128	34,585	35,899	35,358	34,312
토	33,163	33,439	34,687	33,588	32,011

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자료(2013~2017년 통계), 2018. 12. 3, 검색

주간과 야간의 교통사고 비교에서는 주간이 야간에 비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2017년의 경우 주간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전체의 58%를 차지하였다. 주목해야 할 점은 야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주간보다 많다는 것이다. 이는 야간 교통사고의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3-4〉 최근 5년 간 주·야간 교통사고 현황

(단위: 건,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발생건수	215,354	223,552	232,035	220,917	216,335
	사망자수	5,092	4,762	4,621	4,292	4,185
	부상자수	328,711	337,497	350,400	331,720	322,829
주*	발생건수	115,069	122,272	129,049	125,808	125,569
	사망자수	2,390	2,316	2,252	2,135	2,076
	부상자수	175,282	184,065	195,113	189,143	186,946
야**	발생건수	100,285	101,280	102,986	95,109	90,766
	사망자수	2,702	2,446	2,369	2,157	2,109
	부상자수	153,429	153,432	155,287	142,577	135,883

* 주간 : 06~18시, ** 야간 : 18시~익일 06시
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자료(2013~2017년 통계), 2018. 12. 3. 검색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차 대 사람의 사고와 차량단독의 사고는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차 대 차의 사고는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차 대 사람의 사고는 전체 사고 중 21.6%를 차지하였고, 차 대 차의 사고는 74%, 차량단독 사고는 4.4%였다. 차 대 사람의 경우 ‘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차 대 차의 경우는 ‘추돌’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정면 또는 측면 충돌’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차량단독의 경우는 2016년과 2017년에 ‘전도와 전복’사고가 급증하였다.

〈표 3-3-5〉 최근 5년 간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현황

(단위: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215,354	223,552	232,035	220,917	216,335
차대사람	합계	49,130	50,315	50,980	48,489	46,728
	횡단중	18,165	17,544	21,913	26,823	25,381
	차도통행중	3,335	3,059	4,377	3,622	3,747
	길가장자리 구역통행중	3,119	2,872	4,567	3,544	3,017
	보도통행중	2,216	2,188	2,668	1,627	1,621
	기타	22,295	24,652	17,455	12,873	12,962
차대차	합계	155,256	162,181	169,471	162,009	160,065
	후진중충돌	-	-	-	-	1,982
	진행중 충돌	24,381	24,783	28,349	41,023	-
	주정차중 충돌	18,824	18,245	18,808	-	-
	정면충돌	6,330	5,840	14,488	19,498	15,112
	측면충돌	60,806	56,935	65,498	73,397	73,857
	추돌	-	-	-	-	35,560
	기타	44,915	56,378	42,328	28,091	33,554
차량단독	합계	10,964 (5.1%)	11,054	11,579	10,413	9,539
	공작물충돌	4,500	4,292	4,615	2,160	2,294
	주/정차차량 충돌	27	28	14	36	13
	도로이탈 추락	443	385	418	126	196
	도로이탈 기타	345	288	340	137	144
	기타	4,115	4,503	4,004	3,100	3,396
	전도	-	-	-	-	1,542
	전복	-	-	-	-	98
	전도전복	1,534	1,558	2,188	4,854	1,856
철길건널목	합계	4	2	5	6	3
	철길건널목	-	-	-	-	3
	차단기돌파	1	-	3	-	-
	경보기 무시	-	-	1	-	-
	직진진행	1	-	-	-	-
	기타	2	2	1	6	-

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자료(2013~2017년 통계), 2018. 12. 3. 검색

도로형태별 사고발생을 살펴보면, 단일로의 경우 2013년 이후 발생비율이 증가하였다가 2015년을 정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고, 교차로는 2013년 기준으로 2014년에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발생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7년에 발생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기타 도로유형에는 주차장, 건널목, 고가도로, 지하도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4년 이후 발생비율이 2% 후반을 차지하고 있다. 단일로의 경우 횡단보도의 사고가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나 터널, 교량, 지하차도의 경우 2016년까지는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2017년에 다시 급증하였다. 이는 항목별 입력방식의 변화(횡단보도의 사고를 장소별로 재분류)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차로의 경우 교차로 부근의 사고 발생건수는 2015년까지 증가하였다가 2016년과 2017년에 감소하였다. 이는 최근 2년간 교차로 내에서의 사고비율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3-6〉 최근 5년 간 도로형태별 교통사고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215,354	223,552	232,035	220,917	216,335
단일로	합계	112,575	117,391	122,593	116,136	105,668
	터널안	539	539	638	535	725
	횡단보도상	6,464	6,502	6,312	6,009	-
	횡단보도부근	2,152	1,978	2,123	1,744	-
	교량위	1,249	1,214	1,248	1,219	1,357
	고가도로위	542	530	456	366	587
	지하차도(도로)내	277	257	251	227	463
	기타단일로	101,352	106,371	111,565	106,036	102,536
교차로	합계	95,816	99,068	103,885	99,249	102,354
	교차로내	60,253	62,894	66,711	64,488	71,412
	교차로부근	35,563	36,174	37,174	34,761	30,942
철길건널목	합계	4	2	5	6	3
	철길건널목	4	2	5	6	3
기타/불명	합계	6,959	7,091	5,552	5,526	7,100
	기타/불명	6,959	7,091	5,552	5,526	7,100

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자료(2013~2017년 통계), 2018. 12. 3, 검색

법규위반별 사고발생비율은 안전운전불이행이 56%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신호위반으로 11%대를 차지하였다. 전반적으로 중앙선침범과 안전운전불이

행이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고, 보행자보호의무위반과 과속, 기타 위반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3-3-7〉 최근 5년 간 법규위반별 사고발생비율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중앙선 침범	5.7	5.4	5.2	4.8	4.7
신호위반	11.3	11.5	11.3	11.1	11.2
안전거리 미확보	9.3	9.3	9.4	9.4	9.3
과속	0.2	0.2	0.3	0.3	0.4
안전운전 불이행	56.4	56.5	56.3	56.3	56.1
교차로 운행방법위반	6.7	6.4	6.3	6.6	6.6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3.2	3.2	3.3	3.5	3.5
기타	7.2	7.5	7.9	8.0	8.2

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자료(2013-2017년 통계) 재편집, 2018. 12. 3, 검색

기상상황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았다. 교통사고는 특히 기상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대기 환경 및 기상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기상상황이 교통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4년 이후 맑은 날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전체 교통사고의 90.3%를 차지하였다. 반면, 흐린 날씨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3.3%만 차지하였다. 이와 함께 비와 안개 상황에서의 교통사고도 201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고, 눈이 오는 경우는 교통사고의 비율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기상상황의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흐림, 비, 안개 등 교통 환경에는 부정적인 기상 상황에서 교통사고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3-3-8〉 최근 5년 간 기상상황별 사고발생비율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215,354	223,552	232,035	220,917	216,335
맑음	86.2	85.9	86.1	87.8	90.3
흐림	4.6	4.3	4.1	3.6	3.3
비	7.5	7.8	8.6	7.4	5.1
안개	0.2	0.2	0.2	0.1	0.1
눈	0.8	0.9	0.4	0.6	0.6
기타/불명	0.7	0.9	0.6	0.5	0.6

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자료(2013-2017년 통계) 재편집

2. 교통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등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을 국토부 주관으로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12년까지 8차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교통사고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OECD국가들 중 최하위에 머물고, 연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GDP의 1.5%인 26.5조원에 이른다.

2018년 1월에 정부는 8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접근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정부추진단을 구성하여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 환경을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할 것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중이 40%로 가장 높으며, 인구 10만 명 당 보행 중 사망자의 숫자가 3.5명으로 OECD국가의 평균인 1.1명보다 3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통 환경을 보행자 우선 통행제도로 개편하고, 선진국형 속도관리체계를 조기에 확산하며, 보행사고 취약구간인 주택가와 상업지역,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 폭 9m 미만의 이면도로 개선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둘째,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특히 보행 중 사망사고의 비율이 높다. 고령자의 보행 중 사망자 수는 일반 성인보다 5.4배가 높고, 어린이 보행 중 사망자 수는 OECD 평균보다 2배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어린이와 고령자의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셋째, 운전자의 안전운행 및 책임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사고위험 및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를 감안한 화물차 차령제도를 2019년에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화물 낙하방지를 위해 적재함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고령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3년, 70세 이상 1년 주기로 자격유지검사를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2020년에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륜자의 운전면허 필기와 기능시험을 강화하고, ‘배달 오토바이’ 사업주에 대한 관리책임 부과,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규정 마련,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통행방법을 정립하였다.

넷째, 안전성 제고를 위한 차량과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국제 기준에 맞도록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신규 제작차량에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차로 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주행 중 차량 간, 도로-차량 간 교통정보를 공유하여 사고를 예방 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하여 2022년에는 전국 고속도로를 전면 스마트화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한국형 “긴급 구난 시스템(Emergency-call)”을 도입할 것이다.

다섯째, 사람우선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추진체계의 마련과 운영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성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방이 중심이 되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2019년에는 교통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나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던 정책과 기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통안전 종합계획’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첨단교통기술이 교통 환경 변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II. 교통사고의 진단과 전망

1. 2019년 교통사고 및 사망자수 감소 예상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으나, 최근에는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부상자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3-3-9〉 전체 교통사고 현황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건수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만 대당	부상자수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만 대당
2008	215,822	444	106	5,870	12.1	2.9	338,962	697	166
2009	231,990	476	111	5,838	12.0	2.8	361,875	742	174
2010	226,878	464	106	5,505	11.3	2.6	352,458	721	164
2011	221,711	453	120	5,229	10.7	2.8	341,391	697	185
2012	223,656	447	119	5,392	10.8	2.4	344,565	689	152
2013	215,354	428	93	5,092	10.1	2.2	328,711	654	142
2014	223,552	444	96	4,762	9.3	2.0	337,497	661	143
2015	232,035	455	111	4,621	9.0	2.2	350,400	687	167
2016	220,908	432	101	4,281	8.4	1.9	331,720	649	152
2017	216,335	417	96	4,185	8.1	1.9	322,829	623	143

출처 : 경찰청(2018); 통계청, e-나라지표, 2018. 12. 3. 검색

2018년도 9월말 기준 경찰통계(잠정)에 의하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59,743건으로 0.3% 감소하였다. 사망자도 2,773명으로 8.1% 감소하였으며, 부상자는 182,542명으로 23.0%가 감소하였다.

〈표 3-3-10〉 전년 대비 전체 교통사고 현황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17. 9	160,200	3,019	237,086
2018. 9	159,743	2,773	182,542
전년대비(%)	-0.3	-8.1	-23.0

출처 : 경찰청(2018), 본 통계는 잠정통계로서 경찰청의 확정통계 발표로 변경될 수 있음

2018년과 2019년의 1월~9월 기준 통계를 이용해 연말 통계를 추정하면¹²⁷⁾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15,718건, 사망자 3,844명, 부상자 248,559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3-3-11〉 2018년 전체 교통사고 추정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건수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만 대당	부상자수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만 대당
2018 (추정)	215,717.9	416.3	95.8	3,844.0	7.4	1.7	248,559.0	479.7	110.3

* 2018년 9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수는 51,817,851명(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18. 12. 3, 검색)

** 2017년말 기준 전체 자동차등록대수는 22,528,295대(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18. 12. 3, 검색)

2019년도 전체 교통사고 발생을 전망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의 교통사고 자료를 바탕으로 트렌드 분석 및 시계열 분석¹²⁸⁾을 통해 예측한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및 부상자 수를 예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3-12〉 2019년 전체 교통사고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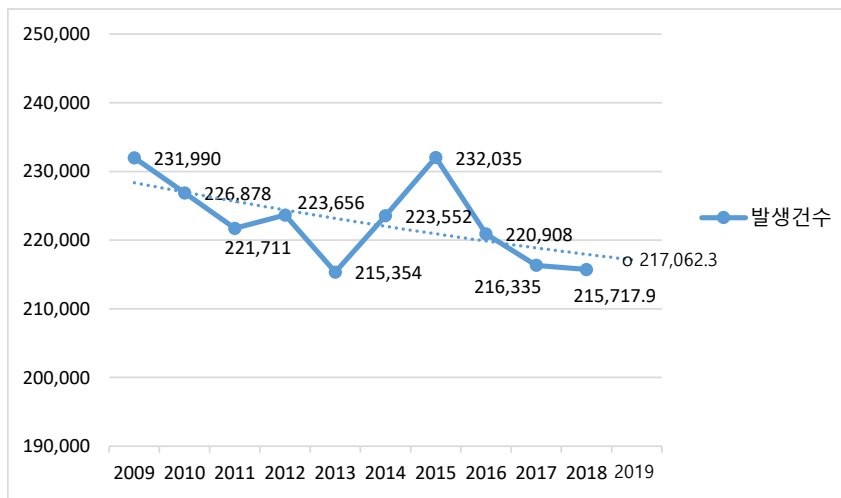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건수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만 대당	부상자수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만 대당
2019 (예측)	217,062.3	415.3	92.2	3,598.2	6.9	1.6	256,223.9	491.1	115.8

127) 2018년 예상발생건수 = $\frac{2015년\ 9월\ 까지\ 발생건수 \times 2017년\ 총\ 발생건수}{2017년\ 9월\ 까지\ 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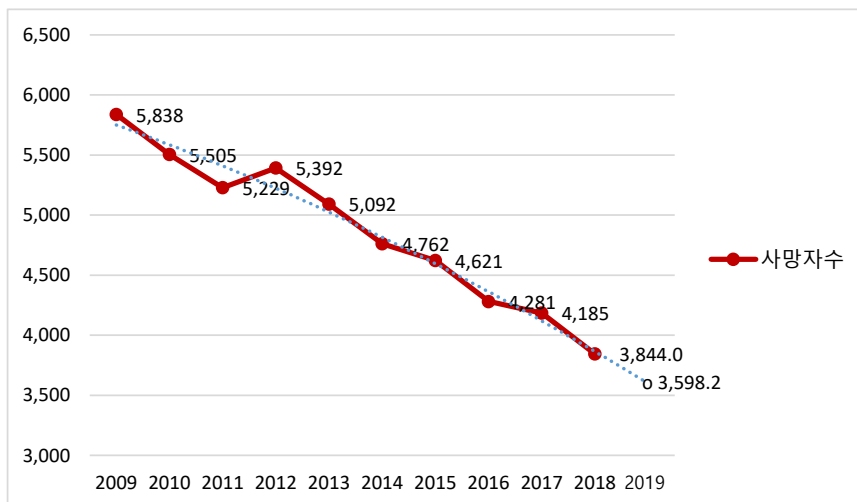
128) '엑셀 2013' 에서 추세선의 예측 기능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예측 결과를 분석해 보면 2019년에 예상되는 교통사고 전체 발생 건수가 217,062 건으로 2018년의 발생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예상 사망자수는 3,598명으로,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져 2018년 발생 수준에 비해서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상자수의 경우 2018년의 현격한 감소 추세로 인해 2019년에도 256,223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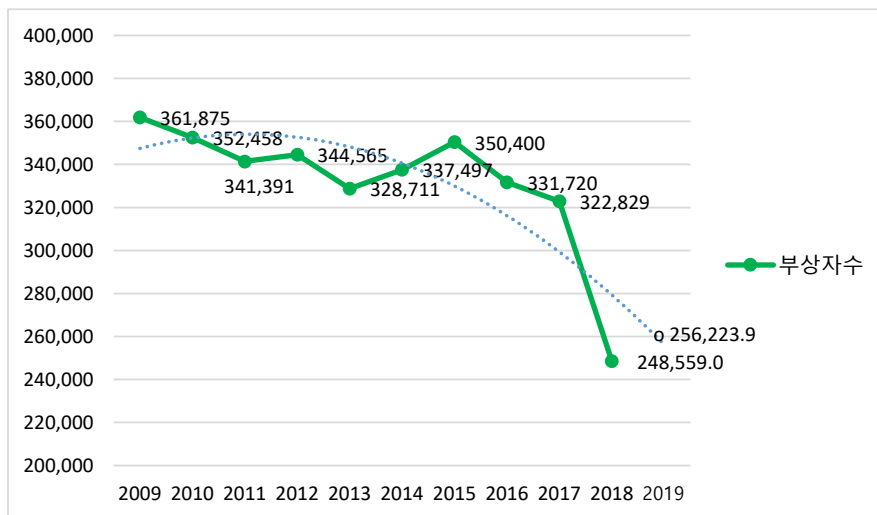
[그림 3-3-1] 2019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 예측결과



[그림 3-3-2] 2019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예측결과



[그림 3-3-3] 2019년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 수 예측결과



2. 음주교통사고는 지속적인 감소세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발생 건수는 2012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9,517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9.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10.5%, 음주운전에 의한 부상자는 전체 부상자 중 10.3%를 차지하여 점차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의 점유율은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3-13〉 음주운전 교통사고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건수	점유율(%)	명	점유율(%)	명	점유율(%)
2008	26,873	12.5	969	16.5	48,497	14.3
2009	28,207	12.2	898	15.4	50,797	14.0
2010	28,641	12.6	781	14.2	51,364	14.6
2011	28,461	12.8	733	14.0	51,135	15.0
2012	29,093	13.0	815	15.1	52,345	15.2
2013	26,589	12.3	727	14.3	47,711	14.5
2014	24,043	10.7	592	12.4	42,772	12.6
2015	24,399	10.5	583	12.6	42,880	12.2
2016	19,769	8.9	481	11.2	34,423	10.4
2017	19,517	9.0	439	10.5	33,364	10.3

출처 : 경찰청(2018)

2018년 9월 기준으로 경찰청이 잠정 집계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0%가 증가하였으나 사망자수는 22.2%, 부상자수는 5.1%가 감소하였다.

〈표 3-3-14〉 전년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9월 기준)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17. 9	13,871	270	23,429
2018. 9	14,559	210	24,634
전년대비(%)	5.0%	-22.2%	-5.1%

출처 : 경찰청(2018), 본 통계는 잠정통계로서 경찰청의 확정통계 발표 시 변경될 수 있음

2017년과 2018년의 1월~9월 통계를 이용해 2018년 연말 통계를 추정하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485건, 사망자 341명, 부상자 35,08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3-3-15〉 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추정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건수	점유율(%)	명	점유율(%)	명	점유율(%)
2018 (추정)	20,485.0	9.5	341.4	8.9	35,080.0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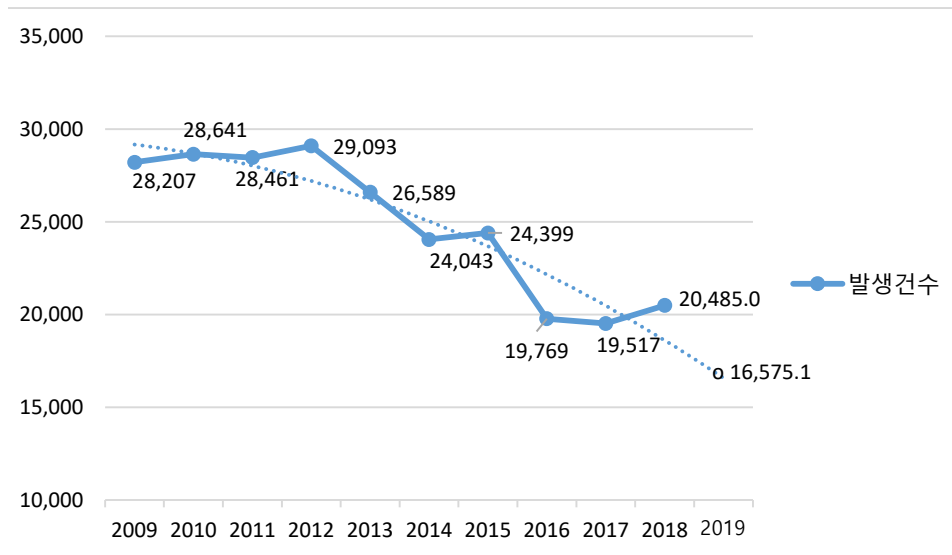
2019년도에 발생할 음주교통사고를 전망하기 위해, 과거의 사고데이터 트렌드와 시계열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음주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를 예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3-16〉 2019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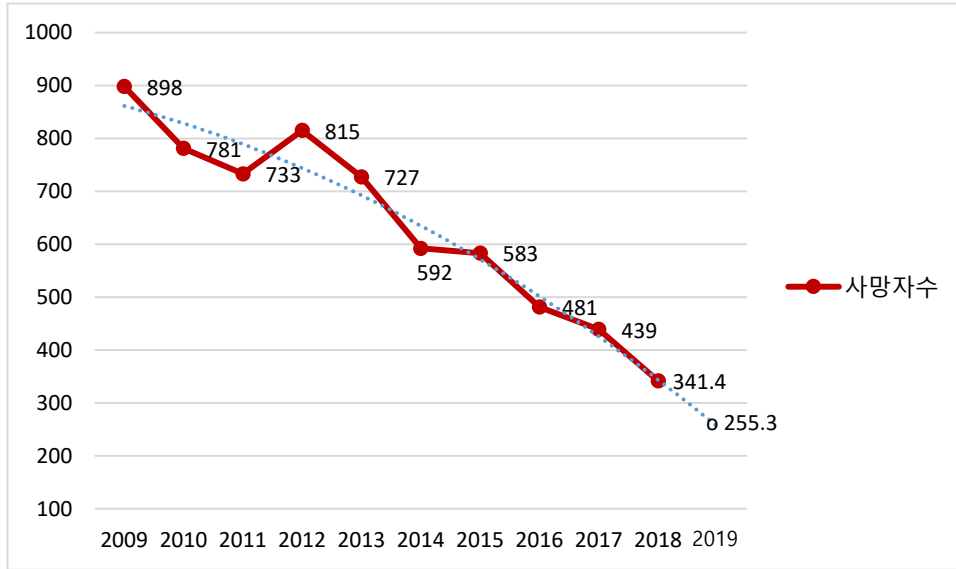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건수	점유율(%)	명	점유율(%)	명	점유율(%)
2019 (예측)	16,575.1	7.6	255.3	7.1	27,338.0	10.7

예측 결과를 분석해 보면 2019년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발생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모두 감소하는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8년 대비 감소한 약 16,575건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255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부상자 수 역시 감소하여 27,338명 선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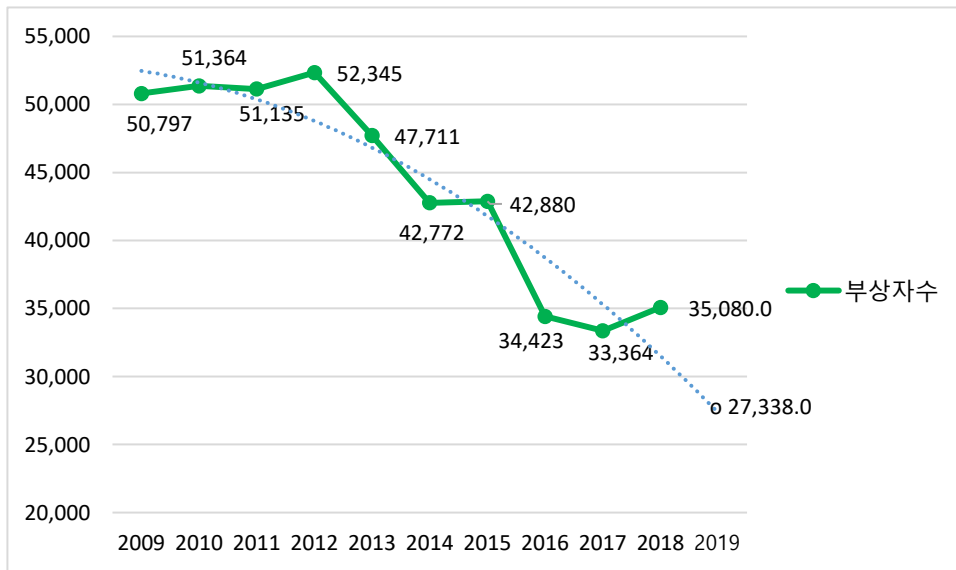
[그림 3-3-4] 2019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 예측 결과



[그림 3-3-5] 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예측 결과



[그림 3-3-6] 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상자 수 예측 결과



최근 교통경찰의 단속활동 및 처벌기준 강화, 잇단 대형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음

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¹²⁹⁾ 등의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경찰의 노력과 국민인식 변화 및 자동차 안전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9년에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음주 문화가 점차 저알콜, 저용량 주류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교통안전 의식도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음주교통사고의 폐해는 앞으로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 고령층 교통사고는 급격한 증가 추세

최근 10년 간 65세 이상 고령층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고령층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던 점유율은 2008년 29.6%에서 2017년에는 42.2%로 약 12.6%p 상승하였다(경찰통계 기준). 2017년 말 기준으로 경찰청 집계 결과 발생건수 37,555건, 사망자 1,767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보면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모두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층 교통사고는 전체교통사고의 17.4%를 차지하지만, 사망자는 40%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고령자 교통사고는 일반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2.6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3-17〉 고령층(65세 이상) 교통사고 현황(경찰 기준)

(단위 : 명, %)

연도	발생건수	점유율(%)	사망자수	점유율(%)	부상자수	점유율(%)
2008	23,012	10.7	1,735	29.6	24,168	7.1
2009	25,983	11.2	1,826	31.3	27,409	7.6
2010	25,810	11.4	1,752	31.8	27,394	7.8
2011	26,483	12.0	1,724	33.0	27,999	8.2
2012	28,185	12.6	1,864	34.6	29,699	8.6
2013	30,283	14.0	1,833	35.9	32,178	9.8
2014	33,170	14.8	1,815	37.8	35,352	10.5
2015	36,053	15.7	1,814	39.1	38,582	11.2
2016	35,761	16.2	1,732	40.5	38,413	11.6
2017	37,555	17.4	1,767	42.2	40,579	12.6

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자료(2017년 통계), 2018. 12. 3, 검색

129) “ ‘음주운전 치사’ 최고 무기징역... ‘윤창호법’ 국회통과(종합), 연합뉴스, 2018. 1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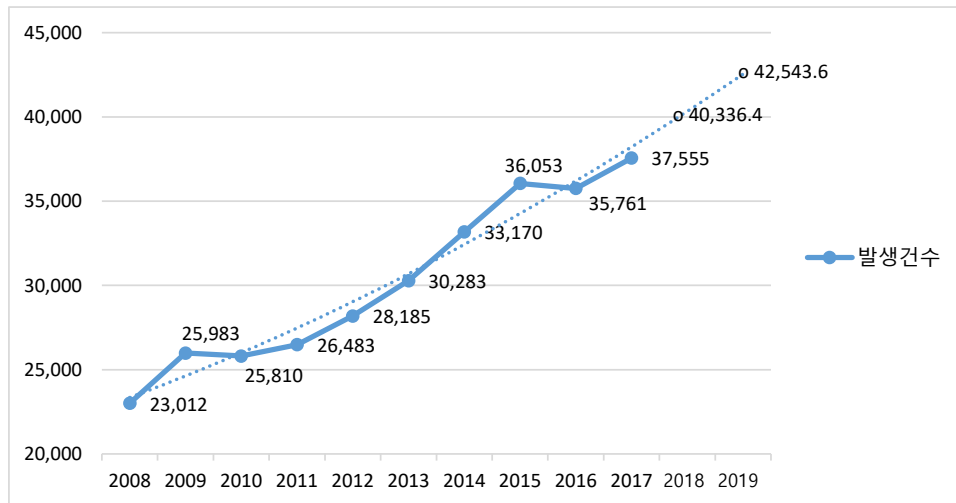
2017년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과 데이터 트렌드 분석으로 2018년과 2019년의 발생 수준을 예측해 볼 때, 2018년에는 발생건수 4,336건, 사망자수 1,722명, 부상자수 43,733명 선으로 예측되었다. 2019년에는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각각 42,544명, 46,33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망자수는 1,696명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체적인 사망자의 감소로 인해서 점유율은 여전히 증가할 수 있다.

〈표 3-3-18〉 고령층(65세 이상) 교통사고 추정 및 예측 결과

연도	발생건수	점유율(%)	사망자수	점유율(%)	부상자수	점유율(%)
2018 (추정)	40,336.4	18.7	1,722.0	44.8	43,732.8	17.6
2019 (예측)	42,543.6	19.6	1,684.8	46.8	46,336.5	18.1

고령층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약 2만 건, 2013년 3만 건을 돌파하여, 2018년 말까지 4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에도 이러한 증가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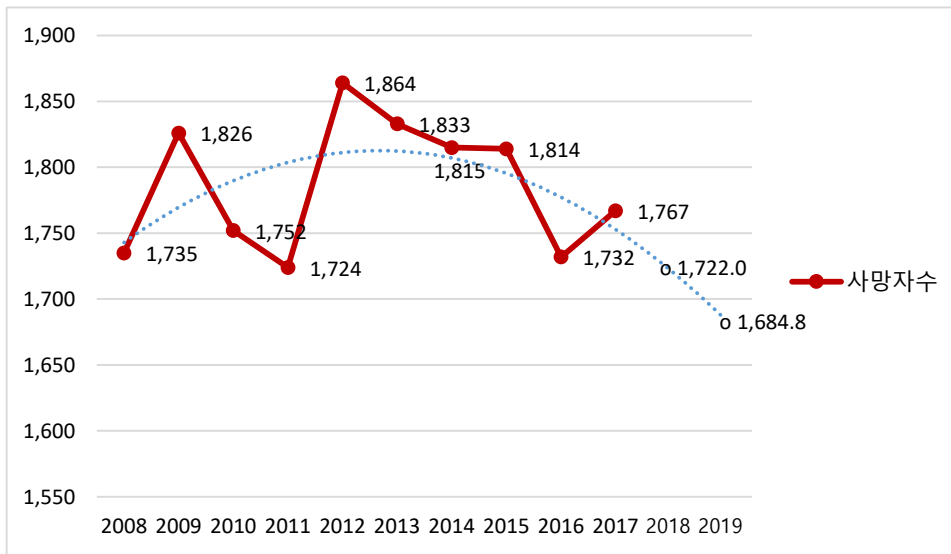
[그림 3-3-7] 2018, 2019년 고령층 교통사고 발생 건수 예측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고령층 사망자 수는 2006년에서 2012년까지 반복적인 주기적 변동 속에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2013년부터는 안정적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고령층 사망자 수가 감소

하지 않는 이유는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생산가능연령이 증가하여 고령층의 교통 사고 발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경찰의 첨단 교통장비 및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¹³⁰⁾ 등 차량안전기술의 발달로 급격한 고령화 속도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9년에도 고령층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미미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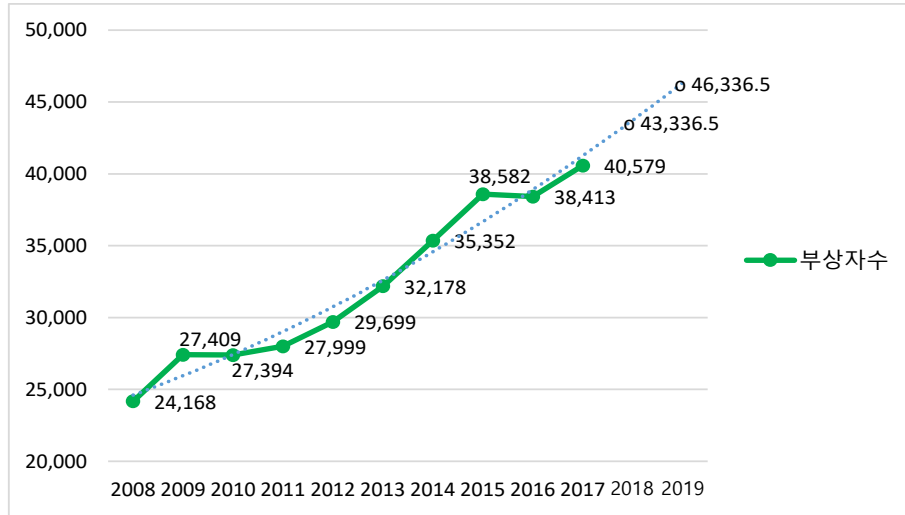
[그림 3-3-8] 2018, 2019년 고령층 교통사고 사망자 수 예측 결과



그리고 고령층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발생건수의 증가에 따라 2019년에도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30)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이하 ADAS) :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일부를 차량 스스로 인지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차량의 기계장치를 제어하는 기술이다. ADAS는 충돌위험시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밟지 않아도 스스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자동긴급제동 시스템(AEB: Autonomous Emergency Breaking)', 차선이탈 시 주행방향을 조절해 차선을 유지하는 '주행조향보조시스템(LKAS: Lane Keep Assist System)', 사전에 정해 놓은 속도로 달리면서도 앞차와 간격을 알아서 유지하는 '어드밴스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CC: Advanced Cruise Control)', 사각지대 충돌 위험을 감지해 안전한 차로변경을 돕는 '후측방 충돌회피지원시스템(ABSD: Active Blind Spot Detection)', 차량 주변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시스템(AVM: Around View Monitoring)' 등을 포함한다.

[그림 3-3-9] 2018-2019년 고령층 교통사고 부상자 수 예측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었고, 2017년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고령층¹³¹⁾의 사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고령층 교통사고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부상자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¹³²⁾ 안전벨트 착용률 증가, 에어백 장착차량 증가 등 사망사고 발생요인은 조금씩 줄고 있지만, 사고발생 증가에 따라 부상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131)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132) 고령화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 고령사회는 14%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I. 집회시위 전망

1. 평화적 집회문화 정착 전망

2018년은 각 단체별로 다양한 집회시위가 개최되었으나 법과 관례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집회시위가 관리되었으며, 실제로 평화적인 집회문화가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아래<표 3-4-1>은 최근 5년간 집회시위 발생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2014년도 4만 5,319건에서 2015년도 4만 7,842건으로 5.6% 증가한 이후에 2016년에는 4만 5,836건으로 4.2% 감소하였고, 2018년 10월말까지는 5만 5,577건으로 2017년 같은 기간 대비 2만 846건 증가하여 60.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7년에 비해 집회시위가 증가하였음에도 평화적인 집회시위가 개최되어 경력을 배치한 집회 건수는 2017년 9,037건에서 2018년 7,833건으로 13.3% 감소하였다.

<표 3-4-1> 집회시위 발생 현황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7. 10	2018. 10
집회시위(건)	45,319	47,842	45,836	43,161	34,731	55,577

출처 : 경찰청(2018)

한편 2018년 하반기에 노동계 등 이슈가 변수로 부상하고 있으나, 경찰의 안정적인 집회시위 관리로 2019년에도 전반적으로 평화적인 집회 문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표 3-4-2>는 최근 5년간 소음 측정 조치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약 4.8배 증가하여 2017년에는 1만 292건으로 최고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집회시위 양상의 변화와 연관성이 높는데, 2017년 촛불집회 이후에 집회시위가 증가했음에도 소음 측정 조치는 감소세를 보였다.

2017년 10월까지 1만 1,989건에서 2018년 10월까지 7,576건으로 36.8% 감소하였는데 유지명령은 같은 기간 32.4% 감소하였고, 중지명령은 83.1%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2019년에도 소음 측정 분야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4-2〉 최근 5년간 소음 측정 조치 현황

구분	소계	유지명령	중지명령	일시보관
2014	1,754	1,425	320	9
2015	4,936	3,755	566	75
2016	7,405	6,360	960	85
2017	10,292	8,920	1,352	20
2017. 10	11,989	7,865	1,234	20
2018. 10	7,576	5,316	2,260	0

출처 : 경찰청(2018)

경찰은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경력을 필요최소한으로 배치하고, 교통경찰과 폴리스라인, 방송차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보장하면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 및 대응 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17년 촛불집회를 통해서 과거 집회 시위의 양상과는 다르게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된 결과이다. 불법·폭력적 집회의 경우 다수 구성원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공동체 내 갈등을 증대시키지만, 평화적 집회시위는 국가의 중대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집회문화가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작년 촛불집회에서 경찰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며,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새로운 경찰상을 정립하면서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집회시위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였다.¹³³⁾

경찰은 ‘대화와 소통’을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우며, 스웨덴 대화경찰을 모티브로 지난 10월 5일부터 ‘한국형 대화경찰관제’를 도입하였다.

133) 제 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중에서.

대화경찰관제의 도입 및 시행을 통해 집회·시위의 신고 접수 단계부터 집회·시위의 주최 측과 충분한 교류와 대화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찰 간에 신뢰를 형성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여,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¹³⁴⁾

또한 정보와 경비 기능이 협력하여 경찰과 시위대간 중재를 강화하고,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인권보호관’을 별도로 운영하여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2018년에는 경찰이 집회시위를 관리·통제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기초를 토대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집회 시위문화가 정착되었다.

2. 불법·폭력집회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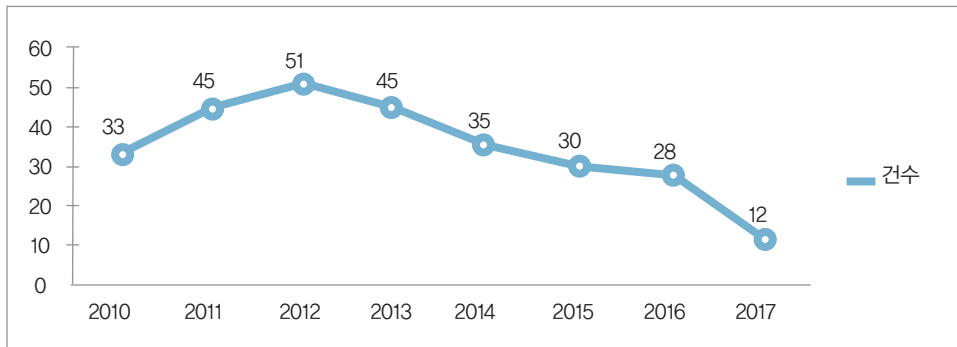
사회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각종 단체들의 표현도 확대되면서 집회시위 건수가 감소하면서 불법·폭력집회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불법·폭력집회는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법처리된다는 국민적 인식이 정착되고 있다.

[그림 3-4-1]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불법폭력집회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0년 이후로 최근까지 8년간 30~50여건 사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이후 올해까지 불법폭력집회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에는 최초로 30건 미만의 불법폭력집회가 발생하였다.

134) “집회 충돌 막는 ‘대화경찰관’ 도입…참가자-경찰 소통창구”, 연합뉴스, 2018. 8. 1.

[그림 3-4-1] 불법폭력집회 발생건수



출처 : 경찰청(2018)

경찰청은 화염병 시위, 투석, 쇠파이프·각목, 도로·철로점거, 시설 기습시위 등을 불법·폭력집회의 주요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폭력집회’라고 볼 수 있는 화염병, 투석, 쇠파이프, 각목 등을 이용한 시위는 2017년에 쇠파이프, 각목을 이용한 1건의 시위가 발생했을 뿐이다. 같은 기간 전체 집회 개최 건수가 4만 3,161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극소수의 집회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불법·폭력시위 건수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도로, 철로점거이다. 2017년의 경우 전체 12건 중 33%에 해당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이러한 유형의 불법, 폭력시위 건수는 감소하여 2018년 10월까지 7건이 발생하였는데, 쇠파이프, 각목 사용은 없고, 도로점거 5건, 시설 기습시위 2건이었다.

경찰청은 2017년 경찰위원회가 ‘도로 점거의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적용하지 않도록’ 권고한 이후에 도로점거는 처벌 보다는 주최단체가 스스로 해산토록 유도하였다.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 개최는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회 관리 및 보호를 하고 있어 2019년에도 불법·폭력집회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4-3〉 불법폭력시위 유형별 발생 현황

구 분	계	화염병 시 위	투 석	쇠파이프 각 목	도 로 철로점거	시 설 기습시위	기타
2013	45	-	1	-	21	23	-
2014	35	-	-	1	14	20	-
2015	30	-	4	6	12	8	-
2016	28	-	3	-	21	4	-
2017	12	-	-	1	4	7	-
2017. 10	7	-	-	1	2	4	-
2018. 10	7	-	-	-	5	2	-
전년대비(%)	0	-	-	-100%	-150%	-50%	-

출처 : 경찰청(2018)

3. 기본권 친화적 집시법 적용에 대한 요구 증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찰은 인권을 우선으로 하는 평화적인 집회시위 관리에 경찰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집회 주최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성소수자들의 집회·시위에서 주최 측과 반대 측간의 갈등이 촉발되기도 하였고, 적폐청산·경제개혁·차별철폐 등 민감한 사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행 집시법 조항 중에 일부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들도 대두되고 있는 만큼 경찰에서는 선제적으로 집시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소음 분야로 현재 각종 집회시위에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의 소음 측정방식이 10분 동안의 평균 소음 측정값으로 계산하다보니 일시점에 최대 소음을 송출하였을 경우 처벌할 수 없고, 악의적인 형태로 다른 집회를 방해하기도 하여 집회시위 현장에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집회 소음 측정방식 및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다각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적극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집회 신고는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신고만 하여 오히려 정당한 집회시위를 방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아래 <표 3-4-4>는 최근 5년간 집회 시위 신고 및 미개최 현황으로 매년 96.0%~97.0%의 미개최 집회가 신고 되어 왔고, 2018년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표 3-4-4> 최근 5년간 집회 시위 신고 및 미개최 현황

구 분	신고일수	개최일수	미개최율
2014	1,363,320	44,664	97.0%
2015	1,403,916	47,654	97.0%
2016	1,085,976	45,755	96.0%
2017	1,101,413	43,017	96.0%
2017. 10	906,939	34,588	96.2%
2018. 10	1,235,145	55,550	95.5%

출처 : 경찰청(2018)

집회신고 후 미개최시에는 철회신고를 제출하도록 집시법을 개정하여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없었던 만큼 정당한 집회시위의 권리를 박탈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처리를 통해 실질적인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19년에는 집회·시위 관련 경찰력 행사에 대한 외부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에 도입된 '대화경찰관제'가 집회시위 현장에서 정착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주최 측과 반대 측과의 충돌로 인한 부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집회시위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경찰에서는 집회·시위자의 집회의 자유를 보호해줌과 동시에 일반 국민들의 건강권과 평온권 및 수면권 등의 보호를 통한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실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인권보호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 친화적인 집시법 적용은 성숙한 민주사회로의 도약이 되어 촛불집회에서 보여주었던 국민적 염원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다.

Ⅱ. 테러 위협 전망

1. 국제 테러 정세

21세기에 들어서 많은 국가들이 세계화 및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물질적인 피해는 물론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테러 사건에 노출되어 있다.

2018년 7월에 파키스탄에서 총선을 앞두고 자폭테러가 발생¹³⁵⁾하여 128명이 사망하고, 150여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여 테러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국제사회는 테러에 대한 공동안전 전선의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테러 대응차원에서 안보외교를 실시하고 이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테러대책과 전략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다.

테러는 시대적·정치적·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테러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테러 피해에 대한 정확한 집계를 내리는데 있어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메릴랜드 대학(University of Maryland)의 테러리즘 연구를 위한 국제 컨소시엄(START; National Consortium for the study of Terrorism and Responses to Terrorism)¹³⁶⁾이 제시한 ‘GTD(Global Terrorism Database)’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는 98개국, 2015년도에는 100개국, 2016년도에는 108개국에서 테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¹³⁷⁾

이는 START팀에서 제시한 ‘GTD World Map’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GTD World Map’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테러사건의 분포와 피해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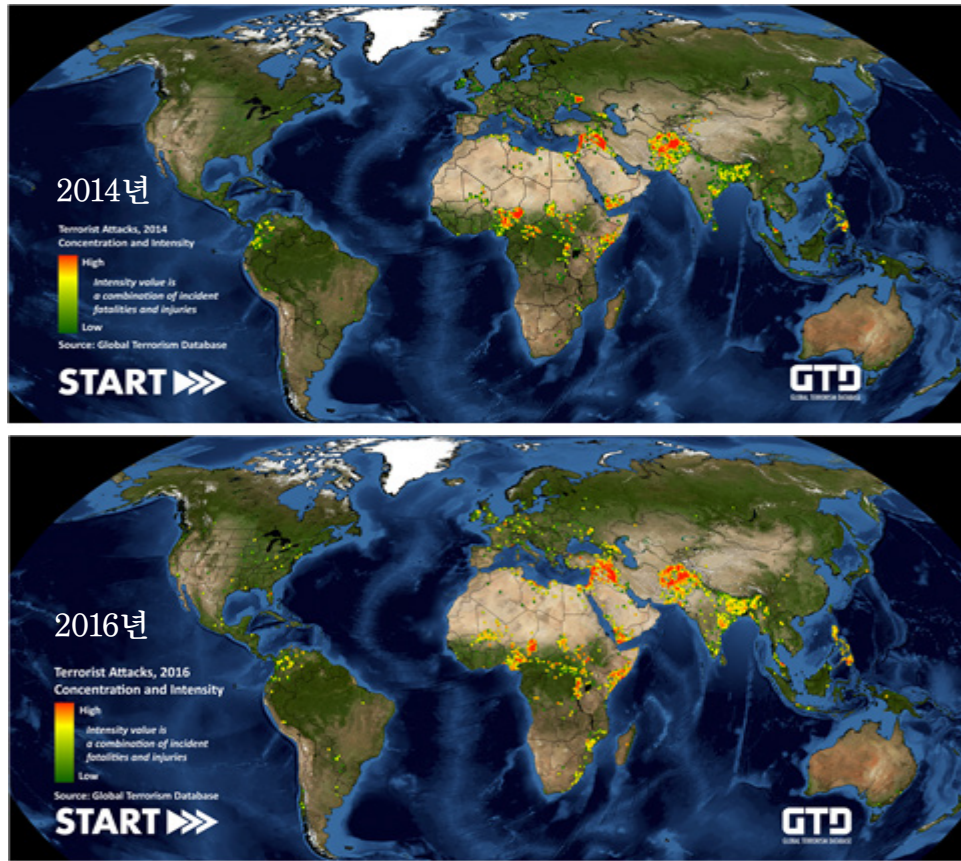
아래 [그림 3-4-2]에 의하면 2014년 대비 2016년도에 표시된 테러발생 국가들의 수와 피해강도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5) “파키스탄, 총선 앞두고 최악 폭탄테러...130여 명 사망”, TV조선뉴스, 2018. 7. 15.

136)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부터 지원을 받아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관.

137) Global Terrorism Database(<https://www.start.umd.edu/gtd>).

[그림 3-4-2] 2014 & 2016 GTD World Map



출처 : GTD(Global Terrorism Database), 2016 GTD World Map.

1) IS(Islamic State)¹³⁸⁾의 영향력 증가

START팀이 발간한 「Global Terrorism in 2017」 보고서와 이전에 발간된 「Overview : Terrorism in 2016」에 의하면 IS와 관련된 테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IS와 관련된 테러가 발생한 국가는 2013년 기준 6개국에서 2016년 기준 42개국으로 증가되었으며, 특히 IS로부터 영향을 받아 개인이 저지른 테러사건은 2015년 7개

138)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는 이라크와 레반트에 이슬람국가를 건설하자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며, ISIL과 함께 일컬어지던 이라크-알샤라 이슬람 국가(ISIS : Islamic State of Itaq and al-Sham)라는 명칭도 있다. IS는 2014년에 국가 수립을 선언하며 IS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서방 국가들은 이들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ISIS 혹은 ISIL이라는 이름을 고수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2018. 12. 5. 검색).

국 14건에서 2016년 16개국 3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IS에 영향을 받아 개인이 저지른 테러공격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들의 수가 2015년 35명에서 2016년 17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발생한 테러사건을 분석한 결과 IS에 의해 사망한 사람의 수와 테러사건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IS가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IS는 직·간접적으로 잠재적인 테러 공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며, 더 이상 조직적인 활동을 추구하지 않고 ‘외로운 늑대’로 변화함에 따라 테러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접근하려는 방식이 용이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통해 IS라는 조직의 활동범위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테러가 발생했을 때 미치는 인적 및 물적 피해가 기존보다 증가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2) 테러 양상의 변화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제 테러 발생건수가 2013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아래 제시한 <표 3-4-5>의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발생한 국제 테러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4,096건에서 2017년 1,962건으로 절반 가까이 발생건수가 줄어 든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테러 발생 건수에 비해 테러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수의 경우 2013년 기준 1만 1,889명에서 2017년 1만 14명으로 1,87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5> 국제 테러 발생 현황

구 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2013	4,096	11,889
2014	3,736	15,909
2015	2,255	17,329
2016	1,814	9,821
2017	1,962	10,014
2018. 9	1,209	4,586

출처 :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이러한 차이는 2013년도에 발생한 테러사건들이 평균적으로 약 2.9명의 사망자를 내는 것에 비해 2017년도에 발생한 테러사건들의 경우 약 5.1명의 사망자로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의 테러사건에 비해 오늘 날의 테러사건이 많은 사상자를 만드는 유형으로 발전되었고, 테러사건 발생 건수 당 피해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엄격한 의미에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의 IS 소탕전투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중동에서의 영토를 잃은 세력들이 전 세계 무슬림의 60%이상이 거주하는 아태지역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예상되고 있는 점은 국제 안보정세에 새로운 불씨를 만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IS에서도 테러기법과 수단의 진화로 인한 IS의 이념과 추종자들의 전 세계로의 확산, 즉 테러의 노마드화(Nomad化)를 통한 범세계적 전이 위험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IS의 동남아 확산이 현실화됨에 따라 동남아지역의 고민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9년에도 전 세계는 테러리즘과 전선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테러의 형태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인 IS연계조직과 알카에다, 알샤바브 등이 병원과 학교, 지하철, 나이트클럽, 극장 등 이른바 ‘소프트 타겟(soft target)’을 겨냥한 무차별 테러를 벌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2018년 8월 4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국가방위군 창설 81주년 행사에 드론(drone) 2대가 대통령을 겨냥한 테러를 감행하였으나 1대는 격추되었고, 1대는 인근 건물에 충돌한 뒤 폭발했다. 당시 드론에는 1kg의 폭발물이 탑재되어 있었으며, 테러 용의자 6명은 이미 군 기지 공격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들로, 군인 7명 중 3명이 중상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2017년 8월 14일에 영국 런던 의회의사당 인근에서는 20대 남성이 차량을 몰고 보행자를 향해 돌진해 3명이 부상당하였는데, 이 남성은 의원들과 경찰관들을 살해하려는 의도로 공격했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2017년에도 5건의 테러가 발생해 시민들에게 큰 위협을 가하였는데 특히 2017년 3월 웨스트민스터 다리에서 차량돌진테러로 4명이 사망하였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35건의 테러 중에서 차량테러는 13건 발생하여 37.1%로, 유럽에서 발생이 많았으며, 주로 14시~18시, 18시~22시, 시내 중심가에 군중이 많은 지역의 보도로 돌진하거나 경찰관을 공격하는 형태¹³⁹⁾로 발생하였다.

네덜란드에서도 2018년 8월말 암스테르담 중앙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한 흉기테러에 이어, 9월 27일에 ‘암스테르담 프라이드’라는 성(性)소수자 축제에서 차량폭탄테러를 모의했다가 7명이 체포되었다. ‘테러 안전국’으로 인식되어 온 네덜란드에서 이처럼 잇단 테러가 발생하자 대규모 불시 실전 훈련을 실시¹⁴⁰⁾하면서 테러 공격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17년에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군사 퍼레이드에서 암살을 계획한 23세 남성을 체포한데 이어, 2018년 11월 6일에도 테러를 모의한 극우 성향의 6명(남성 5명, 여성 1명)을 체포하였다. 이들은 극우주의자들로 자신을 무장 세력의 일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첩보를 입수해 사전 검거하였다.

2. 국내 테러 전망

1) 국내 테러 일반

2018년 국내에서는 테러단체의 공격이나 구체적인 테러첩보는 없었다. 그러나 국내 체류외국인들이 IS등 테러단체를 추종하거나 테러자금 지원 등의 혐의로 적발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17년까지 유사한 혐의로 적발된 인원이 약 70명을 넘어섰다.

2018년에는 처음으로 2016년도에 제정된 ‘테러방지법’을 위반한 시리아인 A씨(33)를 구속하였는데, 경기도 일대의 폐차장에서 일을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하였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2018년 상반기에도 외국인 테러혐의자 6명을 추방하였다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발표한 만큼 테러 위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9) 강용길, 셉테드를 활용한 차량테러 예방, 2018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2018, 46쪽.

140) 잇단 흉기 테러 위협 겪은 네덜란드, 대규모 대테러훈련 실시, 연합뉴스, 2018. 11. 22.

또한 아시아 출신의 FTF(Foreign Terrorist Fighter)¹⁴¹⁾가 노동자·관광객·난민 등으로 국내에 위장 잠입하거나, 국내 이슬람 커뮤니티 내 IS 추종세력에 의한 테러 발생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이슬람권 외국인(20만명)이 인접 일본(9만 여명)에 비해 2배나 많은데다, 최근 테러단체 연계 혐의로 적발되는 국내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경찰청은 경기북부경찰특공대를 2017년도에 신설한 이후에 대테러활동 보장에 주력하고 있다. 불법무기를 이용한 테러 및 강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무기 신고포상금을 상향하였고, 집중단속과 자진신고를 병행하여 예방하고 있다.

2018년에 사이버테러 전담조직을 10개 지경찰방청에 신설하였고, 사이버테러 모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 테러취약시설 지도와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화생방테러 전담인력을 확보¹⁴²⁾하여 전문성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서 유사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2) 세계 평화지수 소폭 하락, 테러 위험 낮은 수준 전망

[그림 3-4-3]은 호주 경제평화연구소(IEP)가 「2018 Global Peace Index 보고서」에서 각국의 평화지수¹⁴³⁾를 산정하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평화롭지 않은 상위 10개 국가는 시리아(3.6점), 아프가니스탄(3.585점), 남수단(3.508점), 이라크(3.425점), 소말리아(3.367점), 예멘(3.305점), 리비아(3.262점), 콩고(3.251점), 중앙아프리카공화국(3.236점), 러시아(3.16점)이다.

우리나라의 점수는 1.832점으로 세계 49위로, 2017년도 47위에서 2계단 하락하였는데,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 등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¹⁴⁴⁾

지도상에 붉은색이 평화롭지 않은 국가이며, 녹색은 평화로운 국가를 의미하며, 아이슬란드가 세계 평화지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뉴질랜드 순이다.

141)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ISIS가 전 세계 젊은이를 테러리스트로 모집하는 데서 생겨난 개념으로, 2014년에 채택된 유엔안보리에서 'FTF'를 테러를 자행·계획·준비·참여할 목적으로 자신의 국적국 외에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개인으로 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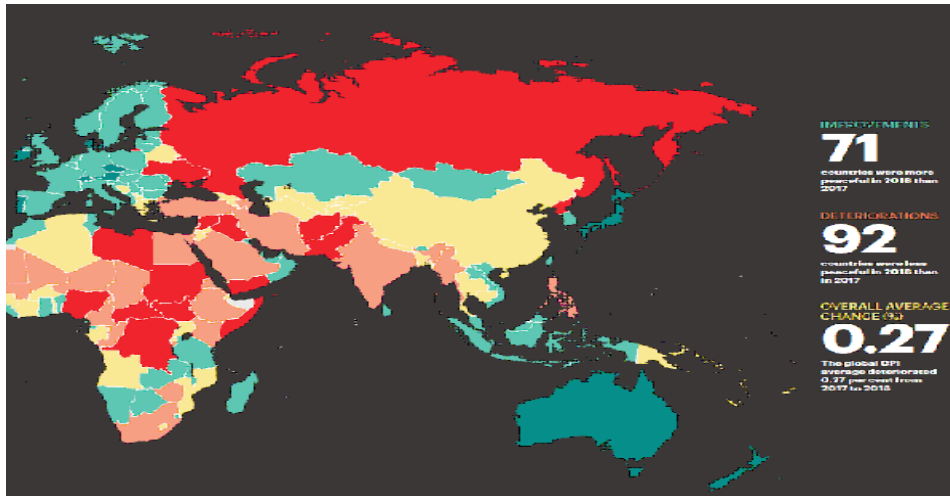
142) 경찰청은 화생방분야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23명을 4월과 10월에 선발하였고, 경찰견 위생관리를 위해 추가로 인력을 선발하였다.

143) 세계 163개국 대상 각국 내부와 외부에 관련된 23개의 지표를 조사(테러, 전쟁, 군인사망, 무기구입 자금 등과 폭력범죄의 수준 등)한 자료이다.

144)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검색일자 2018. 11. 28, 검색).

[그림 3-4-3]의 그림 오른편에 표기된 수치는 총 163개국 중에서 71개 국가는 평화 지수가 향상되었고, 92개 국가는 하락되었는데, 이는 2017년보다 0.27% 더 악화된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4-3] 2018년 세계 평화지수



출처 : 경제평화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2018 Global Peace Index

3) 국제 테러분자 입국 대비 필요

국제 테러분자의 입국 금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만 3,525명에서 3년 만에 3만 8,223명으로 2만 4,698명(183.0%)이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입국 금지 사범이 40.0% 증가한 것에 비하면 4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국제테러 분자들의 대한민국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3-4-6> 외국인 입국금지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출입국 사범	형사범	국제테러 분자	마약사범	관세사범	전염병 환자	기타
2015	140,952	99,667	7,662	13,525	2,401	83	91	17,523
2016	146,791	89,496	8,433	19,603	1,790	89	95	26,285
2017	173,165	94,768	8,831	13,023	3,241	102	136	35,061
2018. 7	196,699	105,115	9,000	38,223	3,543	107	162	39,549
합계 (비율)	656,607 (100%)	389,046 (59.3%)	33,926 (5.2%)	102,377 (16.0%)	11,975 (1.8%)	381 (0.1%)	484 (0.1%)	118,418 (18.0%)

출처 : 국회 법사위 이은재 의원 공개 자료

실제 지난 3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 항공사를 통해 국내로 입국하려던 IS가담 전투요원이 탑승 거부되는 등 테러리스트 등의 인터폴 수배자 14명의 국내 입국이 사전 차단되었다.¹⁴⁵⁾

이러한 시기에 항공보안 관련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 주관으로 매년 항공사 등에 불시평가를 실시하는데, 모의폭발물과 관련된 대처가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3년 연속 모의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대한항공은 폭발물을 발견했으나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⁴⁶⁾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한류의 세계화, 해외여행 증가 등 국제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외국의 테러분자들이 유입될 경우 테러방지법 첫 구속 사례처럼 IS를 외국인들에게 홍보할 수도 있고, 자칫 국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우리나라는 테러 위협 수준은 낮으나 자생적 테러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의 경우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대규모 테러공격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으며, 테러위험지수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테러범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스포츠 행사 및 국제 행사는 물론 2019년도 APEC 개최 등이 예정된 만큼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테러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때에 한하여 테러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대상 시설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및 테러 취약요소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해 왔고, 대테러 안전대책을 수립하면서 드론테러 및 차량돌진테러 등 신종테러 대응책도 함께 마련하였다. 특히 경찰청은 드론테러를 대비하여 전파차단기 등 최신장비를 마련하고 있다.

향후 국가적으로 테러 예방 차원의 정보 수집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며 BIG DATA를 치안에 접목시켜 해외자료까지 분석하여 테러 위협을 신속하게 제거하여 '테러 청정국'으로 평온한 국민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145) "테러리스트 입국금지 대상 4년새 3배 '깡충' ... 올해 벌써 4만명", news 1, 2018. 9. 30.

146) "국내 항공보안 '구멍' ...테러 대응 미숙", 국토경제신문, 2018. 10. 18.

4) 우리국민 주요 피해 사례

2018년 3월 2일 10시경 부르키나파소 수도 와가두구에서 프랑스 대사관과 문화원, 합참본부를 겨냥한 연쇄 총격 및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인근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한인 1명이 폭발 여파로 사무실 유리창이 파손되면서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례도 있다.

2018년 3월 8일 2시경 말리 몬티쑈 소재 해전산업의 댐건설 현장 사무소에서 방화 공격이 발생하여 숙소 1개동 및 발전기 2대가 소실되고, 크레인 등 중장비가 파손되었으나 현장 소장 등은 당시 인근 제넨시의 숙소에서 체류하고 있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성장, 문화계를 통한 한류의 확산 등으로 해외로 진출이 더욱 증대될 경우 국민들의 피해 사례는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개인별로 신변 보호는 물론 해당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입수하여 사전에 테러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차원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5) '외로운 늑대(Lone Wolves)¹⁴⁷⁾형' 테러 위협 상존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주의적 특성이 강한 유럽 혹은 미국과는 달리 테러가 발생할 확률은 아직까지 높지 않지만 내부에서 자생(Home-grown)하여 발생하는 테러의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동체 내에서 경제적·사회적 목표를 이룰 수단이 없는 계층에서 외로운 늑대가 나타날 수 있다. 즉, 범죄학에서의 긴장이론(Strain Theory)¹⁴⁸⁾을 설명하고 있듯 사회극단화 현상이 차별받는 집단의 분노 및 긴장을 유발시키고, 이러한 긴장이 '외로운 늑대형' 테러로 이어질 수 있다.

자생적인 테러 행위자의 경우 평소 그들의 성향이나 행적이 정보기관에 포착되지 않고 특별한 주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식별·감시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이들이 테러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취약한 상태의 객체인 병원, 학교, 스포츠

147) '외로운 늑대'란 전문 테러 단체 조직원이 아닌 자생적으로 테러를 감행하는 이들을 이르는 말로, 특정 조직이나 이념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개인적 반감을 이유로 스스로 행동에 나선다는 것이 특징이다.

148) Robert Merton에 의하면 문화적으로 규정된 목표와 이를 성취하는 합법적 수단 사이의 불일치가 아노미 상태를 초래하고, 불일치로 인한 좌절(긴장)을 경험한 사람들이 범죄에 의존한다고 본다.

경기장, 영화관, 식당, 카페 등과 같이 비무장 민간인들이 다수 모여 있는 장소를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환경 속에서 미국에서는 이미 2002년 테러위험보험법이 제정되어 2020년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금 일부를 보전해 주어 2017년 미국 회사의 62.0%가 재산보험과 함께 테러 위험 보험을 구매하였다.¹⁴⁹⁾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부 보험사가 테러 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로, 향후 국내 테러의 발생과 고객의 수요에 따라서 테러 보험 상품의 판매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0년간 OECD 국가에서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우리나라에서 55세 남성에 의해 발생한 승례문 화재 사건을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로 간주하고 있고¹⁵⁰⁾, 한국 역시 이러한 테러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7년 6월 발생한 연세대학교 테러모방 범주는 논문지도에 불만이 있었던 대학원생(25세)이 폭탄테러 뉴스를 보고 텀블러 용기에 뇌관과 작은 나사못을 넣은 사제 폭발물을 제작하여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¹⁵¹⁾ 이 사례는 SNS의 확대와 유튜브를 통해 습득한 각종 지식들을 조합하여, 자칫 소외된 자들이 새로운 대상을 찾아 범행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018년 11월 27일 9시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하는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남성(74세)이 체포되었는데, 개인적인 소송에서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하며 범행을 모의하던 중 화염병을 투척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⁵²⁾ 사법부의 판단에 불만을 품고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사건으로, 모방 범죄 가능성도 있어 향후 주요 요인에 대한 경호경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사회·문화적 갈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욱 확대

149) “늘어나는 외로운 늑대들... 성장하는 테러 보험”, 데일리안, 2018. 8. 18.

150) “한국의 테러 변천사... 이데올로기→개인적 목적, 헤럴드경제, 2017. 6. 14.

151) “텀블러 폭발, 연세대 대학원생 2심도 징역 2년 실형”, 뉴시스, 2018. 4. 25.

152)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70대 구속...도망 염려”, 연합뉴스, 2018. 11. 30.

되고 있다. 즉 과거에도 존재했던 경제적 불평등,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 남북 화해 모드 속에서 이념적·지역적 갈등 등이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수단을 통해 점차 젊은 세대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범위 또한 광범위해지고 있다. 국제테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문화적·종교적·경제적 갈등 등이 테러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한국사회 내에서의 갈등 증가는 외로운 늑대 등에 의한 테러 발생 가능성 또한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대테러대응 측면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국가의 자주적 테러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하고, 외로운 늑대의 출현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테러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 간 상호 협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I. 대남전략 전망

1. 대남전략 기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1월 1일 6번째의 육성 신년사를 발표했다. 평창동계 올림픽 대표단 파견 및 대화 용의 표명과 핵개발 완성을 자찬하고, 핵 · 미사일 대량 생산과 실천배치를 강조했다. 아울러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 있는 핵강국’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 불사용 · 불위협 등을 역설했다.

우리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환영하고, 북측의 참가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이에 따라 2016년 2월 12일 중단된 지 1년 11개월 만인 1월 3일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간 연락채널이 재가동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는데 합의했다. 개성공단 전면가동 중단선언(2016. 2. 10) 후 극단적 대결로 치달았던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북한의 당규약, 헌법, 유일영도 10대원칙(유일사상 10대원칙) 등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하는 기존의 대남전략 기초는 유지되고 있다. 2019년 북한의 대남전략은 노동당 규약과 헌법 규정에 따라 전(全) 한반도의 사회주의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남북한과 북미관계의 진전여부에 따라 정전체제를 넘어 평화체제로의 수립을 모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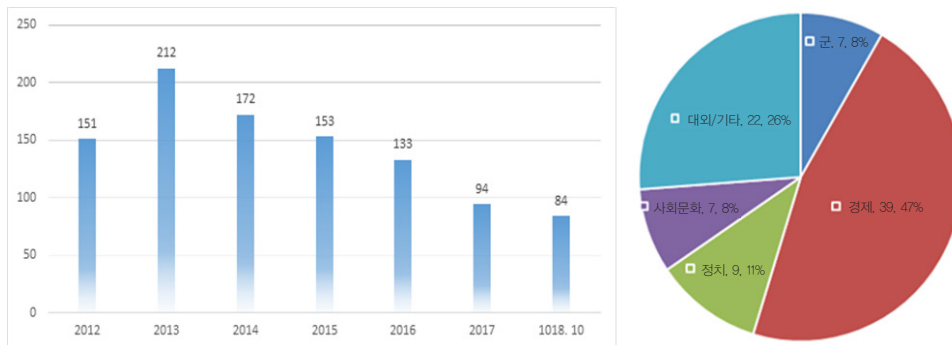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 북미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고¹⁵³⁾ 언급한데서 알 수 있듯이 ‘핵 무력 완성’에 따른 안보불안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153) “신년사”, 조선중앙 TV, 2018. 1. 1.

의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정책에 따라 준봉쇄 상태에 놓인 점도 감안되었다. 북한은 핵폐기의 대가로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수교를 원하고 있지만 협상이 교착상태로 지속되거나 또는 강력한 내부반발에 직면하게 될 경우, 과거와 같은 도발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권력무대에 전면 등장한 이후, 공개적인 활동을 점차 줄여 왔다.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공개된 84차례의 행사 중에서 경제 분야가 39차례(47%)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핵무력이 완성된 만큼, 인민경제 재건에 매진하겠다는 의미다.

[그림 3-5-1]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활동 동향(2012~201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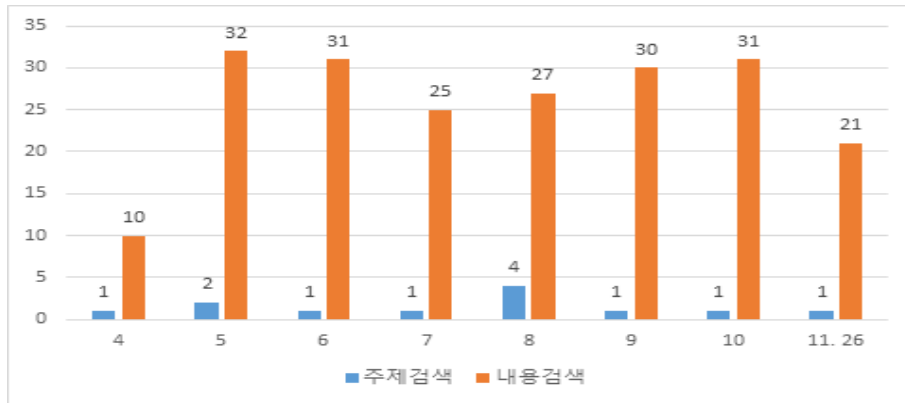


출처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2018년 4월 제3차 전원회의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 선 현단계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당의 새로운 전략노선이다.”고 천명했다.¹⁵⁴⁾ 전략노선을 실현하기 위한 당면목표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완성을 주장하고, 자력갱생 정신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노동신문에 ‘경제건설대진군’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추동하기 위한 투쟁구호로 ‘경제건설대진군’이란 표현이 제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신문 웹사이트(www.rodong.rep.kr)에서 주제별 검색과 내용별 검색을 활용, ‘경제건설대진군’을 검색한 결과 219건이 검색되고 있다. 2019년에도 북한은 경제건설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년사에서 새로운 경제투쟁 구호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154)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의 진행”, 노동신문, 2018. 4.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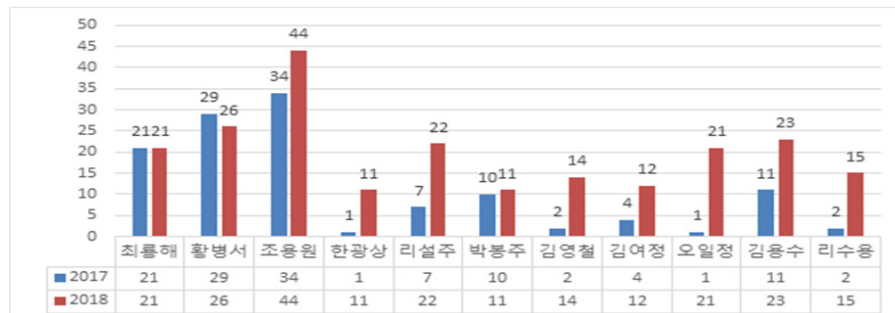
[그림 3-5-2] 노동신문 '경제건설대진군' 월별 언급 횟수(2018. 1. 1~11. 26)



출처 : 노동신문

2018년 공개행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한 인물로는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44차례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황병서 당 제1부부장(26차례), 김용수 당 부부장(23차례),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21차례) 등의 순이며, 가족관계인 부인 리설주(22차례)와 김여정(12차례)도 단골 수행 명단에 올랐다.

[그림 3-5-3] 김정은 공개행사시 수행자(2017~2018. 10)



출처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김정일은 선군정치에 의지해 국가를 운영한 반면 김정은은 당과 내각 중심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단행해 왔고, 이른바 정상국가 상태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통치기구도 국방위원회 중심에서 국무위원회로 변경했다. 제7차 당대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의 55%를 신진인물로 교체하여 지지층의 저변확대를 꾀했다.

〈표 3-5-1〉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통치체제 비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통치체제	공식직위 (당·정·군)	당 총비서 국가주석 군 최고사령관	당 총비서 국방위원장 군 최고사령관	당 위원장 국무위원장 군 최고사령관
	통치기구	노동당(정치국) 중앙인민위원회	노동당(비서국) 국방위원회	노동당(정무국) 국무위원회
	통치사상	주체사상	김일성주의	김일성·김정일주의
통치형태	국정기조	공산주의 건설	선군정치	사회주의경제 건설 (경제건설 대진군)
	권력집단	항일빨치산	혁명1세대 혁명2세대	혁명3세대 전문기술관료

출처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정은 정권의 운영구조와 경제실태 분석, 2017, 4쪽 〈표 2〉 수정.

2. 대남전략 방향 : 제3차 전원회의 노선 관철

2019년 신년사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김정은 자신과 북한인민들이 이룩한 성과와 노고에 찬사를 보내고, 국제사회로 하여금 자신들의 핵·미사일 폐기에 대한 진정성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초기 수세적 차원에서 체제생존과 정권유지에 초점을 뒀으나, ‘친정체제’ 구축과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공세적 대외정책으로 전면적 변화를 모색해 왔기 때문이다.¹⁵⁵⁾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및 북미관계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룩할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동당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 2018년 4월 20일 남북정상회담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제3차 전원회의를 소집하여 내부적으로 정책전환을 결정한 바 있다.

새로운 정책노선이 결정되기 이전까지 북한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은 2018년 제3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2가지 결정서에 기초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결정서 어디에도 현존하는 핵무기 폐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고, 미래 핵무기에 대한 동결의사만 피력돼 있을 뿐이다.

155) 북한은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에 대하여 ‘국가 핵무력 완성의 대업’ 이라고 언급하고 노동신문 전체 6개면 가운데 4개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노동신문, 2017. 11. 29.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 제하 결정서는 ① 핵무기 병기화(핵시험·소형화·경량화·초대형핵무기·운반수단) 실현, ② 2018년 4월 21일 이후 핵시험·ICBM 시험발사 중지 및 북부핵시험장 폐기, ③ 세계적 핵군축 과정으로서 핵시험 중지, ④ 대북 핵위협·핵도발 없는 조건하에 핵무기 불사용 및 핵무기·핵기술 불이전, ⑤ 인적·물적자원을 총동원한 사회주의경제건설, ⑥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국제사회 연계 및 대화 수행 등 6가지 내용을 담았다.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하여” 제하 결정서는 ① 체제 전반사업을 사회주의경제 건설에 총집중, ② 이를 위한 당·근로단체·정권기관·법기관·무력기관들의 역할 강화, ③ 당조직·정치기관들의 전원회의 결정 장악 및 총화 관철지시, ④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내각에 대한 전원회의 결정서 과업 관철의 법적·행정적·실무적 조치 촉구 등 4가지를 담고 있다.¹⁵⁶⁾

2019년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기존 핵과 운반수단에 대한 인정을 일차적으로 요구할 것이고, 만약 미국이 확실하고 완전한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을 약속할 경우, 단계적 핵폐기와 보상이 병행하는 협상안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1단계 조치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비핵화 일정에 관한 포괄적 협의), 2단계 조치로 종전선언과 핵물질 신고 및 검증, 3단계 조치로 일부 핵무기·ICBM 폐기 및 반출, 4단계 조치로 한반도 평화체제보장 및 북미수교 등의 단계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간 대결구도를 갖는다. 미국의 협상수단은 제일 낮은 단계로 한미군사훈련중단, 종전선언, 경제제재완화, 평화협정체결, 경제제재 해제, 북미수교 등의 정책수단을 펼칠 수 있다. 반면 북한의 협상수단은 핵·미사일 시험중단, 핵·미사일 시험장 폐기, 동결, 불능화, 폐기 등을 상정할 수 있다. 2018년은 미북 협상 초기단계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잠정중단 대(對) 핵·미사일 시험과 시험장 폐기를 맞바꾸었다. 2019년에는 종전선언과 핵불능화 조치에 따른 경제제재 완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156)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진행”, 노동신문, 2018. 4. 21.

3. 2019년 분야별 대남전략 전망

1) 정치분야 : 남북·북미정상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조기체결 유도

문재인 정부는 평화공존·공동번영의 기치아래 3대 목표(북핵문제 해결·남북관계발전·신경제공동체구현), 4대전략(단계적·북핵문제 진전·제도화·통일기반 조성), 5대원칙(우리주도·강한안보·상호존중·국민소통·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 정상간 ‘4·27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¹⁵⁷⁾ 4·27 판문



점 회담과 5·26 판문각 회담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평양남북정상회담(9. 18~20)을 개최하여 6개항 합의도 이뤄졌다. 주요내용으로 ①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②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③ 인도적 협력강화, ④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추진, ⑤ 핵무기 없는 한반도, ⑥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4No 선언’ 즉, ① 대북 적대시 정책, ② 대북공격, ③ 정권붕괴, ④ 인위적 통일 등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 역시 4대 기조로 ①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② 정권교체 불추진, ③ 대북제재와 압박지속, ④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등 우리와 유사하다.¹⁵⁸⁾ 중국은 2017년 12월 14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① 한반도 전쟁불용, ② 한반도 비핵화, ③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④ 남북한 간의 관계개선 등 4원칙을 발표한바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국 상호간에 정치·군사적 신뢰가 전제된 상태에서 법·제도적으로 평화가 공고하게 보장된 상태를 의미한다.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는 한국전쟁 종전후 제네바 정치회담(1954. 4. 26)¹⁵⁹⁾에서부터 최근 평양남북정상회담(9. 18~20)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의제로 자리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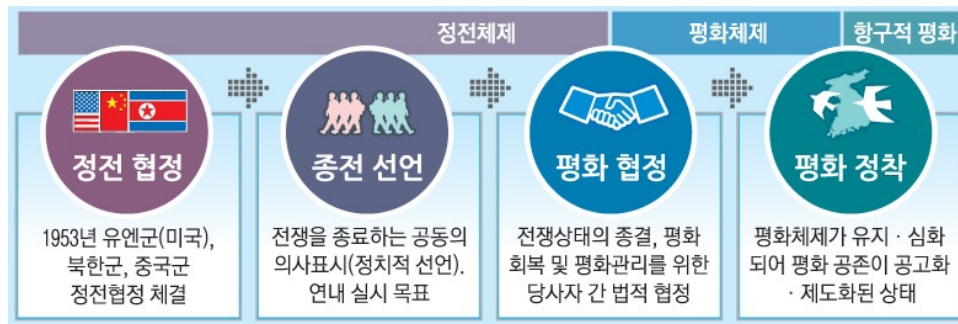
157) 통일부(www.unikorea.go.kr) 통일정책 참조.

158) “미국 대북정책확정.. ‘북 정권교체 추진 않고 최종적으로 대화로’”, 세계일보, 2017. 5. 26.

159)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제60항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네바 정치회의가 1954년 4~6월에 개최되었다. 한국정부는 14개 원칙을 제안했으나, 한국 및 16개 유엔군 참전국들과 북·중·소 등 상호이견이 커서 결렬되었다.

우리 정부는 상징적 차원에서 정치적 종전선언을 추진해 왔으나, 미국은 “종전선언은 돌이킬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히 이뤄져야 한다.”며,¹⁶⁰⁾ “북한이 상당한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¹⁶¹⁾ 이에 대해 북한은 “갈 든 강도 앞에 방패를 내려놓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종전선언 채택을 미루지 말아야 할 것임을 거듭 요구했다.¹⁶²⁾

[그림 3-5-4]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책 로드맵



출처 : “9월 유엔총회 등 연재 종전협정..다자안보협력·평화협정 시대로” , 서울신문, 2018. 7. 17.

북한은 김정은의 서울 답방에 이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평화협정을 비롯한 북미수교 등 일련의 후속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의 전환논의는 우리사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최소한의 정치·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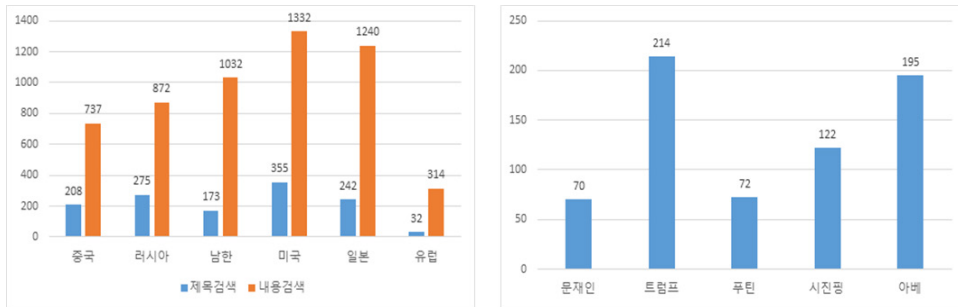
북한이 가장 관심을 두는 국가는 당연히 미국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노동신문 기사에 나타난 주요 국가별 인용횟수를 보면, 미국이 기사제목에서나 내용면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예상외로 일본이며, 3위가 우리나라다. 4위는 중국으로 208건의 기사제목과 737건의 기사내용이 검색되었다.

160) 미국은 종전선언이 실시될 경우,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폐기 등 대미평화공세를 강화할 것을 우려한다. 또한 미국이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경우,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미국의 안보이익이 침해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161) “해리스 북 상당한 비핵화 조치 있어야 종전선언 가능” , RFA, 2018. 8. 2.

162) “당치않은 신뢰타령으로 더러운 정치적 야욕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 노동신문, 2018. 9.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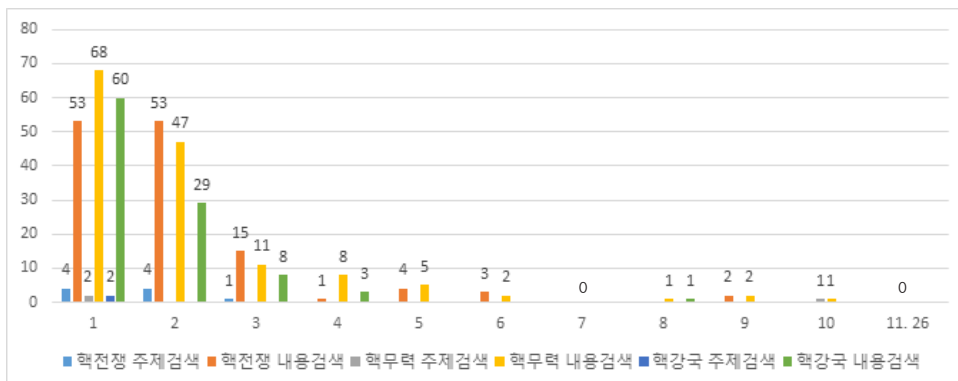
[그림 3-5-5] 노동신문에 나타난 주요국가 및 국가수반 검색(2018. 1. 1~11. 26)



출처 : 노동신문

2019년에도 노동신문의 상당부분이 미국과 한국 기사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5년 9·19공동성명 채택과정에서 논의된 선후의 문제와 동시병행의 문제가 비핵화 과정에서 핵심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¹⁶³⁾

[그림 3-5-6] 노동신문 ‘핵전쟁, 핵무력, 핵강국’ 주제 및 내용검색(2018. 1. 1~11. 26)



출처 : 노동신문

북한공식 매체에서 북미대결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표현들은 2019년에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2018년 4월 전원회의 개최 이후, 노동신문 기사 중에서 ‘핵전쟁’, ‘핵무력’, ‘핵강국’ 등의 기사제목이나 내용이 들어간 기사는 확연하게 감소하고 있다.

163) 중국은 한반도 4원칙 아래 쌍중단(북핵·미사일 활동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쌍궤병행(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장하여 북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 경제분야 :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촉구

우리정부는 신베를린 선언(2017. 7. 6)을 통해 5대 원칙과 4대 제안을 담은 대북정책을 선보인 바 있다. 정치·군사상황과 분리하여 인도적 교류·협력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구상에 따라 남북경제공동체와 동북아협력사업을 중심축으로 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졌다.

[그림 3-5-7] 남북한 신경제 구상



출처 : "남북한 신경제구상 3대 벨트", 연합뉴스, 2018. 6. 14.

한편, 4·27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의 하나인 남북철도조사에 대해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1월 23일 제재면제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¹⁶⁴⁾ 남북철도와 도로, 하늘길과 바닷길이 연결되는 조치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2019년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사전준비 등도 조심스럽게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

164) 2018년 9월 19일 체결된 남북군사합의서에서는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발굴 지역내 12m폭의 도로를 개설하고 군사분계선에서 연결한다고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11월 22일 강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술도로가 연결되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조치이다. 그러나 대북제재위원회는 본격적인 철도연결 사업과는 별개임을 분명히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이후 북한은 널 띄기 경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7년 -1.3%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2018년은 더 악화된 -5%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¹⁶⁵⁾ 왜냐하면 북한의 수출량이 2016년 보다 9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표 3-5-2〉 북한의 산업별 구조(2013~20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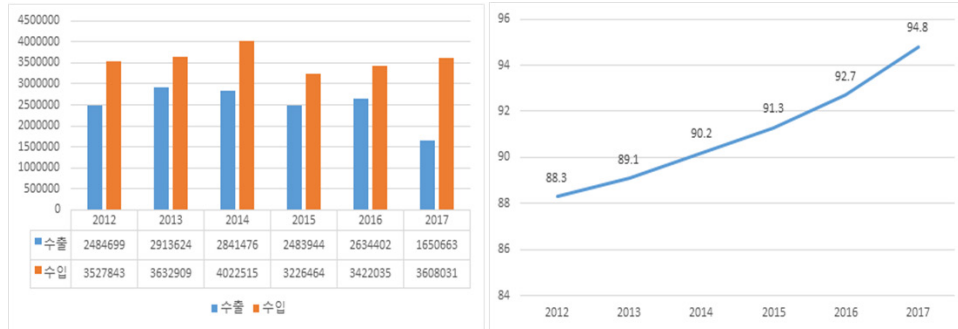
산업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구조	성장률	구조	성장률	구조	성장률	구조	성장률	구조	성장률
농림어업	22.4	1.9	21.8	1.2	21.6	-0.8	21.7	2.5	22.8	-1.3
광공업	35.7	1.5	34.4	1.1	32.7	-3.1	33.2	6.2	31.8	-8.5
광업	13.6	2.1	13.1	1.6	12.2	-2.6	12.6	8.4	11.7	-11
제조업	22.1	1.1	21.3	0.8	20.4	-3.4	20.6	4.8	20.1	-6.9
경공업	6.8	1.4	6.9	1.5	7	-0.8	6.9	1.1	6.8	0.1
중화학공업	15.4	1	14.4	0.5	13.4	-4.6	13.7	6.7	13.3	-10.4
전기·가스·수도업	4.1	2.3	4.3	-2.8	4.5	-12.7	5.2	22.3	5	-2.9
건설업	7.8	-1	8.2	1.4	9	4.8	8.8	1.2	8.6	-4.4
서비스업	30	0.3	31.3	1.3	32.2	0.8	31.1	0.6	31.7	0.5
정부	21.7	0.3	22.7	1.6	23.3	0.8	22.4	0.6	23.2	0.8
기타	8.4	0.4	8.6	0.5	8.9	0.6	8.7	0.5	8.4	-0.3

출처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내 북한통계

중화학공업, 광공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등 기타 분야에서 마이너스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고, 정부부문도 2017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파하려면 결국,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막대한 SOC 개발이 투여되는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2019년에도 북한의 관심은 지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165) "북한 올해 성장률 마이너스 5%", 조선일보, 2018. 10. 26.

[그림 3-5-8]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와 대중국 무역의존도(2012~2017)



출처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내 북한통계

북한의 무역구조는 중국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2017년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무려 94.8%에 달했다. 중국을 대상으로 직·간접적 이득은 얻고 있으나, 북한이 그토록 주장하는 주체형의 자립경제와는 너무나 모순적이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경제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나, 유엔과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극히 제한적이다.

3) 군사분야 : 단계적 동시병행 원칙 고수

미국은 제1차 북미 정상회담(2018. 6. 12) 이전까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정책을 고수해 왔다. 제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하여 CVID는 성명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8년 7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제3차 방북 직전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 :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란 개념이 등장했다. 미 국무장관의 제4차 방북설을 전후하여 비핵화 전략은 ‘FFVD’로 변경되었다.¹⁶⁶⁾ CVID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⁶⁷⁾ 즉, 핵개발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비핵화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불가역적 비핵화’ 대신 검증을 강화한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로 수정한 것이다.

166)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펜스 미 부통령은 11월 16일 회담을 가졌는데, 여기서 펜스 부통령은 FFVD 대신 CVID를 사용하여, 다시 미국의 정책이 바뀌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낳았다.

167) 북한은 미국의 CVID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패전국에나 강요하는 굴욕적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지난 2004년 6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3차 6자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싫어하는 CVID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북특사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만남(2018. 9. 6)에서 “임기 내 70년간의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실현 의사를” 피력했다. 2019년에 개최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회담의제 조율에서부터 난항이 예고돼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5-3〉 북미회담 개최시 주요 쟁점사항

	북한	미국
종전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선언 • 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 • 풍계리 핵실험장과 서해위성발사장 해체로 이행 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포석 •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연계 • 핵신고서 제출과 불가역적 조치후 수용
핵신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선언보다 큰 상응보상을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핵심조치 • 비핵화의 첫단계(신고→검증→폐기)
비핵화 초기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탄두 폐기 + α
이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 동시적 행동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先 비핵화조치 후, 종전선언 • 김정운의 구체적 이행조치 약속 후, 종전선언 검토

미국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영구 폐기와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을 주문해 왔다. 민주당은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언제·어디서든 사찰이 가능하다는 조항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복 조치가 가능한 스냅백(snap back)¹⁶⁸⁾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한미는 한반도평화와 북한 비핵화에 관한 상호이견을 줄이기 위해 ‘한미워킹그룹’(2018. 11. 20)을 발족시켰다. 워킹그룹(working group)의 목적은 “한미 양국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지 않고, 서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스티븐 비건 대표는 밝혔다. 따라서 워킹그룹은 한미동맹차원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FFVD 달성노력과 유엔대북 제재의 지속적인 이행, 그리고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168) 스냅백 조항이란 이란 핵협상 과정에서 체결된 조항으로 만약 이란이 제대로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제 제재를 협상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의미한다.

〈표 3-5-4〉 북한 탄도미사일 종류와 재원

구분	사거리(km)	탄두	배치지역
단거리	KN-02 독사 스커드 B/C 스커드-ER 120~170 340/500 900	재래식 재래식·화학 재래식·화학	전술지역
중거리	노동 1300	재래식·핵	작전지역
장거리	무수단 화성-12 화성-14 화성-15 4,000 5,000 11,500 13,000	핵 핵 핵 핵	전략지역
기타	KN-18 북극성 1호 1,000 2,000~3,500	재래식 핵	- 잠수함

출처 : “비핵화 대상 아니라는 북 미사일, 우리에게 치명적,” 중앙일보, 2018. 11. 16.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숨겨진 단·중거리 미사일 기지를 공개했다. 북한내 미신고 된 20곳의 미사일 기지 중 16개의 기지에서 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는 것이다.¹⁶⁹⁾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은 핵탄두를 장착 가능하므로 우리에게서 비핵화의 핵심이고 치명적인 무기이다.¹⁷⁰⁾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외교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¹⁷¹⁾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상응조치”로 북미수교가 77%, 대북지원 54%, 한미군사훈련 취소 44% 등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비핵화 조치 불응시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강화 77%, 북핵시설 공습 37%, 김정은 정권 전복 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위원장의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1%가 비호감으로 평가했다.

2019년 북미 회담시 미국이 제시할 당근과 그에 대한 채찍 등에 관해 미 국민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결과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국제협상 능력은 핵무장 완성 수준과 정비레 관계에 있으며, 경제제재 효과 수준과는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 다시 말해 핵무장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면 국제협상 능력은 상승하겠지만, 반대로 경제제재 효과가 확실하게 적용되고 있다면 북한의 국제협상 능력은 그만큼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169) “미 CSIS 미신고 북 미사일 기지 최소 13 곳 확인” , 한겨레, 2018. 11. 13.

170) 현재 북한 전략군사령관은 김락겸이다. 전략군에는 3개의 사단이 있고, 제1 미사일사단은 6개 대대, 64개 발사대에서 600여발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2 미사일사단은 200여발의 노동미사일을 8개 기지에서 운영하고, 제3 미사일사단은 미국을 겨냥한 무수단 미사일(4000km)로부터 화성-15(1만3000km)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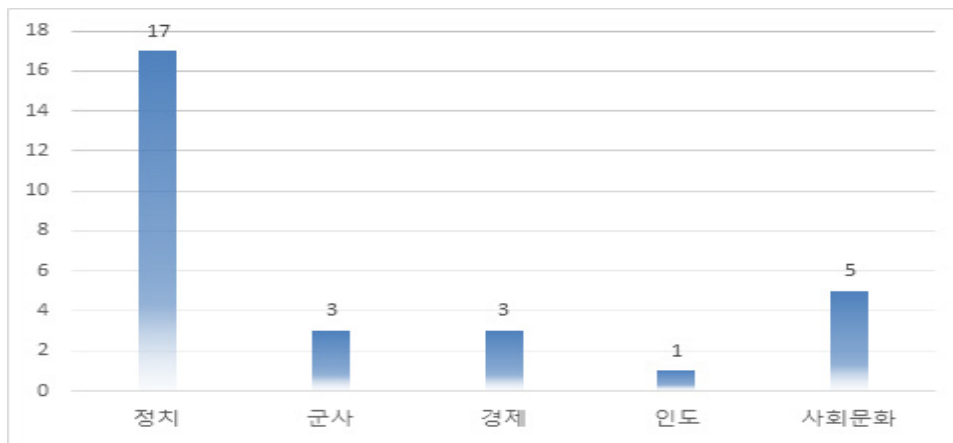
171)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2018년 7월 12일부터 31일까지 미국인 2,046명을 대상으로 외교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4) 사회·문화분야 : 다양한 방식의 교류 전면화

2018년 5월 말 기준, 남에서 북으로 방북한 인원은 530명이고, 북에서 남으로 방남한 인원은 544명이다. 남북 인원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차량운행이 77차례, 선박운행 2차례, 항공기 운항횟수가 22차례 있었다. 총29차례의 분야별 남북회담을 개최했는데, 정치분야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사회·문화 분야로 5건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사회·문화는 비정치적 분야에 해당되므로 2019년에는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한국 내 60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예외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대북제재위원회인 '1718위원회'에 발송한바 있다.¹⁷²⁾

[그림 3-5-9] 2018년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현황



출처 : 통일부(www.unikorea.go.kr)

우리정부는 1990년 8월에 제정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중앙정부차원에서 매년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 또한 2000년 이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하고 있다. 2018년 1월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37개 기초자치단체, 3개 지방교육청 등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된 9월에는 경기도, 경상남도, 인천시, 세종시, 울산시 등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추경에 반영하는 조치를 취했다.

172) "대북지원 민간단체 인도지원 제재 면제를...안보리 제재위에 서한", 경향신문, 2018. 11. 22.

〈표 3-5-5〉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

(단위: 만원)

구분	조성액	잔액	기금설치 연도
서울특별시	1,920,000	500,000	2004
부산광역시	620,000	620,000	2007
대구광역시	507,060	507,060	2005
인천광역시	1,100,000	160,000	2004
광주광역시	450,000	440,000	2003
대전광역시	-	-	2008
경기도	3,619,400	1,350,000	2001
강원도	1,380,000	510,000	1998
충청북도	157,117	74,200	2012
충청남도	83,800	81,200	2011
전라북도	683,518	400,000	2007
전라남도	214,800	161,000	2003
경상북도	51,887	50,000	2008
경상남도	666,400	500,700	2005
제주특별자치도	310,000	200,000	2007
세종특별자치도	-	-	2015

*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2015년 기준, 그외 지자체는 2017년 말 기준으로 함
출처 : 정세현, 한반도 균형발전과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8, 83쪽

자치단체별로 교류협력을 추진할 예산은 확보돼 있는 셈이다. 즉,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농업·산림협력에서부터 국제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교류를 추진할 수 있으나, 최대 걸림돌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이다. 미국이 허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까지인가에 따라 사회·문화·체육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의 폭과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미국은 2016년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을 제정했는데, 북한만을 겨냥하여 재화·기술·서비스의 제공 및 금융거래를 전면금지하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¹⁷³⁾ 동법에 의하면 대북제재를 유예하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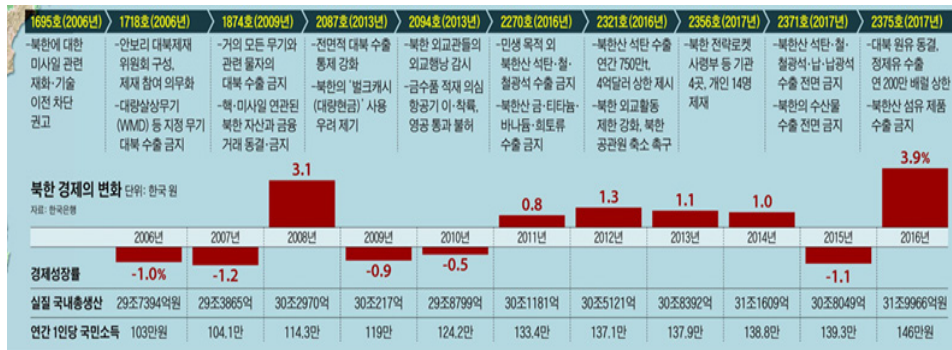
173) 제재법 제4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은 총6가지 조건에 대해 북한이 진전(progress)을 보였을 경우, 최대1년까지 제재유예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동법 제4조 2항에 따라 추가 5가지 조건에 대해서도 ‘상당한 진전(significant progress)’을 보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의회가 승인할 경우 즉시, 제재 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료하기 위해서는 대량살상무기의 폐기, 위조지폐, 자금세탁 등 국제불법행위 중단, 인권개선, 정치범 석방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제재를 해제하려면, 미 의회에서 제재해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5) 기타 대외분야 : 대북제재 완화요구 및 신외화별이 수단확보

유엔 안보리의 역대 대북제재 결의안은 유엔헌장 제7장 41조 비군사적 조치를 인용해 왔다. 특히 제2375호 결의안은 유류공급을 제한하며 제재대상에 개인과 단체를 추가하는 특징을 선 보였다. 결의안은 해상검색·차단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노동자와 섬유제품 수출금지 및 합작사업 설립·유지·운영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그림 3-5-10]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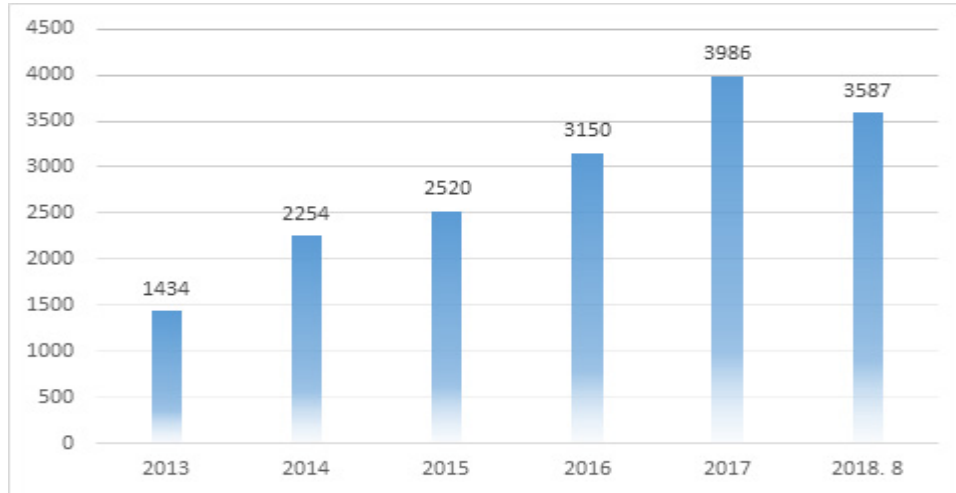
출처: “유엔 대북제재 결의 10번째... 느리지만 서서히 고통 수위 높여,” 조선일보, 2018. 9. 27.

지금까지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유효성에 관한 논의는 분분하다. 미국의 제재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1948년부터 2005년까지 독자 제재 328건(85%)을 단행하였고, 85건(15%)의 다자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전체 386건의 제재 중 48건에 대하여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성공률은 국제기구가 관여한 제재가 64.6%로 가장 높았고 다자제재가 56.9%, 단독제재가 34.1%였다.¹⁷⁴⁾ 따라서 2019년 미국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다자들을 통해 대북제재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고, 반면 북한은 어떠한 형태로든 이러한 틀을 깨트리려고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174) 황태희 외, “미국 경제제재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2017 가을호, 199~200쪽.

한편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은 3,587회로 집계되었다. 2013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다. 우리 군과 정부를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 중 상당수는 북한 소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5-11] 한국군 대상 사이버 공격추세(2013~2018. 8)



출처: “북의 사이버 공격 급증...사이버전 교전수칙 검토,” 조선일보, 2018. 10. 15.

최근엔 북한 해커 조직 ‘히든 코브라(Hidden Cobra)’가 4·27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대규모 해킹 공격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히든 코브라는 미국이 2009년 이후 발생한 글로벌 해킹 사태의 배후로 지목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조직이다.¹⁷⁵⁾

마이클 로저스 전 미국 국가안보국 NSA 국장은 북한을 사이버 공간에서 돈을 훔치는 유일한 범죄 국가로 지목했다. 북한은 가상화폐를 훔치고 국제은행 시스템을 공격해 돈을 훔치고 있다는 것이다.¹⁷⁶⁾ 영국의회 산하 국가안보전략 공동위원회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주요 국가기반시설을 위협한다고 평가했다. ‘영국주요국가기반시설의 사이버 안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제은행간통신협회(스위프트)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으로부터 8천100만 달러 이상을 빼돌렸다.”고 지적했다.¹⁷⁷⁾

175) “북 사이버 공격 급증...”, 조선일보, 2018. 10. 15.

176) “로저스 전 NSA 국장 “북한 해킹 통해 돈 훔치는 유일한 나라”, VOA, 2018. 11. 28.

177) “영국 의회 북한 사이버 공격, 국가기반시설 위협”, VOA, 2018. 11. 21.

2019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북한의 자금난이 심각해지면 전 세계 금융기관과 은행 등 경제 분야에 대한 공격은 더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¹⁷⁸⁾ 따라서 우리금융 당국은 북한의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해킹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19년에는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국제사회의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¹⁷⁹⁾ 대한변호사협회는 탈북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8.4%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인권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적시했다.¹⁸⁰⁾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도 북한인권 침해가해자 656명의 신상 정보를 담은 가해자 카드를 만든바 있다.¹⁸¹⁾ 이에 대해 북한은 핵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인권문제를 연이어 제기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¹⁸²⁾

178) 미 법무부는 북한 경찰총국과 관련된 해커 박진혁(34)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국적의 정성화(48)를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 두사람은 평양 제1중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교, 김책공업대학교를 졸업한 수재들이다.

179)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기록을 언급한 바 있고, 2018년 10월 31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미 국무부는 국제사회와 계속협력 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무부 북한 정부의 인권침해 우려...지도부 책임 물을 것”, VOA, 2018. 11. 15.

180) “대한변협 백서 김정은 집권후 인권상황 더 악화”, VOA, 2018. 10. 18.

181) “한국정부 북 인권침해 가해자 656명 명시”, RFA, 2018. 3. 2.

182) “인권 타령에 비긴 미국의 추악한 속내를 해부한다”, 노동신문, 2018. 11. 26.

II. 탈북민 관련 전망

1. 북한 주민의 탈북 가능성

1) 주민통제 강화로 신규탈북 감소

최근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해 경제건설을 하고자,¹⁸³⁾ 한국, 중국, 미국과 연이는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제적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북·미간의 핵 갈등을 해결한 후 국제사회와 한국의 경제지원이 본격화된다면, 시장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사상적 이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북한주민들은 “중국,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 가보고 싶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궁금하며 해외여행을 가보는 것이 꿈”¹⁸⁴⁾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비사회주의적 지식과 사상의 확산을 방지하여 김정은 체제를 보위하고자 주민 단속과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2018. 6. 18)은 “인류의 염원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논평을 통해 “자본주의는 근로 대중의 존엄과 이익을 짓밟는 반인민적 사회”라며 개방에 따른 체제 이완을 우려한 바 있다.

북미정상회담(2018. 6. 12)을 전후해서도 주민통제기관(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등)과 규찰대 등을 동원해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국경지역 단속 등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¹⁸⁵⁾ 최근 북한 주민들의 탈북 및 도강(渡江)을 차단하고자 북한당국은 국경도시에 비밀 정보원 포섭 작업을 진행하고, 중국당국은 고성능·고해상도 감시 카메라, 야간 감시 장비(열화상카메라) 등을 동원해 국경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¹⁸⁶⁾

결국,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와 남북한 관계 개선 등에 대비해 체제보위 차원에서 주민들의 사상적 이완과 비사회주의적 행위 등을 차단하고자 주민 단속과 검열, 국

183) 북한은 2018년 4월, 핵과 경제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언하며,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 전략 노선을 채택한 바 있다.

184) “북한 주민들 사이에 한국 호감도 높아져… 단속·통제 더욱 강화”, 크리스천투데이, 2018. 7. 30.

185) “북, 미북정상회담 계기로 내부통제 강화”, 자유아시아방송, 2018. 6. 12; “북, 미북정상회담 이후 규찰대 동원 주민통제 강화”, 자유아시아방송, 2018. 7. 22.

186) “중서 북한 주민 잇따라 북송…압록강 헤엄쳐 건넜지만…”, 데일리NK, 2018. 11. 20.

경선 이동경로와 국경선 통제를 강화하고, 중국당국은 탈북민 체포 후 강제복송 등의 단속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북한 주민들의 탈북행위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2) 탈북 요인과 형태의 다양화

북한 일인 독재체제의 구조적 문제는 주민들의 탈북을 촉진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탈북 동기가 ‘고난의 행군’ 시기는 식량난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면, 최근은 독재체제에 대한 염증, 만성적인 경제난과 식량난, 외부 정보의 유입, 출신성분에 따른 사회적 차별, 사회기강의 해이, 개인적 사정, 자본주의 풍조 확산,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삶 보장, 남한 내 탈북민 가족과 재회 등이 탈북을 촉진시키는 직·간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탈북동기에 대한 설문 조사대상 26,430명 중 “북한 체제의 감시·통제가 싫어서” 23.6%, “식량이 부족해서” 22.9%, “가족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주려고” 12.4%,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10.2%, “먼저 탈북한 가족을 찾거나 함께 살기 위해” 9.7% 순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 북한 주민들은 정치·경제·개인적 문제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탈북을 감행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독재체제의 감시와 통제, 가족에게 보다 나은 삶 보장 등 정치적, 경제적,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탈북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대북경제지원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남한사회의 발전상이 주민들에게 확산된다면, 국내입국을 위한 ‘이민형 또는 자유추구형 탈북’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김정은 체제의 권력 중심에서 밀려난 고위급, 외교관, 경제관료, 해외무역상, 군 간부 등 중·상류 엘리트층이 생존권 차원에서 탈북을 시도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2. 국내입국 탈북민 전망

1) 국내입국 탈북민 감소 현상 유지

국내입국 탈북민은 2018년 9월말 기준 32,147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들은 1999년 처음으로 100명(148명)을 넘어선데 이어서 2001년 500명(583명), 2002년 1,000명(1,142명)을 각각 돌파했다. 이후 2011년까지는 매년 2,000명에서 2,900명 사이를 유지했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2012년부터 1,200명에서 1,5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8년 9월말 기준 전년 동기(881명) 대비 8.5%(75명) 감소한 806명이 입국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국내입국 탈북민의 감소 현상은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국경 이동 경로 단속과 북·중 접경지역 감시 강화로 신규 탈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당국의 탈북민 단속과 강제복송, 국내입국 경로인 제3국 이동경로 차단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외에도 북·중 당국의 탈북브로커에 대한 단속 강화로 탈북브로커 경비 급상승,¹⁸⁷⁾ 중국체류 탈북민 국내입국 대기자 감소,¹⁸⁸⁾ 북한 시장경제(장마당 등) 신장, 탈북민의 국내입국 선호 약화¹⁸⁹⁾ 등이 탈북민의 국내입국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탈북 단속을 위해 국경지역 통제를 강화하고, 중국공안당국의 탈북민과 탈북브로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한 탈북민의 국내입국 감소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아래 그림 추세선 참조).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와 남북한 관계 개선을 현실화하기 위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고, 중국이 탈북민 난민 인정을 수용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면 신규 탈북민의 국내입국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87) 외교통일위원회 박병석 의원은 탈북브로커 경비가 2017년 대비 2018년의 경우 약 40%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박병석 국회의원, “2018년도 국정감사(외통위) 보도자료”, 2018. 9. 30); 탈북민 지원단체 ‘북한정의연대’의 정베드로 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경 통제 강화를 지시하면서 탈북민들이 중국 쪽으로 탈출하는 데 드는 이른바 ‘도강비용’이 미화로 1만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높아져 탈북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올 상반기 한국 입국 탈북민 21% 감소...여성비율 85%”, VOA뉴스, 2017. 7. 12).

188)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2016년 증가세로 돌아섰던 탈북민 수가 2017년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대해 중국에 체류했던 탈북민들의 상당수가 이미 한국에 들어온 때문으로 분석했다(“올 상반기 한국 입국 탈북민 21% 감소...여성비율 85%”, VOA뉴스, 2017. 7.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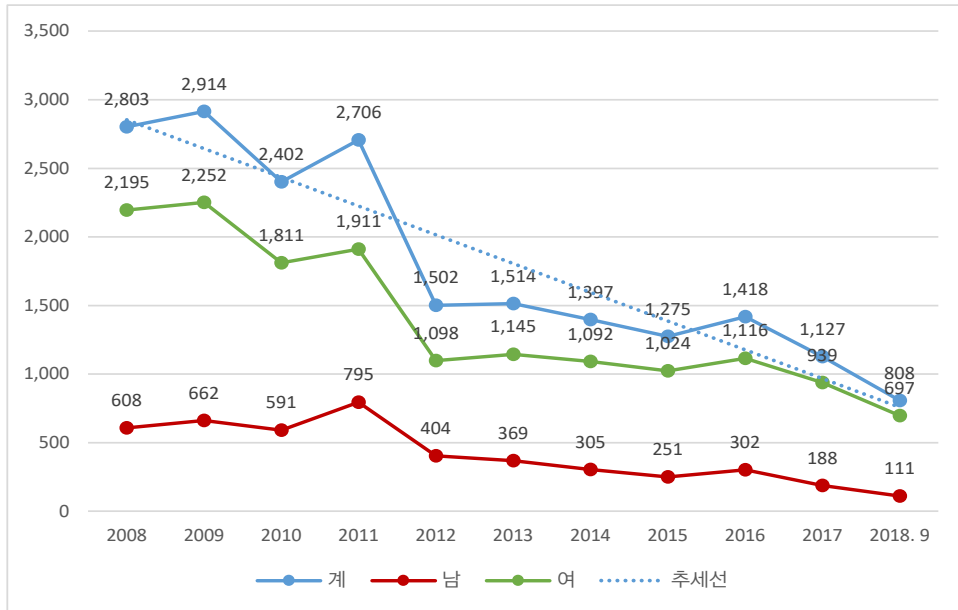
189) 국내입국 탈북민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알게 된 중국체류 탈북민들은 국내입국 보다는 중국에 체류하면서 돈 벌기를 원하기도 한다.

〈표 3-5-6〉 탈북민 국내입국 현황

(2018. 9월말 입국자기준)

구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9
계	32,147	12,281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808
남	9,104	4,518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88	111
여	23,043	7,763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697
여성 비율	71.7%	63.2%	78.3%	77.3%	75.4%	70.6%	73.1%	75.6%	78.2%	80.3%	78.7%	83.3%	86.3%

출처 : 통일부(2018. 10)



2) 여성 탈북민 대다수 차지

1998년까지만 해도 여성 탈북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12%(전체 947명 중 116명)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다 국내입국 탈북민이 1,000명을 돌파했던 2002년의 경우 처음으로 여성탈북민이 55.3%를 넘어 남성 탈북민을 추월했다. 최근 5년간(2014~2018. 9) 국내입국 여성 탈북민은 81.4%에 이르고 있다. 2018년 1~9월말까지 국내입국 탈북민 808명 중 여성 탈북민은 697명인 86.3%에 달했다.

북한은 유교적 문화가 강한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집안의 생계문제를 여성들이 책임지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1990년 중반 식량난이 가장 심각했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여성들은 가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불법월경(도강)한 후 중국의 친·인척을 찾아 식량구입을 시작했다. 이들이 식량구입과 돈벌이를 위해 장기간 중국에 체류

하는 과정에서 종교단체와 탈북브로커 등의 도움을 받아 국내로 입국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당국의 여성에 대한 감시가 직장에 억매인 남성에 비해 느슨해 국내입국 중간 기착지인 중국을 드나들기 쉬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중국 체류 탈북민 대다수가 여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북한 탈출 신규 탈북민과 국내입국 대기 중국 체류 탈북민 대다수가 여성인 것을 감안한다면, 2019년 역시 국내입국 탈북민은 여성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탈북민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변보호활동과 대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3) 중국 접경지역 출신 탈북민 대다수 차지

2018년 8월 기준 국내입국 탈북민은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일부 인원을 제외하면 31,730명에 이른다. 이 중에서 여성탈북민은 75.5%인 22,70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출신지역을 보면 함경북도 60.7%인 19,145명, 양강도 16.0%인 5,061명, 함경남도 8.8%인 2,775명, 평안남도 3.4%인 1,063명 등 함경남북도와 양강도 출신이 85.7%인 26,981명으로 절대적 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 접경지역 출신의 탈북민이 가장 많은 것은, 산간오지가 많아 과거부터 식량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식량난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중국을 오가며 식량과 생필품을 구했던 경험으로 인해 내륙지역 주민들보다 탈북경로를 잘 파악하고 있어서 비교적 탈북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반면, 내륙지역 주민들의 경우, 중국 접경지역으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공간기관에 노출되어 단속될 위험이 높아서 탈북이 쉽지 않다.

이런 분위기는 2019년에도 지속되어 국내입국 탈북민 대다수는 함경남북도, 양강도 등 중국 접경지역 출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중·장기적 측면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여파가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본격화된다면 내륙지역 출신 탈북민의 국내입국 증가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5-7〉 탈북민 재북 출신 지역별

(2018. 8 기준)

구분	강원	남포	양강	자강	평남	평북	평양	함남	함북	황남	황북	개성	기타 (재외 등)	계
남	219	68	1,334	67	441	365	412	763	4,787	265	177	45	85	9,028
여	374	81	3,727	153	622	478	317	2,012	14,358	189	268	30	93	22,702
합계	593	149	5,061	220	1,063	843	729	2,775	19,145	454	445	75	178	31,730
비율	1.9%	0.5%	16.0%	0.7%	3.4%	2.7%	2.3%	8.8%	60.7%	1.4%	1.4%	0.2%	0.5%	100.0%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일부 인원은 제외된 수치
출처 : 통일부(2018. 9. 30)

4) 탈북민 국내입국 경로의 다양화

탈북민 대다수는 중국 국경을 넘어서 라오스, 베트남, 태국 등을 거쳐 수 천 km를 경유하여 입국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두만강 경로를 이용해 탈북한 후, 중국, 동남아를 거쳐 입국하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 군인과 주민들이 휴전선이나 배를 이용해 강과 바다를 통해 귀순하는 등 국내입국 경로가 다양화되고 있다.

북한 주민과 병사들이 휴전선을 이용해 2016년은 3회에 걸쳐 5명(주민 4명, 군인 1명)이 귀순하였지만, 2017년은 9회에 걸쳐 15명(주민 11명, 군인 4명)이 귀순하였다. 즉, 휴전선을 통한 귀순은 2017년의 경우 2016년 대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⁹⁰⁾ 2018년의 경우 2명의 북한 군인이 서해상과 휴전선을 통해 귀순한 바 있다.¹⁹¹⁾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탈북을 방지하기 위해 북·중 국경지역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면, 새로운 탈북경로로 휴전선, 해상, 강상(江上) 등이 새로운 탈북루트로 부상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귀순 경로에 대한 안전한 귀순보장과 함께 군사 충돌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중국 체류 탈북민의 밀항과 중국동포로 신분 세탁 후 국내입국, 해외근로자의 숙소이탈 후 국내입국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탈북경로를 이용해 탈북민의 국내입국이 본격화된다면, 북한당국은 탈북민의 국내입국을 문제 삼아 긴장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190) 북한군 병사 귀순은 2016년 1명에 불과했지만 2017년의 경우, 6월 13일 경기 지역 중부전선, 6월 23일 강원 지역 중부전선, 11월 13일 판문점 JSA, 12월 21일 경기지역 중서부전선 등을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4명이 귀순해 왔다(헤럴드경제, 2017. 12. 22).

191) 북한군 장교(소좌: 소령급) 1명과 주민 1명이 2018년 5월 19일 서해상(백령도)을 통해 귀순한데 이어서 12월 1일 강원도 동부전선을 통해 북한군 1명이 귀순했다.

3. 탈북민 신변보호 전망

1) 해외 위장망명 탈북민

국내정착에 실패한 탈북민 중에는 한국사회 정착사실을 숨기거나 밀입국하는 형태의 비공식적 내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위장 망명을 신청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10월 31일 통일부와 경찰청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이 탈주민 지문정보 타국확인 현황”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미국, 영국 등 제3국에 난민으로 신청해 우리정부에서 지문일치 여부를 확인해 준 건수는 총 277건이며, 이 중에서 75.3%에 해당하는 171명이 우리국적을 취득해 국내에 정착했던 탈북민들로 확인되었다.

위장망명 국가는 영국(81명, 47.4%)과 벨기에(78명, 45.6%)가 대다수였고, 그 뒤를 이어 덴마크(8명), 네덜란드(3명) 등의 순이었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2016 세계난민 글로벌 동향 보고서’는 2016년 말 기준, 난민자격을 인정받은 탈북민은 1,422명이었고, 망명을 신청해 대기 중인 탈북민만 해도 533명으로 파악되었다.¹⁹²⁾

2019년 역시 우리사회 적응에 실패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의 경우, 제3국에 망명하면 사회보장이 좋고 많은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들의 유혹에 넘어가 위장 망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위장망명 탈북민의 경우 국가 간의 문제로 비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탈북민의 해외여행 확인 등의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2) 탈북민 정보 해킹 증가

최근 탈북민 업무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지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한 해킹시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해킹은 2016년부터 2018년 8월말 현재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18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시도는 2015년 172건, 2016년 260건, 2017년 336건, 2018년 435

192) “박주선 부의장, 외국 망명 신청 북한이탈주민 최소 171명 이상”, 한국뉴스통신, 2017. 10. 31.

건(1~8월 기준)으로 매년 급증했다.¹⁹³⁾ 탈북민 정보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이버 공격인 ‘시스템 정보 수집’이 2018년 8월말 기준 147건으로 2017년 동기(12건) 대비 12배 이상 증가했다.¹⁹⁴⁾

〈표 3-5-8〉 통일부 해킹 및 사이버 공격 시도 탐지 현황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8	합계
탐지건수	315	172	260	336	435	1,518

출처 : 2018 국정감사 자료(2018, 10, 3)

〈표 3-5-9〉 통일부 2016~2018년 동기대비 유형별 사이버 공격 시도 탐지현황

(단위: 건)

공격유형	2016. 8	2017. 8	2018. 8	합계
악성코드	21	54	2	77
해킹메일	71	147	151	369
시스템 정보수집	10	12	147	169
웹 해킹	2	2	1	5
유해IP접속	38	32	134	204
합계	142	247	435	824

출처 : 2018 국정감사 자료(2018, 10, 3)

남북하나재단을 겨냥한 해킹 시도는 2014년부터 2018년 8월말까지 총 3,546건이었다. 이 중 탈북민 개인정보가 담긴 ‘시스템 정보수집’ 형태가 3,085건(86%)이었다. 그 외 웹 해킹 303건, 해킹메일 61건, 유해 IP 접속 8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킹에 이용된 IP 국가별 현황을 보면 중국이 47%인 1,670건으로 나타났다. 이외 미국 454건, 한국 208건, 홍콩·네덜란드 각각 87건 순서였다. 해킹 IP가 중국이 대다수인 것을 볼 때, 북한은 탈북민들의 감정은 북한 체제 비판과 비난 등을 체제 위협 행위로 판단하고, 탈북민 신상과 주소·연락처 등을 절취하기 위해서 해킹에 나섰을 가

193) 탈북민 신상과 주소·연락처 등을 빼내기 위해 북한이 해킹에 나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5년간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IP 탐지 지역으로는 국내가 총 5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451건), 미국(183건), 홍콩(70건), 러시아(49건), 불가리아(42건), 영국(20건), 독일(17건), 일본(14건) 순이었다. 다만 불가리아는 2014년 41건이 집중됐고, 이후엔 1건밖에 없었다(“통일부-하나재단 해킹시도 급증…탈북민 정보 노린 北소행 의심”, 팬앤드마크, 2018, 10, 4).

194) 박병석 국회의원, “탈북민 정보 많은 통일부.. 사이버 공격 시도 급증”, 2018년도 국정감사(외통위) 보도자료, 2018, 10, 3.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¹⁹⁵⁾

결국, 탈북민의 김정은 북한 체제 비판과 비난 행위가 지속되는 한, 북한은 탈북민 정보 해킹을 위한 관련부처와 지원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모니터링과 대응책을 마련해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치안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탈북민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등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4) 탈북민 신상정보 유출

최근 탈북민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2018년 1월 28일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로 보낸 ‘북한이탈주민 채용 현황 제출’ 문서가 5월 31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에 공개된 바 있다. 즉, 서울교통공사가 채용한 탈북민 직원 10여 명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채용일자, 정착기간 등 11가지 개인신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검색하면 누구든 볼 수 있는 ‘공개’ 상태였다.¹⁹⁶⁾

박병석 국회의원은 2017년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탈북민 인터뷰 등을 통해 정보유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신변노출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하나원에서 탈북민들에게 제공한 가전제품 구입용 상품권마저 탈북민 식별이 가능한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 7월 재입북 했다가 재입국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탈북민이 북한에 탈북민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소문이 알려지면서 탈북민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¹⁹⁷⁾

따라서 국내입국 탈북민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재입북 탈북민, 탈북민 관련 기관, 탈북민 직장 등을 통해 탈북민의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된 탈북민의 경우, 신상위협은 물론 재북 가족이 처벌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탈북민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5) 정양석 국회의원, “2018년도 국정감사(외통위) 보도자료”, 2018. 10. 4; “통일부-하나재단 해킹시도 급증...탈북민 정보 노린 北소행 의심”, 팰앤드마크, 2018. 10. 4.

196) “서울시, 탈북 직원 10여명 신상정보 노출...해당 직원 실수”, 중앙일보, 2018. 6. 1.

197) 박병석 의원, “탈북민 신상정보 여러 곳에서 샌다. ... 신변안전 우려도”, 2017 국정감사(외통위) 보도자료, 2017. 10. 13.

5) 탈북민 사회정책 지원을 위한 치안수요 증가

최근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과 화해·협력 분위기 속에서, 탈북민 사회정책 지원과 신변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치안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탈북민 정책은 정세변동에 따라 등락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 대남공작기관의 탈북민 대상 재입북 유인 및 위장 탈북간첩 남파 등에 대비한 치안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대남공작원을 탈북민·중국동포(조선족)·중국국적·제3국 재외동포 등으로 위장시켜 탈북민의 국내입국 경로를 통해 합법적으로 남파시키고, 사회부적응 탈북민, 자진 재입북 의사를 표명한 탈북민, 정보적 가치가 있는 탈북민 등을 포섭해 재입북 공작도 진행하고 있다.

둘째, 탈북민의 범죄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탈북민들 중에서 마약범죄, 사기·횡령범죄, 폭행·상해 범죄, 교통범죄 등에 노출되고 있다. 2016년 말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탈북민 135명의 범죄 유형을 보면, 마약류가 36.3%인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사기·횡령이 8.9%인 12명, 살인 8.1%인 11명, 폭행·상해 7.4%인 10명, 과실범 5.9%인 9명, 절도 5.2%인 7명, 폭력행위 3.0%인 4명, 강도 2.2%인 3명 순으로 나타났다.¹⁹⁸⁾ 이들은 사회정책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와 법률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범죄 늪에 빠지고 있다.

셋째, 국내입국 탈북민이 증가하면서, 탈북민의 범죄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이 2017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응답한 탈북민 22,302명 중 4.1%인 911명(건)이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 유형을 보면, 범죄피해 911건 중 사기범죄 피해가 39.7%(360건)로 가장 높은 데 이어서, 폭행·상해 피해 33.3%(303건), 교통범죄 피해 5.3%(48건), 협박·공갈 피해 4.7%(43건), 폭력행위 피해 4.2%(38건), 강간·강제추행 피해 4.1%(37건)¹⁹⁹⁾ 등의 순이다. 이러한 탈북민의 범죄피해 요인은 자본주의 사회의 이해 부족, 재북 당시 취득한 습관과 언행 등의 요인이 중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탈북민이 경험하는 범죄피해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범죄피해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198) 김윤영, “Ⅲ. 탈북민 관련 전망”, 치안전망 2018, 치안정책연구소, 212쪽.

199) “2017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범죄피해 발생 현황”, 경찰청 내부자료.

넷째, 거주지 확인이 어려운 탈북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주지 불명 탈북민은 2013년 809명, 2014년과 2015년 각각 815명, 2016년 888명, 2017년 6월말 현재 90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²⁰⁰⁾ 탈북민의 거주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면 재입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할 수 있다.

다섯째, 경찰의 탈북민 신변보호 활동을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으로 규정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변보호담당관은 탈북민의 신변보호 활동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최근 탈북민 ‘혐오 분위기’가 표면화되면서 탈북민 신변보호를 위한 치안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탈북민이 운영하는 ‘북한전통음식점’에 대한 집단 악성민원과 신변위협으로 음식점(평광옥, 2018. 5)이 폐업한 바 있다.²⁰¹⁾ 이외에도 방송 출연 일부 탈북민을 ‘북한 악마화에 기여’ 한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²⁰²⁾ 따라서 탈북민과 일부세력과의 갈등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일곱째, 최근 북한당국이 북한가족을 볼모로 탈북민을 협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치안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국가보위성의 경우, 국내정착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가족을 인질로 삼아 돈을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협박을 받은 탈북민의 경우, 북한가족의 목숨이 걸려있어 일용직, 단순노무 등을 통해 어렵게 모은 돈은 물론 빚을 저서라도 송금하고 있다.²⁰³⁾ 이외에도 국내입국 주요 탈북민에 대한 신변위협 가능성도 예상된다.

여덟째, 탈북민 신변보호는 보안경찰이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경찰 개혁위원회는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 담당부서를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신변보호 담당부서 조정은 탈북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탈북민의 경우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체득해 왔던 의식구조와 문화 등의 잔재로 우리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변보호 업무 담당부서를 조정할 경우, 신변보호담당관은 북한

200) 김윤영, “Ⅲ. 탈북민 관련 전망”, 치안전망 2018, 치안정책연구소, 214쪽.

201) 2018년 10월 20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탈북민이 운영하는 북한전통음식점에 신원불상자(50대 남성)가 침입해 집기를 휘두르며 종업원과 손님들을 위협하는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탈북민 혐오에 시달리는 北식당 능라밥상”, 뉴데일리, 2018. 10. 22).

202) “중북강연 강제출국’ 신은미 탈북자들이 북한 악마화 또 논란”, 연합뉴스, 2018. 11. 9.; “중북 논란, 강제출국…국내 토론회에 다시 등장한 신은미”, 노컷뉴스, 2018. 11. 9.

203) “보위부, 북한 가족 인질로 南탈북민에 3천달러 요구”, 데일리NK, 2018. 11. 19.

체제와 탈북민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경비를 투자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안경찰은 탈북민의 신변보호를 통해 북한체제와 탈북민의 사고와 행동 등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탈북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탈북민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 경우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곳’은 어딘지를 묻는 질문에, 신변보호담당관으로 응답한 비율이 63.7%로 가장 높았다.²⁰⁴⁾

결국, 탈북민의 신변보호업무는 보안경찰이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남북한과 한중 관계가 화해·협력시대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의 국내입국이 본격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한 가칭 ‘탈북민 신변보호과’ 신설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4) 이창무 외 3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실태 분석을 통한 정착지원 거버넌스 구축방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11쪽.

Ⅲ. 외사 분야 전망

1. 체류 외국인은 증가, 외국인 범죄는 감소 추세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는 2018년 9월말 기준 2,321,820명으로 2017년 9월말 기준 2,080,071명에서 약 11.6%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체류외국인의 비율(4.21%)이 OECD 평균인 5.7%에는 못 미치지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체류외국인이 연평균 8.5%씩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1년에는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300만 명을 넘어서고, 통계청 추계 2021년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중이 5.8%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3-5-10〉 국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 및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체류외국인	1,576,034	1,797,618	1,899,519	2,049,441	2,180,498
인구	51,141,463	51,327,916	51,529,338	51,696,216	51,778,544
인구대비 체류외국인비율	3.08%	3.50%	3.69%	3.69%	4.21%

* 인구는 통계청(KOSIS)의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를 인용하였음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8)

2018년 9월 기준, 체류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자는 1,220,626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434,101명, 단기체류자는 667,093명으로 2017년 9월 대비 단기체류자의 비중이 2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 45.9%(1,066,659명), 태국 8.3%(192,163명) 베트남 8.2%(191,567명) 미국 6.7%(155,132명), 우즈베키스탄 2.9%(68,480명) 등의 순이다. 특히 태국의 경우 사증면제 입국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7년 12월 최초로 미국을 제치고 체류외국인 수가 중국,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국가가 되었다.²⁰⁵⁾²⁰⁶⁾

205)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년 9월호.

206) 한국계 포함.

〈표 3-5-11〉 체류외국인 연도별 · 주요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9
총 계	1,797,618	1,899,519	2,049,441	2,180,498	2,321,820
중 국 ²⁰⁷⁾	898,654	955,871	1,016,607	1,018,074	1,066,659
한국계	590,856	626,655	627,004	679,729	704,653
베트남	129,973	136,758	149,384	169,738	191,567
태 국	94,314	93,348	100,860	153,259	192,163
미 국	136,663	138,660	140,222	143,568	155,132
우즈베키스탄	43,852	47,103	54,490	62,870	68,480
필리핀	53,538	54,977	56,980	58,480	56,485
캄보디아	38,395	43,209	45,832	47,105	47,379
몽 골	24,561	30,527	35,206	45,744	46,923
러시아(연방)	14,425	19,384	32,372	44,851	53,879
일 본	49,152	47,909	51,297	53,670	45,531
인도네시아	46,945	46,538	47,606	45,328	42,021
네 팔	26,790	30,185	34,108	36,627	39,860
(타 이 완)	31,200	30,002	34,003	36,168	32,348
스리랑카	26,057	26,678	27,650	26,916	26,305
캐 나 다	24,353	25,177	26,107	25,692	26,524

출처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2018. 9)

특히, 체류자격별 중 유학 및 일반연수 자격은 2016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어 연수를 위한 일반연수(3만명)의 경우, 학위를 위한 일반유학(2만 8,000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또한 외국국적 국내동포의 방문취업 자격은 소폭 감소하고, 재외동포 자격은 10% 이상 증가하였다.²⁰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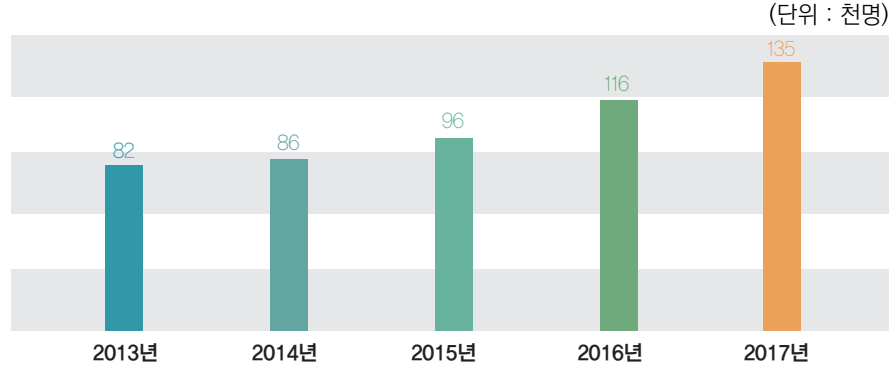
2017년 이후, 전 세계에서 일어난 케이팝(K-Pop) 등 한류 열풍으로 2019년 한국어

207) 한국계 포함

208) 2017년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를 배우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5-12] 연도별 유학생 추이



* 유학생 : D2(유학), D41(한국어연수), D47(외국어연수)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8)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인범죄율은 체류외국인 증가율과 비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범죄 발생현황은 2012년 2만 4,379명, 2013년 2만 6,663명, 2014년 3만 684명, 2015년 3만 8,355명, 2016년 4만 3,764명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7년 3만 6,069명으로 감소하였다. 2017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체류 외국인은 증가한 반면 외국인 범죄자는 줄어들고 있다. 외국인 범죄자의 감소 추세에 대해서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나, 경찰청이 7월 16일부터 실시한 100일 집중 단속 및 주요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치안활동, 각급 경찰서에서 실시한 맞춤형 외국인 범죄예방 노력이 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5-12> 체류외국인·외국인범죄자 증감 추이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9
체류외국인	1,445,103	1,576,034	1,797,618	1,899,519	2,049,441	2,180,498	2,321,820
외국인범죄	24,379	26,663	30,684	38,355	43,764	36,069	25,442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8), 안전행정부(2018), 경찰청(2018)

2018년 외국인 범죄 동향은 살인 및 강도, 폭력을 비롯한 마약, 도박, 교통범죄는 줄어든 반면 강간 및 지능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마약류 범죄의 경우 전년 대비 10% 가까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국내 밀반

입하는 사례는 2016년 대비 25.6%가 늘었고, 앞으로 외국인 마약사범 가운데 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5-13〉 죄종별 외국인 피의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명)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마약류	지능범	도박	교통사범	기타
2014	30,684	78	87	535	1,918	9,013	349	4,045	791	7,175	6,693
2015	38,355	87	139	618	2,458	10,162	420	5,465	961	9,882	8,163
2016	43,764	107	98	646	3,026	10,098	708	5,093	645	11,698	11,645
2017	36,069	106	74	745	3,075	9,304	620	4,571	540	8,590	8,444
2017. 9	27,859	81	59	557	2,323	7,136	509	3,472	440	6,754	6,528
2018. 9	25,442	64	44	592	2,331	6,604	454	3,686	355	5,244	6,068
전년대비 (%)	-8.7	-21.0	-25.4	6.3	0.3	-7.5	-10.8	6.2	-19.3	-22.4	-7.0

출처 : 경찰청(2018)

국적별 외국인 범죄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국 국적의 외국인 피의자는 2017년 9월 15,400명에서 2018년 9월 13,789명으로 전년 대비 10.5% 감소했으며, 파키스탄(33.5%) 및 베트남(18.0%), 필리핀(27.5%) 국적의 피의자 비율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러시아 국적의 피의자는 2017년 9월 841명에서 2018년 9월 831명으로 1.2%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6년을 기점으로 전체 외국인 피의자 중 러시아 국적의 피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표 3-5-14〉 국적별 외국인 피의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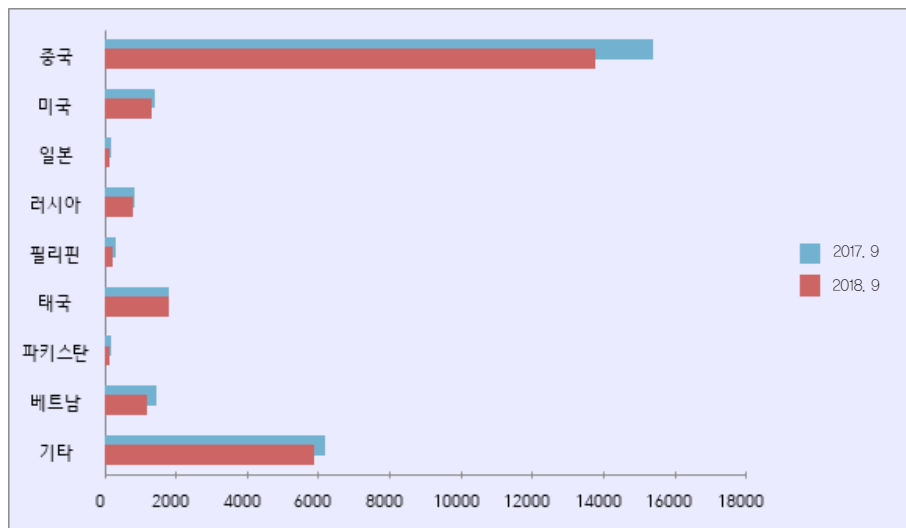
(단위 : 명)

연도	구분									
	계(명)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베트남	기타
2013	26,663	15,121	1,947	211	257	387	656	249	1,908	5,927
2014	30,684	17,870	1,916	208	387	461	1,362	243	1,943	6,294
2015	38,355	22,898	1,884	279	470	520	1,869	279	2,267	7,889
2016	43,764	23,879	2,033	215	851	721	3,349	400	2,623	9,693
2017	36,069	19,927	1,906	251	1,072	400	2,285	274	1,877	8,077
2017. 9	27,859	15,400	1,413	196	841	313	1,822	215	1,469	6,190
2018. 9	25,442	13,789	1,353	168	831	227	1,829	143	1,205	5,897
전년대비(%)	-8.7	-10.5	-4.2	-14.3	-1.2	-27.5	0.4	-33.5	-18.0	-4.7

출처 : 경찰청(2018)

[그림 3-5-13] 국적별 외국인 피의자 증감(2017. 9~2018. 9)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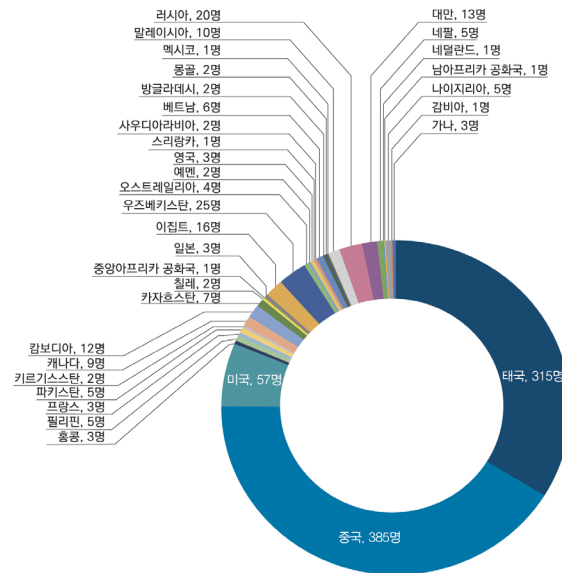
출처 : 경찰청(2018)

2. 외국인 마약류 밀수 범죄 증가 예상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마약류사범은 14,123명으로 전년(14,214명) 대비 0.6% 감소하였고,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도 3,955명으로 전년(4,036명) 대비 2.0% 감소하였으나, 2년 연속으로 14,000명 선을 상회하고, 공급사범은 4,000명 선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밀수사범은 481명으로 전년(383명) 대비 25.6% 증가하였다.

특히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2012년 359명, 2013년 393명, 2014년도 551명, 2015년도 640명, 2016년도 95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도는 932명으로 전년대비 소폭(2.6%) 감소하였으나 2년 연속으로 900명 선을 상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외국인 근로자 등의 국내 유입이 많아지고, 인터넷, SNS 등 다양한 정보통신망과 운송수단을 활용하여 대마 및 신종마약 등을 주문하여 국제우편 등으로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²⁰⁹⁾

[그림 3-5-14] 2017년도 외국인 마약류사범 국가별 구성



출처 : 대검찰청(2018)

209) 자료는 검찰, 경찰, 세관의 합으로 나온 지표이다.

2016년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31개국 957명이 단속되어 전년대비 49.5%로 급증하였고, 2017년에는 34개국 932명이 단속되어 전년과 거의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 9월 현재 적발된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736명으로 2017년 9월 대비 714명에서 소폭 증가 하였다.

국적별로는 2012년 미국인 121명(33.7%), 중국인 97명(27%), 2013년 미국인 127명(32.3%), 중국인 107명(27.2%), 2014년 중국인 191명(34.7%), 미국인 121명(22.0%)으로 미국인 및 중국인이 마약사범의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2015년 중국인 314명(49.1%), 태국인 122명(19.1%), 2016년 중국인 504명(52.6%), 태국인 242명(25.2%), 2017년 중국인(41.0%), 태국인 315명(33.8%)으로 최근 중국인 및 태국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고, 마약류 밀매로 큰 수익이 보장됨에 따라 외국국적 국내동포(조선족)들이 마약밀매에 많이 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태국인 마약류 밀수사범이 전체 40.3%로 압도적으로 증가한 원인은 외국인 근로자 또는 관광객이나 취업 등의 목적으로 위장하여 입국한 불법체류자²¹⁰⁾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였고 국내 체류 태국인들이 주로 밀매·투약 목적으로 야바²¹¹⁾ 등을 밀수하려다 적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3-5-15〉 외국인 마약류 사범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단속사범수	393	551	640	957	932	
증감률(%)	9.5	40.2	16.2	49.5	-2.6	

출처 : 대검찰청(2018)

최근에는 캐나다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 대마초(마리화나)의 합법화 영향으로 향후 대마류 밀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다량의 대마초가 미국,

210)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현황' 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국내 외국인 체류자는 총 230만 8,206명이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33만 5,455명으로 불법체류율은 14.5%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태국이 가장 많았다. 2018년 8월 기준 태국 국적 체류자는 18만 8,202명 이며, 이중 불법체류자는 12만 2,192명으로 불법체류율은 64.9%로 10명 중 6.5명이 불법체류자이다.

211) 태국에서는 'Methamphetamine Yaba' 또는 'Methamphetamine Tablet' 이라고 불리며 동남아시아 최대마약 조직인 쿤사가 메스암페타민(25%), 카페인(70%), 기타(코데인 등 5%) 등을 합성하여 개발한 마약으로 환각성·중독성이 강하다.

캐나다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밀반입되고 있으며, 인터넷과 운송수단의 발달로 영국, 독일, 스페인 등으로부터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해 밀반입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²¹²⁾ 또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향정신성의약품들의 국내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필로폰 1g당 가격이 베트남, 홍콩, 중국의 5~6배의 달하고 있으며, 국내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마약류 밀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워낙 중대한 범죄이므로 경찰의 세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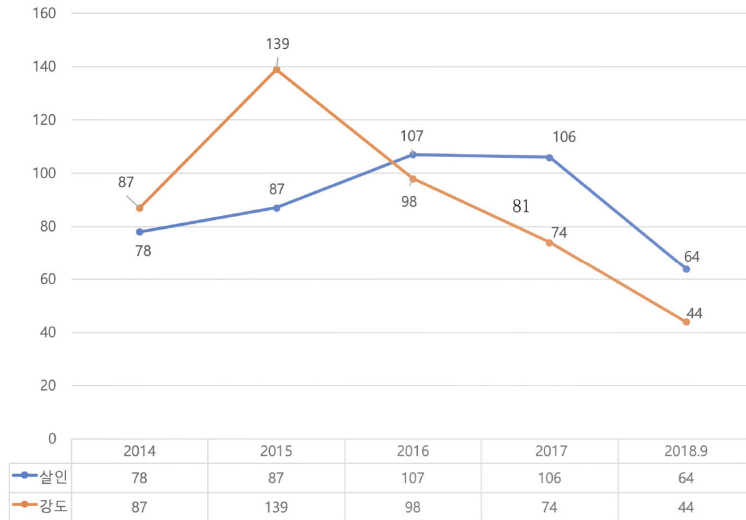
3. 외국인범죄 감소 요인 분석을 통한 향후 전망

체류 외국인 230만을 넘어 여러 국가의 외국인들이 국내에 거주함으로써 발생하는 범죄들에 대하여 경찰이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외국인 범죄를 감소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7월 16일부터 100일 동안 외국인 강력·폭력국제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총 402건을 적발하여 886명을 검거하였다. 강력·폭력범죄자 287명, 마약 152명, 도박 142명 등으로 국적이나 직장이 같은 외국인들이 무리를 지어 다른 외국인들에 대해 우발적으로 집단폭행을 가하거나 술에 취해 시설물을 파손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외국인 여성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마약 밀수·밀매·투약 등의 조직적 범죄도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살인 및 강도 등의 강력범죄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12) 주요 적발 사례로는 미국인이 미국에서 국제우편물에 대마 약 1kg을 은닉하여 국내로 발송한 뒤 관광객을 가정하여 국내로 입국 후 수령하려 한 사례가 적발되었고, 우리 국민이 클럽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결제 후 캐나다로부터 대마 약 450g을 밀수입한 사례가 있다.

[그림 3-5-15] 외국인 피의자 살인·강도사건 증감(2014~2018. 9)

(단위 : 명)



출처 : 대검찰청(2018)

이는 외국인밀집지역에 대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깨끗한 우리동네’ 프로젝트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사소한 무질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질서정연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관기동대 1개 체대를 편성, 범죄취약 시간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치안활동을 하여 시민들의 체감안전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경북 영주경찰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를 방문하여 외국인범죄예방교실을 월 2회 운영하고, 결혼이주 여성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및 가정폭력 대처요령 등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을 통하여 외국인범죄를 감소시키고 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016년 외국인 밀집지역에 다문화치안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예방 노력으로 외국인 범죄를 25%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체류외국인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경찰의 다각적인 정책은 외국인범죄 분석으로부터 도출된다. 체류외국인범죄의 경우 범죄발생 장소가 외국인밀집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며, 집단화 경향 및 우발적 범행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범죄취약 시간에 외국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게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깨끗한 도심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체류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회사를 방문하여 범죄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체류외국인 범죄는 매년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외국인 피의자 긴급출국금지제도 시행에 따른 국외도주 감소 전망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100만 명을 넘고 있다. 법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취업(就業)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동포 비자 포함)는 101만 8,419명에 달한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여기에 법무부가 집계한 불법체류자 32만명을 합치면 전체 외국인 근로자 숫자는 130만명이 넘는다. 특히 2017년 7월 2018년분 최저임금 인상(16.4%)이 발표된 뒤 1년 새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가 13만명 이상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²¹³⁾

이들은 국내의 노동력 문제를 해소시키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추정에 의하면, 전국 건설업 현장 근로자 168만명 중 외국인 근로자는 27만 5,000명으로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 추정에 의하면, 식당 홀·주차장 등 전국 100만명의 근로자 중 외국인 근로자는 40만명(불법 취업자, 아르바이트 포함)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살인, 강도, 강간, 폭력, 도박 범죄 등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체류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후, 경찰에 검거되기 전 또는 불구속 재판 계류 중에 형사처벌을 면탈하기 위해 피의자가 본국으로 출국 및 도주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까지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본국 등으로 도주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외국인 범죄자 신병 확보 등에 허점이 있었다. 즉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제도를 준용하고 있으나, 국민에게 적용되는 긴급출국금지제도를 외국인에게 준용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처럼 외국인의 긴급출국금지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및 본국으로의 도주 및 도피가 용이하였으며, 국외에서 범죄자가 검거되어 범죄사건이 해결되어도 외국인 피의자의 국내 송환 절차가 대단히 복잡하였다.

그러나 2018. 9. 21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되어,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국외

2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2/2018082200182.html(2018. 11. 15. 검색).

도주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수사기관은 외국인이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외국인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 피의자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직접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해당 외국인의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경찰은 야간·휴일 등 긴급한 경우에 외국인 피의자에 대하여 일선 현장 수사관이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직접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은 이 제도의 정착으로 형사처벌을 면탈하기 위한 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국외 도주 및 도망을 완벽하게 방지하여, 국가 형벌권 확보와 범죄피해자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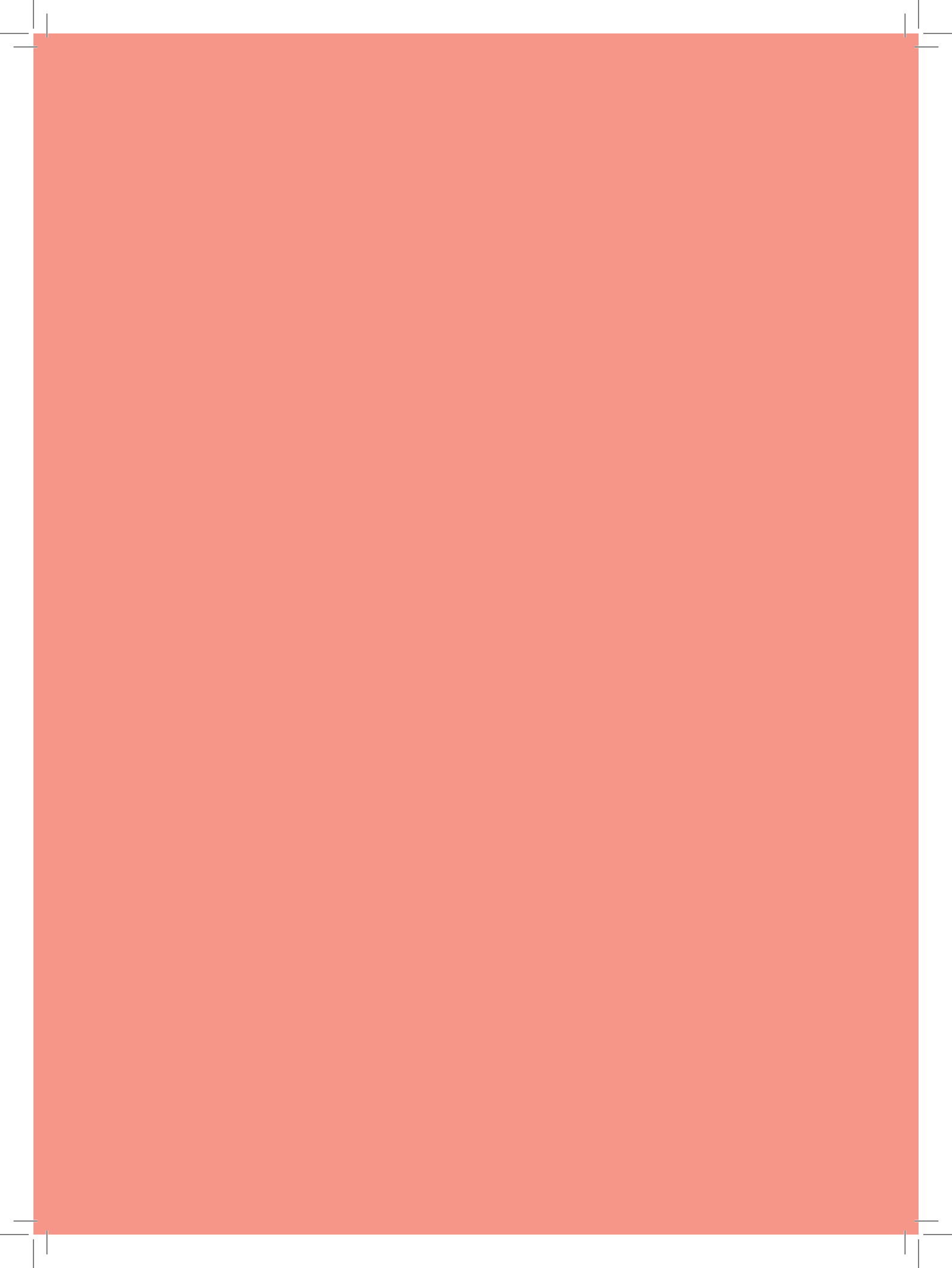


•



•





제4장 경찰의 대응

I. 수사 분야	230
II. 생활안전 분야	234
III. 교통 분야	236
IV. 사회안정 · 보안 · 외사 분야	239



치안전망 2019

POLICE SCIENCE INSTITUTE

제4장 경찰의 대응

I. 수사 분야

1. 범죄유형·수단 변화에 상응한 대응전략 수립

장기간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던 전체 범죄 발생건수가 2017년에 큰 변곡점을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부터 전체 범죄는 괄목할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이제는 범죄발생의 양적인 감소보다는 범죄의 유형과 발생 수단에 따른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범죄 유형별 발생량의 변화, 새로운 범죄 유형의 증가현상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서 국내의 경제적인 어려움 역시 가중되고 있어 타인의 재산을 노리는 지능범죄의 증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찰의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능범죄의 상당부분이 신종수법을 이용하는 만큼 신종수법이 수사기관에 인지되면 신속하게 주요 범행 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언론을 통해서 피해사례와 대응방안을 전파하여 범죄자의 범행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잠재적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 의지에 힘입어 마약범죄가 최근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공급자의 국적과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어 증가 가능성이 상존한다. 최근 우리나라가 마약 유통의 매력적인 거점으로 인식되면서 마약류의 공급시도가 증가하고 경찰력이 잘 미치지 않는 딥웹 이용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찰의 마약관련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생활안전 등 주요 관련부서에서는 정신질환 체크리스트와 응급입원 시행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전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해 비전문가인 일선 경찰관들이 정신질환 판단과 대응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신질환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대응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2. 대응절차 확보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5대 범죄는 전체 범죄의 감소 속에서도 괄목할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강간·강제추행이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요인이 남아 있다. 또한 5대 범죄는 국민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유형들인 만큼 지속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살인의 경우 여전히 가족, 친척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 최근 가정폭력에 대한 관여 수준을 높이고 이력을 관리하는 등 변화된 경찰의 대응방식은 가족관계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경찰의 개입 과정에서 가족 간 또는 경찰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대응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호시설 등 제반 보호환경의 구축도 필요하다.

강도는 인적이 드문 시간과 장소 등 방범 사각지대에서 주로 발생하고, 절도는 다중이 운집한 장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등 재산범죄의 경우 범행이 용이한 대상과 물리적 환경 등 기회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범 시스템을 확충하고 범죄발생을 예측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등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기회를 차단하는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폭력범죄는 비면식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주취자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야간, 유흥지역 등에 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취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대응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우범자에 대한 관리강화 및 지하철 등 대인접촉이 빈번한 장소를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해 2차 피해방지 및 경찰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경찰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3. 불법사금융 예방활동과 금융범죄 수사역량 강화

2019년에는 불법사금융 중에서도 불법대부업과 대출빙자형 전화금융사기가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불법대부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은 미등록 대부업의 불법성과 법정 이자율 초과 부분의 무효성, 이미 지급한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분의 환수 또는 반환 청구 가능성 등에 대한 대국민 설명과 홍보를 강화하여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수사 협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대출빙자형 전화금융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대면식 은행 서비스나 가상화폐를 악용한 새로운 범죄 수법으로의 진화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대국민 홍보를 보다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범죄자만이 아니라 범죄수익금에 대한 범죄 억제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보다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범죄수익창출 행위 뿐 아니라 범죄수익은닉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범죄수익금의 추적과 보전·몰수·추징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적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이 유죄 판결이 없이도 몰수가 가능하게 하는 민사 몰수 제도의 도입을 위한 관련 부처와의 협력이 요구된다.

4.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수사 발전노력 지속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치안환경이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워짐에 따라 경찰도 범죄수법의 지능화 및 현장증거 인멸에 대비하여 IoT, 드론, AI, VR 등 ICT를 접목한 과학수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경찰은 3D 얼굴인식 시스템, 범보행 분석기법 등 과학수사기법을 고도화하고 있고 스마트폰 지문식별 신원확인 시스템(폴리스랩 사업) 등 치안과학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과학수사 역량 강화 및 시스템 확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법의학 전문가, 과학수사 전공자 경력 채용 등 과학수사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확충 및 첨단 과학수사 기법별 특성화된 재교육으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경찰견(犬)의 과학수사 활용이 증가될 것에 대비하여 선진국과 같은 전문훈련센터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드론의 활용 증가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에 대비하여 담당

부서 설치, 관련 법·제도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지방경찰청의 과학수사과 신설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 통합 「법과학감정실」을 신속하게 설치하여 효율적인 감정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5. 불법 사이버 도박 및 금융범죄 대응 역량 강화

최근 사이버 도박은 동남아 등 해외에 사무실과 서버를 두고 철저한 회원 관리와 치밀한 계좌 관리, 인출조직 분업화 등의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더욱 지능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 도박 사이트 운영의 대규모 조직화와 국제화에 따라 상선 조직 검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국내적으로도 누리캡스 등 민·경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조기에 차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사이버 금융범죄는 최근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이버 금융범죄 위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다 지능화된 수법으로 진화한 피싱메일은 2019년에도 빈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기기 사용 증가와 보안 취약점을 노린 금융범죄는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피싱메일 등에 첨부된 악성코드로 랜섬웨어, 개인정보수집·탈취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향후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에 대한 첩보수집, 다중피해 발생 시 피해경보 발령체계 개선, 피해예방 홍보 매뉴얼의 보완, 예상 범죄 유형과 수법에 대한 연구 등 실질적 대책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

II. 생활안전 분야

1. 112신고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신속대응 노력

2018년 전체 112신고 건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약 1,900만 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10년 전인 2007년도의 620만 건 대비 약 3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증가하는 112신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은 112신고를 출동신고와 비출동신고로 구분하여 대처하고 있다. 또한, 출동신고를 다시 긴급출동신고(code 0, 1)와 비긴급출동(code 2, 3)으로 구분하고 한정된 경찰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통해 신속한 출동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출동신고의 경우 경찰이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한다는 것을 신고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112 긴급신고 신속출동을 위한 현장대응시간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현장 경찰관들의 출동시간을 단축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긴급출동 평균출동시간은 전년 대비 약 3초가 줄었고, 비긴급출동시간은 약 15초가 줄었다.

2019년에 경찰은 현장대응시간 및 자동도착 처리율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행도를 측정하여 출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2. 젠더폭력 유형별 효과적 대응전략 추진

성폭력의 경우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문제되고 있는 카메라 촬영물의 온라인 유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한 단속, 유포 사이트의 폐쇄 및 영상물의 삭제 등 실질적인 대응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성에 착안하여 피해자 중심의 보호·지원 시스템을 완비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트폭력과 관련해서는 가정폭력과 유사한 수준의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채팅앱에 대한 실질적인 사전 규제가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등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입법적 조치도 동시에 요구된다.

3. 적극적인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노력 지속

경찰에 검거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현황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 비중이 최근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경험은 향후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범죄 우려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도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단계의 선도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비행·범죄소년화 되는 것을 초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선도프로그램을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선도프로그램 운영예산의 확충이 시급하고 대상자의 위기수준, 비행과 범죄경력에 따른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학교폭력의 유형 중 성폭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성폭력의 구체적인 유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숙칭 몰카) 범죄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부, 문체부, 방통위 등 주관부처의 대응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에서는 유해영상물 불법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관리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별히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는 웹하드 업체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 수사를 제고하고 수사기법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학교폭력은 경찰뿐만 아니라,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통위 등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 유관부처 간 협력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공유 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지난 2017년 부산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이후 경찰의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관련 수사정보가 보호관찰소로 자동 통보되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개편되어 경찰-보호관찰소 간 정보공유가 강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자 정보를 학교

당국과 공유하여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과 학교, 경찰과 보호관찰소 간 정보공유 시스템은 그 범위를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상청소년은 보호관찰대상, 학교폭력 가해청소년 뿐만 아니라, 비행위험이 높은 고위험 위기청소년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안팎 위기청소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관련정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외에도 학교 내 위기청소년의 위기상황을 보여주는 무단결석, 퇴학, 학업숙려 관련 정보들이 공유되어야 한다.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 정보공유의 범위확대를 통해 학교 내 위기청소년 비행에 대한 예방활동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교통 분야

1. 선진국형 속도관리체계의 도입

경찰청은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그동안의 차량소통 중심 속도관리체계와 운전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의 제도와 문화로 전환하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사업을 국토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에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심에서의 차량 제한속도를 기존 60km/h에서 5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시는 사대문 안의 총 41개 구간에 대해 차량 제한속도를 기존 최대 시속 60km에서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줄이기로 하였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²¹⁴⁾

한편, 국토부는 차량의 저속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도로설계기법인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²¹⁵⁾의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신규도로의 건설 및 기존

214) ‘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 차량속도 시속 50km 제한’, 연합뉴스, 2018. 12. 3.

215) ‘교통정온화’의 개념은 국가별로 다양하지만, ‘자동차의 역효과를 감소시키고 자동차 운전자의 통행행태를 변화시키며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들의 통행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물리적인 대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 교통공학협회 홈페이지, <http://www.trafficcalming.org/definition.html>.

도로 개선사업에 우선 적용한다. 보행자 우선도로로 설정된 구간에 대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노면표시 및 교통정온화 시설 등 저비용 시설보강사업과 함께 일방통행, 차없는 거리, 보도 신설, 차로 폭 축소 등 고비용의 ‘보행환경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경찰은 교통관리정책을 차량소통에서 교통안전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진국형 속도관리체계가 교통안전의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협력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 환경 조성 및 단속 강화

교통약자인 고령자와 어린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충격에도 부상이나 사망가능성이 높다. 이에 2019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신규지정을 확대하여 전국 250개소에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과속 및 주정차 단속 CCTV 등의 시설을 정비하고, 총 816개소에는 보도와 보행로를 확충할 예정이다.

경찰은 등굣길 뿐 아니라 어린이 사고가 빈발하는 방과 후 시간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등 관계기관과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교통안전 지도 활성화, 불법주차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의무화가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2019년에는 안전띠 착용 및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의 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2019년에는 고령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을 확대하고, 사고다발지역 50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인지지각검사가 포함된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 의무화도 추진될 계획이다.

그러므로 경찰은 위와 같은 교통약자의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3. 운전자 안전운행 책임성 강화 및 인프라 구축

2019년에는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 질 예정이다.

연 10회 이상 상습적인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경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에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단속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춰지고,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한편, 화물자동차와 운수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를 감안한 ‘화물차 차령제도’와 65세 이상 고령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3년, 70세 이상은 1년 주기로 자격유지검사를 실시하는 ‘자격유지 검사제도’가 도입된다. 그리고 전세버스의 안전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공시제도와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제도도 시행될 것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와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륜차의 면허취득 기준을 엄격히 하고, 특히 ‘배달 오토바이’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이륜차 운행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안전교육 및 국도 상 자전거 도로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것이다.

이와 같이 2019년은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교통안전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의 마련이 실제 안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고,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확실한 단속과 처벌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경찰활동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교통안전계획의 수립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단속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Ⅳ. 사회안정 · 보안 · 외사 분야

1. 평화적 집회시위 정착을 위한 노력

2018년은 국내 집회문화에 있어 의미 있는 한해로 평가할 수 있다. 각 단체별로 다양한 집회시위가 개최되었으나 안정적으로 집회시위가 관리되었으며, 실제로 평화적인 집회문화가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경찰에서는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경력을 필요최소한으로 배치하고, 교통경찰과 폴리스라인, 방송차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보장하면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 및 대응 방안」을 적극 시행하여 과거 집회시위의 양상과는 다르게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었다.

처음 도입된 ‘대화경찰관제’는 집회시위의 신고 접수 단계부터 주최 측과 충분한 교류와 대화를 통하여 전반적인 진행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가자와 경찰 간에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집회문화가 자리 잡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9년에도 경찰은 집회시위를 관리·통제가 아닌 보호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집회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기초를 유지함으로써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집회시위 관련 경찰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인권보호관을 별도로 운영하여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등 감시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폭력집회는 헌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2. 테러 위험요소 사전 대비 필요

유럽, 중동, 미국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가 발생할 경우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테러에 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따라서 테러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테러 위험요인이 실현되는 것을 방지하는 예방경찰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매년 연말연시에는 테러 위협이 증가되는 만큼 2019년 초부터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최근 발생한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화염병 투척사건 등과 같이 유사·모방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 요인들에 대한 경호경비 강화는 물론 지속적으로 공항, 항만 등 중요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

또한 ‘외로운 늑대’형 테러리스트들이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IS를 추종하면서 공격 목표를 다양화 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소프트 타겟에 대한 차량 돌진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테러에 대비해야 할 시기이다.

국제 테러분자들의 국내 진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이들로 인한 테러 위협성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도에 테러방지법을 적용한 첫 사례를 거울삼아 국내 입국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 강화는 물론 국내의 이주 노동자들이 IS 추종세력들과 연계하지 못하도록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도 강화해야 한다.

해외 여행객들의 증가와 기업들의 진출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 테러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개인적인 대응 요령 숙지는 물론 위협 국가에 대한 여행경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기업들의 해외 투자 시 해당국의 테러 위협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하고 안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북 관계에 있어서 평화 모드가 지속되고 있으나,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조기 탐지와 사전차단을 위한 경계도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3.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대한 대응책 마련

2019년 한반도 정세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요구하는 미국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과 비핵화 협상을 병행(쌍궤병행 : 雙軌並行)’ 해야 한다는 중국 측 논리를 수용하고 있는 북한과의 협상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북미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 is closing)’은 닫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란 위험(危險)과 기회(機會)의 준말이다. 2019년에는 북핵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위험과 기회가 공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북한이 기회의 창을 잘 활용할 경우, 남북관계는 민간차원의 인도적 교류에서부터 정부 간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보안경찰은 남북관계의 활성화에 대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북집중 시 가이드라인 책자를 만들어 일반국민들에게 배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범질서의 안정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자국민을 보호하는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안경찰은 급변하는 대내·외 안보환경 변화에 조용하여 튼튼한 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남북관계가 '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 변경되고 있으나, 국가체제 수호와 국민 안전 보호는 경찰의 기본사명이다. 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에 대비, 새로운 업무분야를 개척하고 그에 따른 전문분야를 특성화시키는 준비가 요구된다. 그동안 대공수사권이란 용어는 무분별하게 사용돼 왔다. 그러나 이는 법률용어가 아니라 실무용어이며, 안보부처에서도 대공수사, 보안수사, 방첩수사, 공안수사 등 서로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청 보안국을 안보국으로 개칭하여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기구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4. 탈북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대책 필요

국내입국 탈북민은 2018년 9월말 현재 32,000명을 넘어섰다. 탈북민의 국내입국 증가와 더불어 탈북민의 범죄와 범죄피해, 신변위협, 거주지 미확인, 신상정보 해킹, 신상정보 유출, 재입북, 해외 위장망명 등의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치안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탈북민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서 신변보호의 법적 근거 마련, 생활법률 교육 제공, 검증시스템 재점검, 유관기관 신변보호 전담 경찰관 파견, 집단거주지 중심의 자율방범대 운용, 경찰관서 견학 및 치안환경 적응 프로그램 제공, 유관기관의 역할 재정립, 인권침해 예방 등 탈북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재소자 출신 등 사회부적응 탈북민의 재사회화 교육을 위해 정부차원의 재활 교육 센터와 취업보호센터 설립 등도 요구된다.

최근 남북한과 한중 관계가 화해·협력시대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본격적인 국내입국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보안국이 '안보수사본부' 체제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해 가칭 '탈북민 신변보호과' 신설을 검토

할 필요도 있다.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는 탈북민의 사고와 행동 등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쌓아온 보안경찰이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5. 외국인 범죄감소를 위한 적극적 치안활동 필요

2018년 9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2만 명으로 2017년 대비 약 11.6%가 증가하였다. 2017년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이 4.21%로 OECD 평균인 5.7%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체류외국인이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외국인 범죄는 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대비하여 감소하고 있다. 특히 살인, 강도, 폭력, 마약, 도박, 교통사범 등의 범죄들이 두드러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와 경찰이 외국인 범죄 감소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 치안활동을 전개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의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2019년에도 외국인 밀집지역 내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 치안 점검, 외국인 범죄 발생 가능 지역에는 CCTV의 확대 설치, 체류 외국인에 의한 불법 행위 단속, 체류 외국인 자율방범대와의 합동 순찰 등을 통해 강력한 경찰치안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18년 9월 외국인 '긴급 출국정지 제도'가 마련된 만큼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국외도주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여 국가의 형벌권 확보와 내국인 범죄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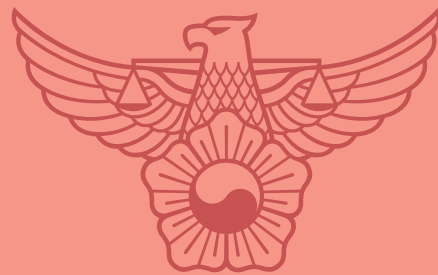
•



•



•



치안전망 2019 집필진

목차	내용과 집필진	
발간사	「치안전망 2019」를 발간하며	
제1장 2018 치안활동의 회고	I. 치안활동의 회고와 진단 _ 강용길 II. 2018 10대 치안 이슈 _ 김청주, 김세미, 이현주	
제2장 치안환경의 변화	박재풍, 박주혁, 김가은	
제3장 2019년 분야별 치안전망	제1절 범죄수사 분야	I. 2019년 범죄 발생 전망 _ 윤상연 II. 5대 범죄의 변화와 전망 _ 윤상연 III. 지능범죄 전망 _ 강성용 IV. 과학수사 발전 전망 _ 조금희 V. 사이버범죄 전망 _ 정웅
	제2절 생활안전 분야	I. 112신고 추이와 전망 _ 염윤호 II. 젠더폭력 전망 _ 김혁 III. 학교폭력 전망 _ 유지웅
	제3절 교통안전 분야	I. 교통 환경의 변화와 전망 _ 윤상연, 강용길 II. 교통사고의 진단과 전망 _ 윤상연, 강용길
	제4절 사회안전 분야	I. 집회시위 전망 _ 장일식 II. 테러 위협 전망 _ 장일식
	제6절 보안·외사 분야	I. 대남전략 전망 _ 권오국 II. 탈북민 관련 전망 _ 김윤영 III. 외사 분야 전망 _ 김학신
	제4장 경찰의 대응	강용길

치안전망 2019 집필자문

- ◎ 김도우 (경남대학교 교수)
- ◎ 김영기 (명지대학교 교수)
- ◎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기초실장)
- ◎ 박영민 (대진대학교 교수)
- ◎ 신종대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 이만중 (호원대학교 교수)
- ◎ 이민식 (경기대학교 교수)
- ◎ 이창배 (동국대학교 교수)
- ◎ 이창한 (동국대학교 교수)
- ◎ 이희훈 (선문대학교 교수)
- ◎ 장인숙 (남북하나재단 연구위원)
- ◎ 정재우 (변호사)
- ◎ 조현빈 (순천향대학교 교수)
- ◎ 조민상 (백석대학교 교수)



치안전망 2019 발간팀

- 팀 장 : **박재풍**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 팀 원 : **김 혁**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 편찬자문 : **송병일** (경찰청 치안정책관)
배순일 (치안정책연구소 과학기술연구부장)
노재호 (치안정책연구소 기획운영과장)
- 발행총괄 : **김영수**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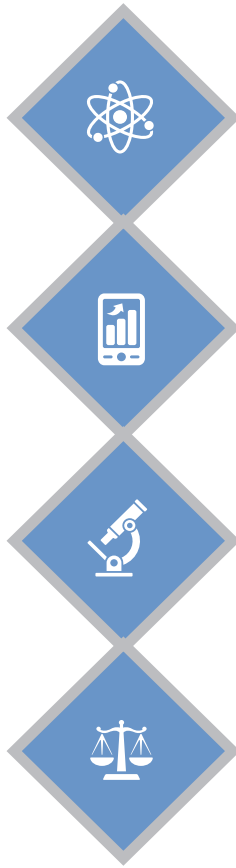
- 행정업무지원 : 치안정책연구소 기획운영과

- 발행인 : **하상구** (치안정책연구소장)
- 편집인 : **김영수**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부장)

- 인쇄일 : 2018. 12. 31.
- 발행일 : 2018. 12. 31.

-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 인쇄처 : 한결 그래픽스 (02-333-7954~5)





POLICE SCIENCE INSTITUTE

